

2019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2019.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2019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2019. 9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9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 요 약

### 1. 예비타당성 평가의 개요

- 본 연구는 신규 제안된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제도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도입의 적절성을 평가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근거하여 조세지출 규모가 연간 3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새로 도입하려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도입의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함
  - 본 연구는 정책 타당성, 경제성, 형평성 관점 위주로 신규 특례를 평가함
  
-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제안하는 제도로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국세를 장기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 본 평가는 신규 제도의 세 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평가임
  - 1안과 3안의 경우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재창업 또는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2안의 경우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재창업 또는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함
  - 대상 체납액 한도는 1안의 경우 3천만원으로 최대 3년 안에 분할 완납하여야 하며, 2안과 3안의 경우 체납액 한도는 5천만원으로 최대 5년 안에 분할 완납하여야 함
  
- 본 예비타당성 평가는 정책성, 경제성,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AHP 설문을 통하여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함
  - (정책성 분석) 정책성 분석은 이론적 측면에서의 정책 우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비교·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제효과성 분석) 신규 특례의 도입으로 인해 수혜자가 면제받는 가산금과 체납액 분할 납부로 인한 납부지연을 비용으로 설정하고, 수혜자가 재창업 또는 취업을 하여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편익으로 설정한 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대안을 제시함
- (형평성 분석) 일반 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후, 일반 성실납세자를 역차별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 2. 기초자료의 분석 및 평가의 주요 쟁점

-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무행정 개선 노력과 탈세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발생 건수 및 총액은 상승 추세에 있음
  - 2005년 약 387만건의 체납이 2017년에는 약 507만건으로 상승하여 약 31% 상승하였음
  - 2005년 체납발생총액은 약 19조 2,900억원에서 2017년 약 27조 8,100억원으로 증가하여 증가율은 약 44%임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신규 특례 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임
  -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 및 형태는 유사하나, 근본적으로 체납액 전액 소멸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
  - 신규 특례는 체납액을 분할 완납하였을 경우 가산금만 면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기존 제도와 유사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2018년 현재 영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체납액 관련 국세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 통계량을 계산함
  - 2018년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총 6,940명임<sup>1)</sup>
  - 수혜자들의 신청 당시 체납액은 총 2,012억원을 상회하며, 소멸 승인된 체납액은 약 총 1,110억원임

1) 다만, 수혜자들의 업태 업종 정보가 모두 포함된 인원은 총 6,937명으로서 기초통계량 작성시 3명은 결측처리함

- 또한 수혜자들의 신청 당시 체납액과 연관된 가산금은 총 약 747억원이며, 소멸 승인된 체납 관련 가산금은 약 396억원임
  - 소멸 승인된 체납액 가운데 수혜자들이 납부 완료한 체납액은 총 47억원으로, 소멸 승인된 체납액 총액 대비 4.2%이며, 가산금의 경우 총 21억원을 납부하여 소멸 승인된 가산금 총액 대비 5.3%임
  - 현행 제도의 수혜자는 총 6,937명으로 이 중에서 약 55%인 3,793명이 취업하였으며, 약 45%인 3,144명은 사업을 재개하였음
  - 사업을 재개한 수혜자의 경우 신청 당시 체납액 총액은 평균 3,010만원이며, 취업한 수혜자의 경우 평균 2,810만원임
  - 소멸 승인된 체납액의 경우도 사업 재개 수혜자의 경우 평균 1,630만원, 취업한 수혜자의 경우 평균 1,580만원으로 사업 재개한 사람들의 소멸 승인된 체납액의 평균이 근소하게 높음
- (주요 쟁점사항) 본 예비타당성 평가의 핵심적인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신규 제도가 현행 제도와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선된 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둘째, 제시된 세 가지 대안과 관련하여 경제성, 형평성 차원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대안을 검토해야 함
  - 마지막으로, 신규 특례 도입으로 경제 혹은 사회에 얼마나 큰 효과를 미칠 것 인지를 평가해야 함

### 3. 정책성 분석

- 신규 제도의 정책성을 이론적 측면에서의 정책 우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비교·평가함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함
- 신규 제도는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체납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금을 면제하고 세금체납액에 대한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는 것으로서, 크게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효과를 주된 정책목표로 기대할 수 있음

- 직접효과: 체납세금 납부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경감시켜주어 직접적으로 납세순응도를 제고함으로써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를 촉진하여 세수손실을 감축하고 재정기여도를 높이는 한편,
  - 간접효과: 영세사업자들의 (재)창업 등을 장려·촉진하여 경제활동 참가를 활성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그를 통한 소득분배구조 개선(소득격차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동 정책의 주된 도입목적
- 정책성 분석은 동 정책이 상기의 정책효과를 도모함에 있어 적절하게 잘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정성적·정량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설정
- 정성평가는 이론모형의 구축·분석을 통해 동 정책의 구조와 설계가 동 정책의 정책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평가
  - 정량평가는 이론모형 등의 논의에서 개념적으로 도출된 정책효과 크기를 정량적으로 제시
- 정책성 평가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
- 첫째, 동 정책이 정책목적 수행에 있어 적합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일반적 형태의 경제적 유인 효과를 비교 평가하는 부분
  - 둘째, 현행 제도(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와의 비교형량을 통해 정책성을 평가하는 부분
- 영세사업자 체납액 가산금 면제의 경우 체납금 납부의무 면제(소멸)특례제도에 비해 폐업 체납자들에 대한 창업 활성화 효과(재창업 확률)는 다소 작지만, 여전히 조세지원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소기의 재창업 확률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신규 제도(가산금 등 면제)는 현행 제도(체납세금 납부의무의 소멸·면제)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예: 성실납세 의무에 대한 책임감 등이 약화되는 현상 등)와 불법적 행위(예: 위장 체납·폐업 등)가 증가하는 문제와, 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부담의 역차별 등 세부담의 공평성 차원에서의 문제점 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론모형 분석을 검토한 결과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주면, 폐업 체납자들의 재창업 확률을 높여주므로 영세사업자의 자활효과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4.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은 제시된 세 가지 대안의 경제효과성을 추정하여 비교하는 분석으로, 비용편익 측면에서는 1안이 4.66, 2안이 3.69, 3안이 3.69로 1안이 가장 높게 분석됨
  - 비용-편익분석법을 적용한 경제성 분석결과 현재 고려중인 3가지 안 모두 B/C가 1을 초과하여 동 제도의 경제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1안의 경제성이 가장 크게 평가된 이유는 제도의 대상자 요건에서 신청가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혜자가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편익보다 비용이 더 증가하는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여겨짐
  
- 본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편익분석법(Benefit-Cost Analysis) 중에서 비용-편익비율 평가법(B-C Ratio)를 적용하여 경제성을 평가함
  - 편익-비용비율 평가법(B-C Ratio)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을 추정하고 이 값이 가장 큰 대안을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하는 방법
  - 사업의 비용 및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투입되거나 발생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를 현재에 발생하는 것으로 환산하여 비교함
  - 편익 및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4.5%와 5.5%를 적용하였음
  - 분석의 현재시점은 제도가 시작되는 2020년 말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취업자의 기대취업기간인 14년(2020~2033년)임
    - 비용은 제도가 시행되는 2020년에 발생하고, 편익은 수혜자가 제도를 신청하고 사업 및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대기간인 2020~2033년에 발생한다고 가정함
  
- 그러나 본 분석은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과 다양한 가정을 통해 편익과 비용을 추산함으로써 인해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편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재창업과 취업을 한 경우만을 반영하여 순수한 제도의 편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합리적인 가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시도하지 못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본 분석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과대추정되었을 수 있음

## 5. 형평성 분석

- 형평성 분석은 신규 특례 도입의 수혜자와 일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함
  - 현행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는 납부조건이 없는 체납액 전액 탕감으로 일반 성실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지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내포함
  - 이에 따라, 성실납세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체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어, 일반 성실납세자들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함
  - 신규 특례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제안되었기 때문에, 일반 성실납세자들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신규 특례는 기존 제도에 비해 형평성 차원에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됨
- 신규 특례의 도입에 따른 형평성은 일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체납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은 체납 발생 전 세금 납부실적에 따라 신규 특례로 인해 얻게 되는 한계편익이 다를 수 있음
  - 이로 인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다가 체납이 발생한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정성적인 분석으로 형평성 문제를 검토함
- 현행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와 비교하여 신규 특례의 정책 취지 달성 및 역차별 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현행 제도의 경우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다는 비율이 45.3%이며, 신규 특례의 경우 54.9%로 9.6%포인트 상승하였음

- 반대로, 도울 수 없다는 응답은 현행 제도의 경우 31.9%로 신규 특례 25.8%의 경우에 비해 6.1%포인트 높았음
  - 결론적으로, 일반 납세자들 입장에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정책 목표 달성에는 신규 특례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됨
- 신규 특례가 현행 제도보다 형평성 차원에서 더 우수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더해, 신규 특례로 제안된 세 가지 대안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대안 중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정책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응답자의 30.1%가 3안이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1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25.7%, 그리고 2안의 경우 21.4%로 나타남
- 다음으로, 신규 특례의 세 가지 대안 가운데 일반 성실납세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가장 적은 대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응답자의 31.0%가 1안이 역차별 문제가 가장 적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3안(25.4%)과 2안(19.1%)이 선택됨
-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정책 목표 달성과 일반 성실납세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최소화하는 등 두 가지 목표를 고려하여 세 가지 대안 중 가장 선호하는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가장 선호하는 대안으로는 3안으로 39.8%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1안이 37.6%, 그리고 2안은 22.6%가 선택됨
-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한 신규 특례의 도입은 타당해 보이며, 제시된 세 가지 대안에 대해 정책 목표 달성, 역차별 발생 가능성, 세 가지 대안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설문조사를 요약함
- 정책 취지 달성과 관련하여,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대안은 3안의 경우 30.1%, 1안의 경우 25.7%, 2안의 경우 21.4%로 조사되어, 3안의 경우가 정책 목표 달성에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음

## 6.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AHP 평가)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균형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기준 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 중 하나인 AHP를 이용한 분석으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함
  - 본 보고서에서는 앞서 제시한 정책성 및 경제성, 형평성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AHP를 수행하여 전문가 9인의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각 항목의 제도 도입에 대한 평점과 가중치를 이용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합평점(weighted sum) 0.76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대안이 더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 개별 평가자들의 종합 분석 결과값을 살펴보면 최저 0.66부터 최고 0.83까지 다양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표준편차는 0.06으로 산출됨
  
- 신규 제도는 서민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되나,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서는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서 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음
  - 하지만 일반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현행 제도보다 신규 특례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는 세 가지 대안 사이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신규 특례의 도입 배경 중 중요한 이슈인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3안의 경우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함

# 목 차

<b>I.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b> .....	<b>15</b>
1. 신규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	17
가. 도입 배경 .....	17
나. 도입 목적 .....	17
2. 신규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	18
가. 공통 조건 .....	18
나. 신규 특례 1안 .....	18
다. 신규 특례 2안 .....	19
라. 신규 특례 3안 .....	19
3. 신규 조세특례의 예비타당성 개요 .....	19
<b>II. 기초자료의 분석 및 평가의 주요 쟁점</b> .....	<b>23</b>
1. 우리나라 체납발생 현황 .....	25
2.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연혁 및 현황 .....	28
3. 관련 선행연구 .....	43
4. 제도의 쟁점사항 .....	43
<b>III. 정책성 분석</b> .....	<b>45</b>
1. 개요 .....	47
2. 정책성 평가 기준 .....	48
3. 타당성 측면에서의 정책성 평가: 이론적 접근 .....	51
가. 분석모형의 종류 .....	51
나. 폐업 세금채납자의 재창업 의사결정모형 및 재창업 확률의 산출 .....	53
다. 체납액 가산금 면제제도의 정책 타당성의 이론적 근거: 과세당국 순세수 측면 .....	71

라. 영세사업자 소액·장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제도의 정책성 타당성 비교분석 .....	75
4. 소결 .....	78
<b>IV. 경제 효과성 분석 .....</b>	<b>81</b>
1. 경제성 분석의 개요 .....	83
가. 수요추정 .....	83
나. 비용 및 편익 추정 .....	86
다. 경제성 분석 .....	96
라. 소결 및 한계점 .....	102
<b>V. 형평성 분석 .....</b>	<b>105</b>
1. 형평성 분석의 개요 .....	107
2. 설문 조사의 개요 .....	108
3. 신규 특례와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 .....	109
4. 신규 특례 인식조사 상세 분석 .....	129
5. 체납액 납부 실적에 따른 형평성 문제 .....	139
<b>VI.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b>	<b>141</b>
1. 계층화 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종합평가 .....	143
가. AHP 분석의 개요 .....	143
나. AHP 분석을 활용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종합평가 .....	145
2. 결론 및 정책제언 .....	155
<b>참고문헌 .....</b>	<b>158</b>
<b>&lt;부록 1&gt; .....</b>	<b>161</b>
<b>&lt;부록 2&gt; .....</b>	<b>168</b>

## 표 목 차

<표 II-1> 체납발생총액, 정리중체납 건수 및 금액(2005~2017년) .....	26
<표 II-2>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개정내용 .....	30
<표 II-3> 제도 수혜자들의 체납액 분포 .....	33
<표 II-4> 제도 수혜자들의 체납액 분포 2 .....	33
<표 II-5> 업태별 빈도수(체납액 합계 기준) .....	34
<표 II-6> 업태별 체납액(총액) .....	35
<표 II-7> 업태별 체납액(종합소득세) .....	36
<표 II-8> 업태별 체납액(부가가치세) .....	37
<표 II-9> 업태별 가산금 현황(총액) .....	38
<표 II-10> 업태별 가산금 현황(종합소득세) .....	40
<표 II-11> 업태별 가산금 현황(부가가치세) .....	40
<표 II-12> 신청유형별 빈도수 .....	41
<표 II-13> 신청유형별 체납액 .....	42
<표 II-14> 신청유형별 가산금 .....	42
<표 IV-1> 체납액에 따른 수혜자의 비율 .....	84
<표 IV-2> 대상자 증가율 .....	85
<표 IV-3> 대상자 선정방법에 따른 수혜자 추정 .....	85
<표 IV-4> 체납액기준에 따른 1인당 가산금 금액 .....	86
<표 IV-5> 제도 시행으로 인한 가산금 면제 비용 .....	86
<표 IV-6> 대상자에 따른 체납액 .....	87
<표 IV-7> 연차별 체납세액 납부지연 비용 .....	88
<표 IV-8>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승인자 비율 .....	88
<표 IV-9>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수혜자 수 .....	89
<표 IV-10> 체납액에 따른 승인자의 비율 .....	90
<표 IV-11> 재창업자의 매출액 규모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액 비율 .....	91

<표 IV-12> 재창업자의 1인당 세금액 .....	91
<표 IV-13> 재창업자의 연간 편익 .....	92
<표 IV-14> 사업영위기간을 반영한 재창업자의 편익 .....	92
<표 IV-15> 취업자의 1인당 세금액 .....	93
<표 IV-16> 취업자의 연간 편익 .....	93
<표 IV-17> 연령별 고용률 .....	94
<표 IV-18> 연령별 고용률을 반영한 취업자의 편익 .....	94
<표 IV-19> 총편익(1안) .....	95
<표 IV-20> 총편익(2안) .....	95
<표 IV-21> 총편익(3안) .....	96
<표 IV-22> 경제성 분석 결과(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	98
<표 IV-23> 1안 경제성 분석 결과(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	98
<표 IV-24> 2안 경제성 분석 결과(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	99
<표 IV-25> 3안 경제성 분석 결과(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	99
<표 IV-26> 경제성 분석 결과(사회적 할인율 5.5% 적용) .....	100
<표 IV-27> 1안 경제성 분석 결과(사회적 할인율 5.5% 적용) .....	100
<표 IV-28> 2안 경제성 분석 결과(사회적 할인율 5.5% 적용) .....	101
<표 IV-29> 3안 경제성 분석 결과(사회적 할인율 5.5% 적용) .....	101
<표 V-1> 주요 조사 내용 .....	110
<표 V-2> 응답자 분포 .....	111
<표 V-3> 개인 특성별 현행 제도 인지 여부 .....	112
<표 V-4>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도움 여부 .....	114
<표 V-5>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성실납세자 역차별 여부 .....	116
<표 V-6>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필요성 .....	118
<표 V-7> 납부의무 소멸제도 신규 특례의 영세사업자 재기 도움 여부 .....	119
<표 V-8> 납부의무 소멸제도 변경안의 성실납세자 역차별 여부 .....	121
<표 V-9> 영세개인사업자 재기에 도움이 되는 제도안 .....	124
<표 V-10> 성실납세자 역차별이 적은 제도안 .....	127
<표 V-11> 선호하는 제도안 .....	128

<표 V-12> 제도 인지 여부에 따른 영세사업자 재기 선택 .....	131
<표 V-13> 체납경험 여부에 따른 영세사업자 재기 선택 .....	132
<표 V-14>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와 영세사업자 재기 선택 .....	133
<표 V-15> 조세제도의 공평성과 영세사업자 재기 선택 .....	134
<표 V-16> 탈세자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과 영세사업자 재기 선택 .....	134
<표 V-17> 정부에 대한 기여금과 영세사업자 재기 선택 .....	135
<표 V-18> 제도 인지 여부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대안 선택 .....	136
<표 V-19> 체납경험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대안 선택 .....	136
<표 V-20>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대안 선택 .....	137
<표 V-21> 조세제도의 공평성과 납세자와의 형평성 대안 선택 .....	137
<표 V-22> 탈세자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과 납세자와의 형평성 대안 선택 .....	138
<표 V-23> 정부에 대한 기여금액과 납세자와의 형평성 대안 선택 .....	139
<표 VI-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평가결과 요약 .....	146
<표 VI-2> 가중치 산정범위 .....	148
<표 VI-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의 AHP 평가항목 요약 .....	150
<표 VI-4> AHP 표준점수에 따른 제도 도입 적합도 .....	152
<표 VI-5>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	153
<표 VI-6> AHP 평가 결과 .....	154
<표 VI-7> 설문 응답에서의 제도 도입 점수 .....	155

## 그림 목 차

[그림 II-1] 체납발생총액 및 정리중체납 건수(2005~2017년) .....	27
[그림 II-2] 체납발생총액 및 정리중체납 금액(2005~2017년) .....	27
[그림 III-1] 재창업 확률의 비교 .....	76
[그림 V-1] 현행 제도와 신규 특례의 도움 여부 및 역차별 여부 .....	122
[그림 V-2] 신규 특례에 대한 의견 .....	129
[그림 VI-1] 예비타당성평가의 AHP 계층 구조 .....	149

# I .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 I.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 1. 신규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 가. 도입 배경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이 계속 부과되어 체납액 납부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재창업 및 취업 후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됨
  - 현행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 기준으로는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매월 0.75%(연 9%)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됨
  - 현행 제도는 2018년 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취업한 자에게만 적용되어 2019년 재창업자 및 취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며, 체납액 납부조건이 없는 체납액 전액 탕감으로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의지를 저하시키고,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가산금을 면제하여 체납액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체납된 국세를 개인별 재기 속도에 맞게 분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기를 지원하는 수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나. 도입 목적

- 기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국세를 장기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 자영업자 소득 여건의 악화로 인해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며 이는 2019년 기획재정부 정책방향과도 부합함

- 체납 국세에 대해서는 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성실납세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줄임으로써 ‘포용성’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의 전략목표와 방향성을 같이함
- 궁극적으로, 서민·자영업자가 재기하여, 소득 기반을 다시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는 ‘서민·영세자영업자 소득 증대 및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일치함
  -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확대와 근로 유인 강화를 강조한 2019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과도 일치함

## 2. 신규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 신규 조세특례로 고려되는 대안은 세 가지이며, 각각의 대안은 공통 조건과 더불어 정책 대상자 요건, 대상 체납액 요건 등에서 각각 상이한 내용을 포함함

### 가. 공통 조건

- 평균 수입금액 및 조세범칙 관련 처벌 관련 조건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함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 신고대상 기준 미만이어야 함
    - 도소매업의 경우 15억원 미만, 제조업의 경우 7.5억원 미만,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5억원 미만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칙 관련 처벌·처분을 받거나 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판이 없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사건 조사가 없어야 함

### 나. 신규 특례 1안

- (정책 대상자)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자

- (대상 체납액) 체납처분중지,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대상이며, 체납액 한도는 3천만원으로 최대 3년 안에 분할 완납하여야 함

#### 다. 신규 특례 2안

- (정책 대상자)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재창업 또는 취업한 자
- (대상 체납액) 체납처분중지,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대상이며, 체납액 한도는 5천만원으로 최대 5년 안에 분할 완납하여야 함

#### 라. 신규 특례 3안

- (정책 대상자)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재창업 또는 취업한 자
- (대상 체납액) 체납처분중지,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대상이며, 체납액 한도는 5천만원으로 최대 5년 안에 분할 완납하여야 함

### 3. 신규 조세특례의 예비타당성 개요

- 조세지출 규모가 연간 3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sup>2)</sup>, 신규 조세지원제도의 도입 또는 기존제도의 확대 및 재설계에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평가가 요구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근거하여 새로이 도입하려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도입의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함
  - 본 연구는 신규 특례의 정책 타당성, 경제성, 형평성 관점 위주로 신규 특례를 평가함

2) 조세지출 규모 추정은 경제성 분석 참고

- (연구 목적) 신규 특례가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정책 타당성을 갖는지 검토한 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경제성, 형평성 분석을 통해 비용 효과성이 더 우수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정책성 분석) 정책성 분석은 이론적 측면에서의 정책 우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비교·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제 효과성 분석) 신규 특례의 도입으로 인해 수혜자가 면제받는 가산금과 체납액 분할 납부로 인한 납부지연을 비용으로 설정하고, 수혜자가 재창업 또는 취업을 하여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편익으로 설정한 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대안을 제시함
  - (형평성 분석) 일반 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후, 일반 성실납세자를 역차별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 (기초자료 분석) 국세청 협조자료를 이용하여 현행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특례 도입에 따른 변화를 예측함
  - 기초적인 분석으로 우리나라의 체납발생 현황을 검토하여,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관련 현황과 비교함
  - 국세청 협조자료를 이용하여 신규 특례의 예상 가능한 정책 대상자 수를 계산하며, 현행 제도의 수혜자 현황을 바탕으로 예상 수혜자 수를 추정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예상되는 조세지출 규모 및 향후 재창업 및 취업을 통해 예상 가능한 세수입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
  
- (정책성 분석)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검토함
  - 영세사업자에 대해 조세지원이 없는 경우 또는 현행 제도(‘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와 비교를 통해 체납자들의 재창업 장려효과와 체납세금 환수효과 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성을 비교 평가함
  - 정책성 분석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음
  - 정성평가는 이론모형의 구축·분석을 통해 신규 특례의 구조와 설계가 정책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 정량평가는 이론모형 등의 논의에서 개념적으로 도출된 정책효과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제시함

- 신규 특례가 정책목적 수행에 있어 적합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일  
반적 형태의 경제적 유인 효과를 비교평가함
  - 또한 현행 제도와 비교형량을 통해 정책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임
- (경제성 분석) 신규 특례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할 조세지출과 미래 조세 수입 등  
을 추정하여 비용 대비 효과 규모를 추정하여 경제 효과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자 함
- 신규 특례제도의 수혜자가 면제받는 가산금과 체납세액 분할 납부로 인한 납  
부지연을 비용으로 설정하고, 수혜자가 취업 또는 재창업을 하여 납부하게 되  
는 세금을 편익으로 설정하고 추정함
  -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국세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수혜자 규모, 즉  
신규 특례제도의 수요를 추정함
  - 최종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의 크기를 추정함
- (형평성 분석)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특성상 일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체납액 납부실적이 다른 영세개인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중점적으로 실시함
- 현행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는 납부조건이 없는 체납액 전  
액 탕감으로 일반 성실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의지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내포  
하여 성실납세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신규 특례의 도입이 일반 성실납세자들을 역차별하는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  
는 지 여부를 일반 성실납세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체납 발생 전 세금 납부실적에 따라 신규 특례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형평성 차원에서 정성적인 분석으로 검토함
- (종합평가) 이상의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규 특례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제  
시된 세 가지 대안 중 정책성, 경제성, 형평성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전문가그룹이 수행하는 종합평가를 계층화 분석(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방법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함
-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  
하며, 결론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함



## Ⅱ. 기초자료의 분석 및 평가의 주요 쟁점





## II. 기초자료의 분석 및 평가의 주요 쟁점

### 1. 우리나라 체납발생 현황

-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전에 국세청에서 집계한 체납발생 현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무행정 개선 노력과 탈세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발생 건수 및 총액은 상승 추세에 있음
  - <표 II-1>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체납발생총액 및 정리중체납 건수 및 금액 통계를 요약한 것임
  - 2005년 약 387만건이던 체납이 2017년에는 약 507만건으로 상승하여 약 31% 상승하였음
  - 2005년 체납발생총액은 약 19조 2,900억원에서 2017년 약 27조 8,100억원으로 증가하여 증가율은 약 44%임
  - 한편 정리중체납도 건수와 총액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정리중체납 건수는 2005년 약 133만건에서 2017년 약 179만건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정리중체납 총액은 2005년 약 4조 3,900억원에서 2017년 약 8조 1,100억원으로 증가함
  
- [그림 II-1]과 [그림 II-2]는 그래프로 체납발생건수 및 총액의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건수와 총액 모두 상승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 -1> 체납발생총액, 정리중체납 건수 및 금액(2005~2017년)

(단위: 만건, 백억원)

		체납발생총액	정리중체납
2005	건수	387.1	133.0
	금액	1,929.5	439.0
2006	건수	383.5	128.2
	금액	1,871.9	405.7
2007	건수	378.7	120.1
	금액	1,870.5	357.5
2008	건수	392.1	141.1
	금액	1,935.6	390.8
2009	건수	423.5	140.7
	금액	2,066.9	416.6
2010	건수	427.0	138.5
	금액	2,222.3	492.6
2011	건수	435.0	152.7
	금액	2,333.9	546.0
2012	건수	472.0	150.0
	금액	2,520.6	590.9
2013	건수	487.4	159.6
	금액	2,524.2	654.0
2014	건수	496.3	170.6
	금액	2,679.3	784.8
2015	건수	497.9	161.0
	금액	2,658.6	724.4
2016	건수	498.1	157.1
	금액	2,712.7	700.0
2017	건수	507.5	178.6
	금액	2,781.1	8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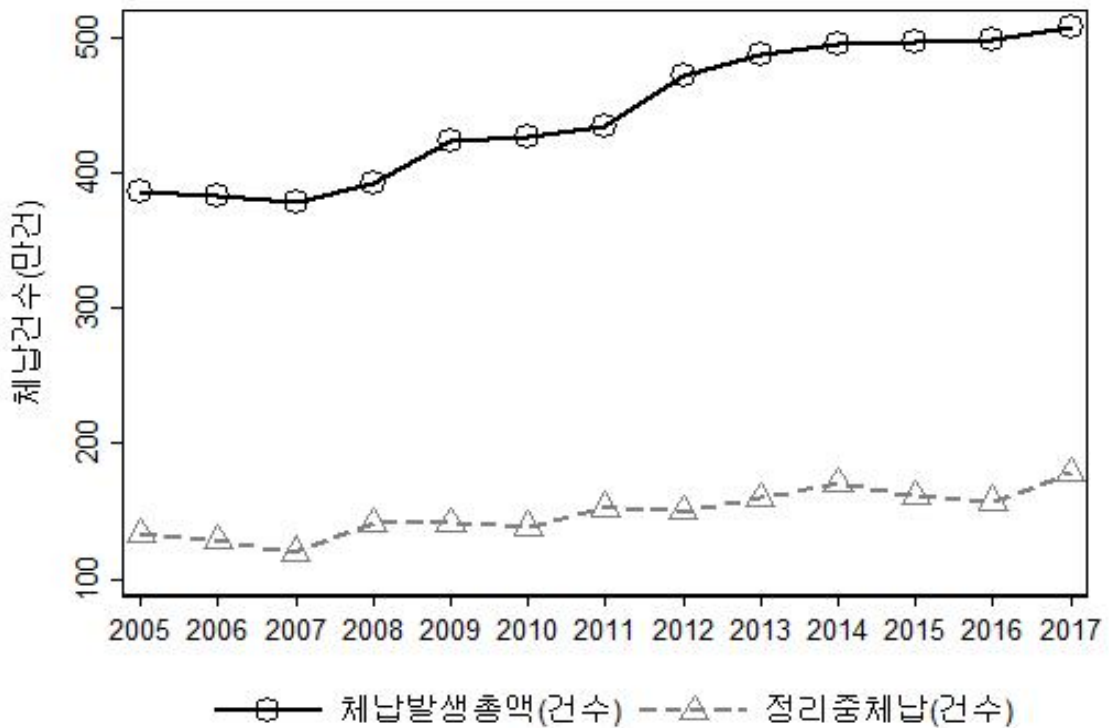
주: 체납발생총액 = 전년도 이월액 + 당해연도 발생액

정리중체납 = 체납발생총액 - 정리실적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2-3-1. 체납액 정리 실적 I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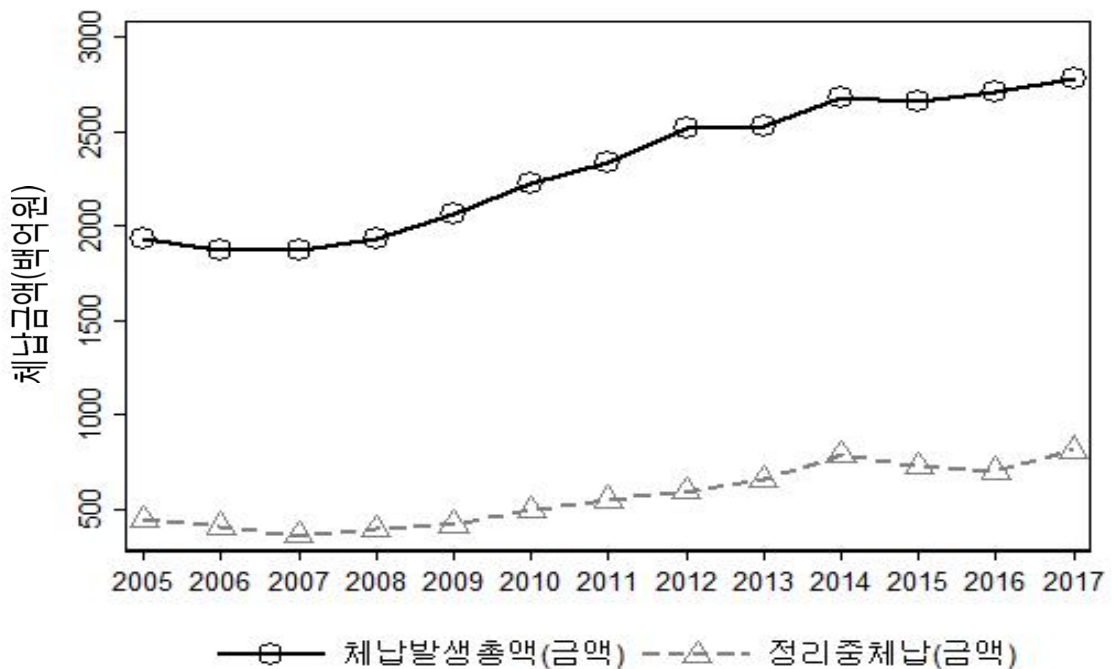
[그림 II -1] 체납발생총액 및 정리중체납 건수(2005~2017년)

(단위: 만건)



[그림 II -2] 체납발생총액 및 정리중체납 금액(2005~2017년)

(단위: 백억원)



## 2.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연혁 및 현황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신규 특례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임
  -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 및 형태는 유사하나, 근본적으로 체납액 전액 소멸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
  - 신규 특례는 체납액을 분할 완납하였을 경우 가산금만 면제해주는 제도이므로 기존 제도와 유사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신규 특례가 도입되기까지 현행 제도의 연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다음과 같음
  - 주요 내용
    -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기불황으로 인해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가 증가하였고,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부터 이들의 체납액 관련 논의가 시작됨
    -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추후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를 도입함
  - 소멸처분대상자
    - **(폐업일자)**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 **(수입금액)**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업종별로 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미만인 자
      - \*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

업종	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15억원 (2018. 2. 13. 개정)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2018. 2. 13. 개정)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2018. 2. 13. 개정)

자료: 삼일아이닷컴, <http://www.samili.com/>. 2019. 03. 26. 접속

-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범칙처분이력)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 (범칙조사진행) 신청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 소멸대상 체납액 범위
  - (소멸한도) 1인당 3천만원(두개 이상 관서에 납부의무 소멸신청을 하더라도 모든 관서의 소멸예정금액을 합하여 3천만원으로 함)
  - (대상세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 (징수권관) 결손처분이나 체납처분 중지된 체납액 등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 소멸처분의 순서
  -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의 소멸대상 체납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건별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하되, 각 건별 순서는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름
  - \* 다만, 거주자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체납액 한도 조정 등을 개정하여 일몰이 연장되는 등 제도의 변화가 있었음
  - 2010년 1월 1일 제도 신설 후 2014년 말에 폐지되었다가 2017년 12월 19일에 재시행 되었음(<표 II-2>)

<표 II -2>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개정내용

	내용	소멸한도
2010. 1. 1.	제도신설	500만원
2010. 12. 27.	2013년 말까지 일몰기한 2년 연장	
2013. 8. 13.	2014년 말까지 일몰기한 1년 연장	
2014. 12. 31.	2014년 말 폐지	
2017. 12. 19.	제목개정 및 재시행, 소멸한도 확대	3천만원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3. 25. 접속.

- 2010년 1월 1일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시행령 제99조의 5)
  - **(주요내용)** 세무서장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음
  - 소멸처분대상자
    - \* **(수입금액)**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람
    - \* **(폐업일자)** 2010년 1월 1일 현재 폐업한 사람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 **(범칙처분이력)**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 \* **(범칙조사진행)** 신청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 2010년 12월 27일 개정시 일몰 2년 연장
  - **(주요내용)**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으로 인해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 **(일몰연장)**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됨
- 2013년 8월 13일 개정시 일몰 1년 연장
  - **(주요내용)** 사업에 실패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 **(일몰연장)** 적용기한이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됨
- 2017년 12월 19일 개정
  - **(주요내용)**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액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제목개정)** 제목을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개정함
  - **(소멸한도)** 소멸한도를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함
  - **(폐업일자)**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 **(징수곤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함
    - \*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 \*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 \* 2017년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 \*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 \* 2017년 6월 30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 \*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 (소멸취소) 소멸대상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결정 이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의무의 소멸이 취소됨
  -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영세사업자들의 체납 관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도가 꾸준히 개정되어 현재 까지 이어졌으나, 제도의 수혜자 규모 및 관련 조세지출 규모는 크지 않은 편임

- 최근에 개정되어 적용된 ‘영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 관련 통계를 살펴봄으로써, 신규 특례의 효과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음

□ 2018년 현재 영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체납액 관련 국세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 통계량을 계산함

- 2018년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총 6,940명임<sup>3)</sup>
- 이들에 대한 분포를 통해 신규 조세특례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추측해볼 수 있음

□ 제도 수혜자들의 체납액 통계는 다음과 같음

- 수혜자들의 신청 당시 체납액은 총 2,012억원을 상회하며, 소멸 승인된 체납액은 약 총 1,110억원임
- 또한 수혜자들의 신청 당시 체납액과 연관된 가산금은 총 약 747억원이며, 소멸 승인된 체납 관련 가산금은 약 396억원임
- 소멸 승인된 체납액 가운데 수혜자들이 납부 완료한 체납액은 총 47억원으로, 소멸 승인된 체납액 총액 대비 4.2%이며, 가산금의 경우 총 21억원을 납부하여 소멸 승인된 가산금 총액 대비 5.3%임

---

3) 다만, 수혜자들의 업태 업종 정보가 모두 포함된 인원은 총 6,937명으로서 기초통계량 작성 시 3명은 결측처리함

<표 II -3> 제도 수혜자들의 체납액 분포

(단위: 천원)

신청 당시 체납액				
합계	본세	농특세	체납처분비	가산금
201,287,017	126,566,178	401	5,322	74,715,115

소멸 승인된 체납액				
합계	본세	농특세	체납처분비	가산금
111,085,134	71,513,372	396	2,277	39,569,087

수납금액 체납액				
합계	본세	농특세	체납처분비	가산금
4,714,592	2,558,455	4	766	2,155,366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수혜자들의 체납액 분포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표 II -4>와 같음
  -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청 당시 체납액 규모는 총 411억원이었으며, 이 중 약 56%가 소멸 승인되어 약 230억원이 소멸 승인되었으며, 총 14억원이 납부 완료됨
  -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청 당시 체납액 규모는 총 1,600억원이었으며, 이 중 약 55%가 소멸 승인되어 그 규모가 총 879억원임
  -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멸 승인된 체납액 가운데 약 3.8%가 납부 완료되어 약 33억원이 납부 완료됨

<표 II -4> 제도 수혜자들의 체납액 분포 2

(단위: 천원)

신청 당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본세	농특세	가산금	합계	본세	가산금
41,152,042	26,533,823	401	14,617,817	160,129,652	100,032,355	60,097,297

소멸 승인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본세	농특세	가산금	합계	본세	가산금
23,105,594	15,313,056	396	7,792,140	87,977,262	56,200,316	31,776,946

수납금액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본세	농특세	가산금	합계	본세	가산금
1,400,558	860,252	4	540,301	3,313,268	1,698,203	1,615,065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표 II-5>는 수혜자들이 제도 이용 신청 당시의 사업 업태의 빈도수를 나타냄
- 전체 수혜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인 약 27.8%가 도소매업에 종사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건설 및 건축업(약 18.9%), 서비스업(약 17.1%)이 차지함

<표 II -5> 업태별 빈도수(체납액 합계 기준)

(단위: 건, %)

	빈도수	비중
도소매업	1,933	27.87
건설 및 건축업	1,308	18.86
서비스업	1,187	17.11
제조업	1,136	16.38
숙박 및 음식점업	807	11.63
운수업	416	6.0
부동산 및 임대업	110	1.59
금융 및 보험업	12	0.17
출판영상방송통신업	11	0.16
상품중개업	3	0.04
임업 및 광업	3	0.04
미용업	2	0.03
보건업	2	0.03
어업	2	0.03
축산업	2	0.03
수리업	1	0.01
자유직업	1	0.01
전문과학 및 기술	1	0.01
합계	6,937	10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표 II-6>은 업태별 신청 당시 체납액 규모 및 소멸 승인 규모 관련 기초통계량임
- 제도 수혜자의 신청 당시 체납액 규모는 평균 2,9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소멸 승인된 체납액 규모는 1,600만원으로 나타남
  - 신청 당시 체납액이 가장 큰 규모는 전문과학 및 기술, 수리업으로 그 규모가 평균 5,800만원을 상회하였고, 그에 따라 소멸 승인된 체납액 규모 역시 2,600만원 이상으로 큰 규모이나, 표본 수가 적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표본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업태의 경우 제조업의 경우 3,410만원, 건설 및 건축업의 경우 신청 당시 체납액 규모가 평균 3,400만원으로 신청 당시 체납액 규모가 가장 큰 업태로 나타났음

- 서비스업의 경우 신청 당시 체납액이 2,870만원, 도소매업의 경우 2,750만원으로 나타나 역시 체납액 규모가 높은 업태로 분류됨
- 신청 체납액 가운데 소멸 승인된 체납액의 경우 건설 및 건축업이 1,890만원, 제조업이 1,880만원으로 높은 업태로 분류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서비스업(1,560만원), 도소매업(1,530만원)으로 나타남

<표 II -6> 업태별 체납액(총액)

(단위: 백만원)

	신청당시		소멸승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도소매업	27.5	18.5	15.3	10.2
건설 및 건축업	34.0	18.4	18.9	9.9
서비스업	28.7	20.5	15.6	10.2
제조업	34.1	18.8	18.8	10.0
숙박 및 음식점업	20.4	16.9	11.1	9.2
운수업	24.2	17.8	12.6	9.3
부동산 및 임대업	29.5	17.9	17.4	10.3
금융 및 보험업	22.7	11.1	16.1	10.1
출판영상방송통신업	25.7	17.2	13.9	9.0
상품중개업	19.0	26.6	10.0	14.1
임업 및 광업	23.1	21.6	13.6	14.3
미용업	46.6	13.3	17.8	14.3
보건업	27.3	0.3	20.1	9.3
어업	8.8	6.1	6.6	6.2
축산업	13.7	14.4	7.8	5.9
수리업	53.1	0	26.5	0
자유직업	12.0	0	11.5	0
전문과학 및 기술	58.1	0	30.0	0
전체	29.0	19.2	16.0	10.3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업태별로 신청 당시 체납액·소멸 승인 체납액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II-7>과 <표 II-8>과 같음
-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청 당시 체납액 규모가 평균 1,100만원이며, 소멸 승인된 체납액은 670만원임

- 업태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2,200만원,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1,990만원으로 높은 업태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업태의 소멸 승인 당시 체납액 규모는 1,750만원, 1,220만원으로 가장 높은 업태로 분류됨
-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보다 신청 당시 체납액 규모나 소멸 승인 체납액 규모보다 평균적으로 컸는데, 신청 당시 체납액은 평균 2,600만원이고 소멸 승인 체납액 규모는 평균 1,450만원임
-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업태별 분포는 종합소득세의 업태별 분포와 상이함
- 부가가치세의 경우 제조업 분야의 신청 당시 체납액이 3,240만원, 건설 및 건축업의 경우 3,160만원으로 높은 업태로 분류되었으며, 소멸 승인 체납액의 경우도 제조업은 1,800만원, 건설 및 건축업은 1,790만원으로 많았음
- 업태별로 세목에 따라 신청 체납액 및 소멸 승인 체납액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산업의 수익 구조와의 관련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II -7> 업태별 체납액(종합소득세)

(단위: 백만원)

	신청당시		소멸승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도소매업	11.2	13.6	6.8	8.3
건설 및 건축업	9.0	11.4	5.4	6.8
서비스업	12.0	14.1	7.0	7.8
제조업	10.2	12.2	6.6	8.1
숙박 및 음식점업	12.4	13.5	7.2	7.8
운수업	8.3	11.4	5.1	6.8
부동산 및 임대업	19.9	17.6	12.2	10.6
금융 및 보험업	22.2	12.9	17.5	11.4
출판영상방송통신업	3.1	6.5	1.8	3.5
상품중개업	1.4	0	0.7	0
임업 및 광업	18.5	25.6	16.9	18.5
미용업	11.9	5.0	5.9	2.5
보건업	27.3	0.3	20.1	9.3
어업	8.8	6.1	6.6	6.2
축산업	13.7	14.4	7.8	5.9
수리업	53.1	0	26.5	0
전체	11.1	13.2	6.7	8.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8> 업태별 체납액(부가가치세)

(단위: 백만원)

	신청당시		소멸승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도소매업	24.2	17.1	13.5	9.4
건설 및 건축업	31.6	17.3	17.9	9.3
서비스업	25.0	17.9	13.8	9.3
제조업	32.4	18.3	18.0	9.5
숙박 및 음식점업	14.2	12.9	7.7	6.8
운수업	22.5	16.9	11.8	8.7
부동산 및 임대업	26.2	18.6	15.5	10.8
금융 및 보험업	18.3	12.2	12.0	2.9
출판영상방송통신업	23.7	15.1	12.9	8.2
상품중개업	18.5	25.8	9.7	13.7
임업 및 광업	13.7	0	6.9	0
미용업	34.7	18.2	23.8	0
자유직업	12.0	0	11.5	0
전문과학 및 기술	58.1	0	30.0	0
전체	26.0	17.9	14.5	9.6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신규 특례의 경우 체납액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가산금과 관련된 통계를 현행 제도하에서 산출해 볼 필요가 있음
  - <표 II-9>는 업태별로 신청 당시 가산금과 소멸 승인된 가산금의 통계를 보여줌
  - 신청 당시 가산금의 평균 액수는 1,090만원이며, 소멸 승인된 가산금의 평균 액수는 580만원임
  - 업태별로 살펴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 분야가 2,400만원, 수리업과 미용업이 각각 2,120만원과 1,920만원으로 높은 업태로 분류되나, 표본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함
  - 건설 및 건축업의 경우 신청 당시 가산금의 규모가 1,290만원, 제조업의 경우 1,2880만원으로 높은 업태로 분류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서비스업이 1,050만원, 도소매업이 1,040만원으로 나타남
  - 소멸 승인된 가산금의 경우, 전문과학 및 기술 분야가 1,200만원, 수리업이 1,080만원으로 높은 편이나 표본 수가 적어서 평균 통계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 건설 및 건축업의 경우 소멸 승인된 가산금은 690만원, 제조업은 680만원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도소매업 560만원, 서비스업 550만원임
- 소멸 승인된 가산금의 규모는 전체 평균값이나 업태별 평균값 모두 작은 편임을 알 수 있음

<표 II -9> 업태별 가산금 현황(총액)

(단위: 백만원)

	신청당시		소멸승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도소매업	10.4	8.0	5.6	4.1
건설 및 건축업	12.9	8.0	6.9	3.9
서비스업	10.5	8.2	5.5	4.0
제조업	12.8	8.2	6.8	4.1
숙박 및 음식점업	7.6	7.3	4.0	3.8
운수업	8.6	7.0	4.4	3.5
부동산 및 임대업	12.1	8.7	6.5	4.4
금융 및 보험업	8.0	4.5	5.5	4.0
출판영상방송통신업	9.8	8.1	5.0	4.0
상품중개업	6.7	9.9	3.5	5.3
임업 및 광업	7.3	8.0	3.9	4.4
미용업	19.2	7.7	7.3	7.2
보건업	8.0	3.6	5.4	0.1
어업	2.9	1.9	2.1	1.8
축산업	5.7	7.1	3.0	3.3
수리업	21.2	0	10.6	0
자유직업	5.8	0	5.2	0
전문과학 및 기술	24.0	0	12.0	0
전체	10.9	8.1	5.8	4.1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가산금 통계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표 II-10> 및 <표 II-11>과 같음
  - <표 II-10>은 종합소득세, <표 II-11>은 부가가치세 관련 통계를 보여줌
  - 종합소득세는 신청 당시 가산금의 평균 금액은 410만원이며, 부가가치세의 신청 당시 가산금의 평균 금액은 990만원임

- 이 중 소멸 승인된 체납액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230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530만원으로 나타남
  - 종합소득세의 신청 당시 가산금은 수리업이 2,12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평균 480만원, 서비스업은 440만원, 도소매업은 420만원, 제조업은 370만원으로 나타남
  - 소멸 승인된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금은 수리업이 평균 1,060만원,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평균 270만원, 서비스업 240만원, 도소매업 230만원, 제조업 220만원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금은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금과 비교하여 업태별 평균값이 상이하게 나타남
  - 전문과학 및 기술 분야의 경우 신청 당시 부가가치세 가산금은 2,400만원이며 제조업의 경우 1,240만원, 건설 및 건축업은 1,220만원,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930만원으로 나타남
  - 소멸 승인된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금을 살펴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분야가 1,200만원, 미용업이 1,070만원으로 높지만, 적은 표본수로 인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제조업과 건설 및 건축업이 각각 660만원,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500만원으로 나타남
- 현행 제도하에서 가산금의 규모가 체납액 규모에 비해 현저히 작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조세지출 규모 역시 작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규 특례 도입으로 가산금이 소멸되었을 때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신규 특례는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제도의 수혜를 받는 조건으로 취업 및 사업을 재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통계를 현행 제도하의 수혜자 중심으로 살펴봄
- 현행 제도의 수혜자는 총 6,937명으로 이 중에서 약 55%인 3,793명이 취업하였으며, 약 45%인 3,144명은 사업 재개를 하였음(<표 II-12>)
  - <표 II-13>은 취업 및 사업재개 여부에 따른 유형별 신청 당시 체납액 및 소멸 승인된 체납액 통계를 보여줌
  - 사업을 재개한 수혜자의 경우 신청 당시 체납액 총액은 평균 3,010만원이며, 취업한 수혜자의 경우 평균 2,810만원임

<표 II -10> 업태별 가산금 현황(종합소득세)

(단위: 백만원)

	신청당시		소멸승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도소매업	4.2	5.8	2.3	3.1
건설 및 건축업	3.2	4.5	1.8	2.5
서비스업	4.4	5.7	2.4	3.0
제조업	3.7	5.1	2.2	3.0
숙박 및 음식점업	4.8	5.9	2.7	3.2
운수업	3.0	4.6	1.8	2.5
부동산 및 임대업	8.0	9.7	4.1	4.7
금융 및 보험업	7.6	5.1	5.8	4.6
출판영상방송통신업	1.3	3.2	0.7	1.8
상품중개업	0	0	0	0
임업 및 광업	6.5	8.9	5.2	5.3
미용업	3.9	0.7	1.9	0.4
보건업	8.0	3.6	5.4	0.1
어업	2.9	1.9	2.1	1.8
축산업	5.7	7.1	3.0	3.3
수리업	21.2	0	10.6	0
전체	4.1	5.6	2.3	3.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 -11> 업태별 가산금 현황(부가가치세)

(단위: 백만원)

	신청당시		소멸승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도소매업	9.3	7.4	5.0	3.8
건설 및 건축업	12.2	7.7	6.6	3.8
서비스업	9.3	7.4	5.0	3.7
제조업	12.4	8.0	6.6	3.9
숙박 및 음식점업	5.2	5.4	2.8	2.8
운수업	8.0	6.7	4.1	3.4
부동산 및 임대업	10.6	8.0	5.9	4.3
금융 및 보험업	7.1	4.7	4.6	1.2
출판영상방송통신업	8.9	6.9	4.6	3.5
상품중개업	6.7	9.9	3.5	5.2
임업 및 광업	2.5	0	1.2	0
미용업	15.3	8.4	10.7	0
자유직업	5.8	0	5.2	0
전문과학 및 기술	24.0	0	12.0	0
전체	9.9	7.6	5.3	3.9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 -12〉 신청유형별 빈도수

(단위: 건, %)

	빈도수	비중
취업	3,793	54.68
사업재개	3,144	45.32
합계	6,937	10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멸 승인된 체납액의 경우도 사업 재개 수혜자의 경우 평균 1,630만원, 취업한 수혜자의 경우 평균 1,580만원으로 사업 재개한 사람들의 소멸 승인된 체납액의 평균이 근소하게 높음
- 사업 재개 수혜자들과 취업한 수혜자들 간의 체납액 관련한 평균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음
-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청 당시 체납액과 소멸 승인된 체납액 모두 취업한 수혜자들의 평균이 사업 재개 수혜자들의 평균에 비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남
- 부가가치세의 경우 반대로 나타났는데, 사업 재개한 수혜자들의 경우 신청 당시 체납액 규모가 평균 2,700만원, 취업한 수혜자들은 평균 2,52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멸 승인된 체납액의 경우 사업 재개 수혜자들은 1,480만원, 취업한 수혜자들은 평균 1,420만원으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임
- <표 II-14>는 취업 및 사업 재개 여부에 따른 가산금 통계를 보여줌
- 신청 가산금 총액의 경우 사업 재개 수혜자는 평균 1,140만원, 취업한 수혜자는 평균 1,04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멸 승인된 가산금 총액은 사업 재개 수혜자는 평균 600만원, 취업 수혜자는 평균 560만원으로 나타나 사업 재개 수혜자의 경우 가산금 총액이 근소하게 높음
-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청 당시 가산금 규모가 사업 재개 수혜자는 평균 400만원, 취업 수혜자는 평균 42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소멸 승인된 가산금의 경우 사업 재개 수혜자는 평균 230만원, 취업 수혜자는 평균 240만원으로 나타났음
-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산금 규모가 종합소득세의 가산금 규모보다 컸으며, 사업재개 수혜자의 경우 평균 1,040만원, 취업 수혜자는 평균 950만원으로 나타났고, 이 중 소멸 승인된 가산금은 사업 재개 수혜자의 경우 평균 550만원, 취업 수혜자의 경우 평균 510만원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취업 및 사업 재개 여부에 따라 체납 총액 및 가산금 규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였으며, 절대적인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으로 파악됨

<표 II -13> 신청유형별 체납액

(단위: 백만원)

구분		신청당시		소멸승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체납총액	사업재개	30.1	19.4	16.3	10.3
	취업	28.1	18.9	15.8	10.2
	전체	29.0	19.2	16	10.3
종합소득세	사업재개	10.8	13.0	6.5	7.7
	취업	11.4	13.5	7.0	8.2
	전체	11.1	13.2	6.7	8.0
부가가치세	사업재개	27.0	18.3	14.8	9.7
	취업	25.2	17.6	14.2	9.6
	전체	26.0	17.9	14.5	9.6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 -14> 신청유형별 가산금

(단위: 백만원)

구분		신청당시 가산금		소멸승인 가산금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산금총액	사업재개	11.4	8.4	6.0	4.2
	취업	10.4	7.9	5.6	4.0
	전체	10.9	8.1	5.8	4.1
종합소득세	사업재개	4.0	5.6	2.3	3.0
	취업	4.2	5.6	2.4	3.0
	전체	4.1	5.6	2.3	3.0
부가가치세	사업재개	10.4	7.9	5.5	4.0
	취업	9.5	7.4	5.1	3.8
	전체	9.9	7.6	5.3	3.9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관련 선행연구

- 신규 특례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관련 연구는 전무한 상황임
  
- 기존 유사 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역시 많지 않은 가운데, 김태호(2015)의 지방세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중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가 있음
  - 김태호(2015)는 일본의 체납처분정지제도와 비교를 통해 결손처분과 체납처분중지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분석함
  - 우리나라의 경우 결손처분제도를 없애고 체납처분중지제도를 체납처분정지제도로 바꾸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체납처분을 정지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체납처분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납부의무를 소멸되도록 하여, 체납자들이 새로운 경제활동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이를 통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체납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관련 선행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체납액 및 가산금 소멸의 절대적인 총액 크기가 크지 않으며, 제도의 수혜자들이 영세개인사업자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의 시행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신규 특례의 경우, 체납액 소멸은 하지 않는 대신 가산금만 면제해 주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함
  - 반면, 신규 특례의 경우 비록 제도의 수혜 대상자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 납세자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현행 제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므로 제도 개편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4. 제도의 쟁점사항

- 신규 특례의 도입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현행 제도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신규 특례 도입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제 이론적인 관점에서, 신규 특례와 현행 제도의 정책 타당성을 비교 평가함
  - 또한, 기본적으로 신규 특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 2018년 제도 수혜자들의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신규 특례의 수혜 대상자들을 예측하여, 비용과 효과 등을 추정하여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임
- 제시된 세 가지 대안 가운데, 수치적으로 경제적 효과성을 측정하는 작업을 통해, 정량적인 비교를 통해 대안의 우선순위를 계산함
  - 대안의 우수성을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은 매우 직관적이지만, 대안과 대안 사이의 상대적 우수성에 대한 결론은 내릴 수 없음
-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납세자들을 역차별하는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균형 있는 제도 도입을 기대할 수 있음
- 일반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함
  - 또한 일반 성실납세자들이 선택한 대안과 그들의 사회 경제적(socioeconomic) 지위 등의 관계를 분석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선택된 배경을 분석함
  - 일반 성실납세자뿐만 아니라, 체납 전 성실납부 실적이 있는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쟁점사항임
  -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신규 특례의 도입으로 경제 혹은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지는 않을 것임
- 신규 특례는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에 기반을 둔 제도이므로, 수혜 대상자들의 특성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 단순 계산하면, 전체 체납건수 대비 현행 제도 관련 체납건수는 0.13%에 불과하며, 전체 국세 체납총액 대비 현행 제도 관련 체납총액 비율은 0.4%에 불과함
  - 신규 특례가 고려하는 가산금만 살펴보면, 전체 국세 체납총액 대비 0.14%로 매우 적은 수준임
  - 따라서 신규 특례 실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며, 경제 효과성이 있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Ⅲ. 정책성 분석





### Ⅲ. 정책성 분석

#### 1. 개요

- 본 장에서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소액·장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제도의 정책성을 이론적 측면에서의 정책 우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비교·평가함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동 제도의 정책목표, 정책대상자 선정 및 제도 설계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 폐업·체납 개인사업자에 대해 조세지원이 없는 경우 또는 현행 제도(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와 비교를 통해 폐업 체납자들의 재창업 장려 효과와 체납세금 환수효과 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성을 비교·평가분석하는 것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함
  - 정책 효과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다음 장의 효과성에서 추정·분석하며, 본 장에서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소액·장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제도”의 근거와 타당성 및 정책목표(폐업 체납자 재창업 활성화와 그를 통한 저소득층 소득증대, 분배구조 개선, 경제활성화 효과 등) 등의 관점에서 이론 모형을 구축하고 동 효과를 이론적·정성적 관점에서 분석
  
- 동 제도는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체납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금을 면제하고 세금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해주는 것으로서,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직접효과: 체납세금 납부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경감시켜주어 직접적으로 납세순응도를 제고함으로써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를 촉진하여 세수손실을 감축하고 재정기여도를 높이는 한편,
  - 간접효과: 영세사업자들의 (재)창업 등을 장려·촉진하여 경제활동 참가를 활성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그를 통한 소득분배구조 개선(소득격차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동 정책의 주된 도입목적

- 정책성 분석은 동 정책이 상기의 정책효과를 도모함에 있어 적절하게 잘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정성적·정량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설정
  - 정성평가는 이론모형의 구축·분석을 통해 동 정책의 구조와 설계가 동 정책의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데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평가
  - 정량평가는 이론모형 등의 논의에서 개념적으로 도출된 정책효과 크기를 정량적으로 제시
  
- 본 장에서는 제도 자체의 효과성·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을 모형과 공식 등의 형태로 형상화하여 정성적 관점에서 제시·평가
  - 실증분석을 통한 정량적 평가는 효과성 분석 파트에서 구체적인 수치분석을 통해 수행
  - 따라서 정책성 분석은 정량분석·평가와는 거리가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 본 장에서 수행하는 정책성 평가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
  - 첫째, 동 정책이 정책목적 수행에 있어 적합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일반적 형태의 경제적 유인 효과를 비교평가하는 부분
  - 둘째, 현행 제도(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와의 비교형량을 통해 정책성을 평가하는 부분

## 2. 정책성 평가 기준

- 영세사업자 체납액 면제 및 체납액 분할납부 제도의 정책목적(목표)
  - 지원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체납세액 납부(또는 상환) 증대 및 재창업 등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저소득사업자들의 경제활동 참가, 소득증대,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
  - 현행 제도(영세개인사업자 체납세액 소멸특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
  
- 현행 제도(영세개인사업자 체납세액 소멸특례제도)는 일정 요건이 미달하는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로서, 근

본 취지는 폐업 체납자인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자활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경제활성화 등에 있음

- 자활의지가 있지만 취약한 경제력 및 납세능력으로 인해 체납 세금 부담이 실질적인 자활과 경제적 갱생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영세사업자들의 경제활동 재개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를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활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임
- 다만 이를 악용하는 불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사업자들 사이의 불공평 문제 및 도덕적 해이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존재

□ 이에 반해 “영세사업자 체납액 면제 및 체납액 분할납부 제도”는 현행 제도에 비해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축소·완화 및 제거를 통해 조세 공정성 및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체납액을 면제(소멸)시켜주는 것에 비해 재정손실 규모는 줄어들 수 있지만
- 수혜자 입장에서의 수혜액 감소로 인해 폐업자들의 재창업·취업 효과는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
- 그러므로 양자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한 정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필요

□ 정책성 분석을 위한 평가 기준(기본 3가지)

- 기준 ㉠: 동 정책은 순편익이 (+)일 때 잠재적으로 타당성을 인정
- 기준 ㉡: 동 정책은 현행 제도보다 효과성이 커야 타당성을 인정
  - 현행 제도와 비교
    - 현행 제도: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세액 소멸특례제도
    - 도덕적 해이: 체납세액 면제를 목적으로 위장 체납·폐업
    - 성실신고자 역차별: 일부이기는 하지만 불성실신고자는 세경감 혜택을 받는 반면 성실신고자는 모든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역차별 현상이 발생
    - 정책성 검토대상 대안 제도: 영세사업자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 제도
    - 순편익과 정책목표 달성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과 관련하여 효과성 측면에서의 우월성 등을 비교형량할 필요
- 기준 ㉢: 동 정책을 통한 순편익의 수익률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아야 효과성·타당성 인정

- 세금 체납액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 등은 납세자들의 세금 체납에 따른 한계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로써 최소한의 안전장치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미 세금 체납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동시적으로 체납자들의 시장 재진입(경제활동 재참가) 의사결정시에 시장진입 한계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시장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 이 경우 시장진입 장벽이 형성됨에 따라 재창업·재취업 등 노동시장 참여(경제활동 참가)를 저해하는 ‘시장의 실패’ 현상이 발생 가능
  - 즉, 가산금 제도가 체납 억제기능과 재창업·재취업 저해라는 상반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적으로 발생시키는 양면적 성격을 보유
  
- 현행 제도와 검토대상 대안제도 모두 세금 체납액(가산금 포함)에 대한 부담을 감면 또는 면제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재참여를 통해 체납 세금에 대한 납부율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재창업·재취업 등을 통한 노동시장 재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소상공인 회생 등 포함)하는 것을 주된 정책목표로 함
  - 따라서, 비록 체납세금 부담 경감에 따라 세수손실(또는 재정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폐업 체납자들의 (재)창업이나 (재)취업 활성화 등을 통한 파급효과가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적 순편익(순비용)은 증가(감소)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비록 정부의 재정 순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세금 체납액 부담이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나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결과적인 역차별 현상은 경계할 필요
  
- 현행 제도는 세금 체납액과 가산금 모두를 면제(소멸)시켜주는 반면, 검토대안은 가산금만을 면제하고 체납액은 계속 납부의무를 부여(분할납부도 허용)하기 때문에 체납자 입장에서는 현행 제도보다 경제적 유인효과가 작은 편
  - 그러나 현행 제도는 납부의무 면제에 따른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s)이 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하거나 또는 도덕적 해이를 만연하게 하는 부작용이 큰 반면

-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대안 정책방안은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
- 그러므로 도덕적 해이에 의한 부작용이 크다면, 단순히 납부의무 면제(현행) 또는 가산금 면제(대안)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의 크기만으로 평가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의 납세순응도 향상 및 경제활동 참가(재창업·재취업 등) 활성화 효과의 관점에서 측정한 정책 효과성의 크기 순위가 위에서 예측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즉,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없다면,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재창업·재취업 등을 통해 기대할 수 기대편익의 크기는 현행이 대안정책의 경우보다 더 크지만,
  -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면, 위의 편익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을 차감한 두 제도 사이의 순편익 크기는 역전될 수도 있음
- 그러나 상기 관계에 대해 일반적·대중적으로 확립된 대소관계에 대한 일반법칙은 없으며, 국가별 경제환경이나 납세순응도, 국민들의 납세의식, 과세당국의 징세능력, 시대적 여건이나 전통 등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검정이 필요한 사안임
  -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분석: 체납자들의 행태를 결정하는 오차항의 확률분포, 산포도(散布度), 경제적 유인의 크기,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에 대한 의식과 태도 등과 같이 모형화하기 어렵거나 여러 결정요인간 내생성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명시적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
  - 따라서 도덕적 해이 문제의 경우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함

### 3. 타당성 측면에서의 정책성 평가: 이론적 접근

#### 가. 분석모형의 종류

- 정책성 측면에서의 정책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정책효과 설정·설계의 적정성과 효과성,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정책성을 평가·분석

- 폐업 체납자 입장에서 노동시장 재진입(재창업, 재취업 등)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의사결정 모형과, 과세당국 입장에서의 순편익을 비교하는 모형의 두 가지 관점에서 각각에 대한 분석모형을 설정

#### □ 폐업 체납자 관점의 모형 설정

- 폐업 체납자가 효용극대화 과정을 거쳐 폐업 후 재차 노동시장에 진입(재창업, 재취업 등)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모형화하여 비교분석
- 폐업 체납자의 효용극대화를 통해 2개의 정책(현행 정책 및 대안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가상적으로 동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시행된 경우의 두 가지 등 총 4가지 조합에 대해 각각을 비교하여 정책 타당성을 이론적 관점에서 논의
  - 현행(기존) 정책: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
  - 대안정책: 영세사업자의 소액·장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제도
- 상기 두 가지 제도의 정책효과를 이론적 모형분석을 통해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기준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폐업 체납자가 재창업 등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할 때 아무런 조세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기준으로 설정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함
- 폐업 체납자의 노동시장 참여(재창업·재취업 등)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개별 영세사업자들이 극대화 원칙(효용극대화 또는 이윤극대화 등)에 따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상기 정책들의 정책목표는 특정인에 주목하지 않고, 집합적 관점에서 대상 표본(폐업 체납자)들의 노동시장 재참여를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재창업 비율(또는 확률)을 기준으로 정책성을 논의·평가함

#### □ 과세당국 관점에서의 모형 설정

- 영세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재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과세당국의 주된 정책의도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분류하는 것이 가능
  - 첫째, 폐업 체납자들의 경제활동 재개(재창업·재취업 등)를 통한 자활 및 저

- 소득층 소득증대를 통한 소득분배구조 개선,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기활성화 등이 주된 목적이며, 세수는 부차적인 경우
- 둘째, 경제활동 참가(재창업·재취업 등)의 활성화와 함께, 재정손실을 최소화 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중을 부여하는 경우
- 현행 제도(채납세금 납부의무 소멸(면제)제도)의 경우에는 특히 첫째 경우에 주안점이 있고, 대안정책의 경우에는 둘째 경우에 더 큰 비중이 있음
-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가산금을 면제하는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순세수의 확보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 기대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타당성을 검토
- 단, 도덕적 해이, 역차별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효과의 정량화를 통한 모형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 나. 폐업 세금채납자의 재창업 의사결정모형 및 재창업(경제활동 참가) 확률의 산출

- 본 항에서는 폐업한 세금 채납자가 효용극대화 과정을 통해 시장재참여(재창업·재취업 등, 경제활동 재참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모형화하여 정책 설정·설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 정책성 전반에 대해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평가함
  - 이론모형은 크게 일반기본모형을 간략히 소개·설명하고, 현행 제도(영세개인사업자 채납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
- 세금 채납액 가산금에 대한 면제제도를 통해 과세당국이 추구하는 정책목적과 기대효과는 지원정책의 대상자가 누구(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다만 집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폐업 영세개인사업자들이 동 제도를 통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채납세액을 납부하게 되느냐에 있음
  - 그러므로 기대효과 분석은 특정인에 대한 노동시장 재진입 여부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재진입 확률의 변화효과를 추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
  - 개념적으로는 전자에 대한 분석보다 후자에 대한 분석이 훨씬 더 편리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후자를 기준으로 가산금 면제제도의 정책성을 검증·평가함

- 아래의 (1)목에서는 본 절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의 기본 틀을 소개
  - (2)목에서는 세금 체납 사업자들에게 아무런 지원제도가 없는 경우에, 폐업 체납자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즉 노동공급 의사결정 모형을 설정·분석함
  - (3)목과 (4)에서는 각각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와 ‘영세사업자 소액·장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폐업 체납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재창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모형을 설정·분석함
    -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노동공급(재창업)에 대한 조건부 기대확률 등을 산출함
  - 다음의 라항에서는 (3)목과 (4)목에서 추정된 재창업 의사결정모형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세사업자 소액·장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 납부제도의 정책 타당성을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 등과 비교하여 정책 타당성을 검토함

### 1) 기본 분석모형의 소개

- 세금을 체납한 폐업 영세개인사업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재창업)할 것인지에 대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한계)기대수익과 그에 수반되는 유보임계치(reservation threshold 또는 reservation earning: 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비용적 의미로 해석 가능)를 비교하여 편익(전자)이 비용(후자)보다 더 큰 경우에만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 가능
  - 기대수익 > 유보임계치: 노동시장 진입(재창업·재취업 등)
  - 기대수익 < 유보임계치: 노동시장 진입하지 않음(폐업 및 체납 상태 유지)
- 일반적으로 유보임계치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체납자 개인별로 최소한 보장받고 싶어하는 보수금액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희망이나 기대가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체납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금액으로 구성되므로, 본인을 제외한 제3자(연구자 포함)에게는 관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유보임계치는 체납자 개인별 신용도 또는 여타 제반 경제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

- 기대수익은 체납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일종의 기대 순수익을 의미
  - 시장 참여를 통해 경제활동참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체납자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수익은 (세후)시장 기대수입(또는 소득)에서 체납세금의 납부상환액(가산금 등이 있으면 포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됨
  - 개인별 기대수익은 체납자 개인이 실제로 재창업 등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후적으로 기대수익 가치가 제3자에게 관찰됨
    - ※ 그러나 체납자 본인은 시장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의 주관적 가치를 나타내는 유보임계치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할 때 획득할 수 있는 수입(또는 소득)에 대한 정보를 비교형량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노동시장의 참여·불참 여부에 관계없이 체납자 본인은 두 가지 정보 모두를 항상 관찰 가능함
  
- 상기 모형은 교차회귀모형(switching regression model)의 한 형태를 지닌 모형으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소득을 획득할 수 있고, 소득값 등이 제3자(연구자 또는 과세당국 등)에게 0이 아닌 다른 관측값으로 관찰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소득값 등이 0으로 관찰되는 토빗(Tobit) 모형의 일종
  - 상기 모형의 기본 형태는 Gronau (1973)의 노동공급 모형에 뿌리를 두고 있음
    - Gronau는 2가지 방정식(임금방정식[ $y_1$ ]과 유보임금방정식[ $y_2$ ])을 설정하고, 제안임금(wage offer,  $y_1$ )이 유보임금(reservation wage,  $y_2$ )보다 더 높은 경우에만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공급 결정식을 고안·개발
    - 임금방정식[ $y_1$ ]: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자에게 제안한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방정식
    - 유보임금방정식[ $y_2$ ]: 노동공급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노동공급가치
    - 유보임금보다 시장에서 제안된 임금수준이 높으면( $y_1 > y_2$ ), 노동공급자는 해당 제안을 수락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노동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제안임금을 임금( $y$ )으로 수령
    - 반대로 유보임금보다 제안된 임금수준이 낮으면( $y_1 < y_2$ ), 노동공급을 포기하고, 임금률과 소득이 모두 0으로 관찰

- Gronau의 기본모형의 구성: 어떤 개인(노동공급자)  $i$ 의 노동공급 결정모형
  - 시장의 제안임금:  $y_{1i} = x_{1i}\beta_1 + \epsilon_{1i}$ 
    -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노동공급자의 특성( $x_{1i}$ )을 반영하여 시장에서 노동공급자( $i$ )에게 제안한 제안임금 수준을 나타냄
  - 개인의 유보임금:  $y_{2i} = x_{2i}\beta_2 + \epsilon_{2i}$ 
    - 노동공급자( $i$ )가 자신의 특성( $x_{2i}$ )을 반영하여 주관적 관점에서 결정하는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나타냄
  - 단,  $i(= 1, 2, \dots, N)$ : 노동공급자(본 보고서의 맥락에서는 세금을 체납한 폐업 영세개인사업자)
    - $y_{1i}, y_{2i}$ : 일반적으로 연구자나 과세당국에 관찰되지 않는 폐업 체납자  $i$ 의 두 가지 의도·의향을 나타내는 잠재적 종속변수  
Gronau 모형에서는  $y_{1i} \geq y_{2i}$ 인 경우에만  $y_{1i}$ 의 값만이 0이 아닌 값으로 실현·관찰됨
    - $x_{1i}, x_{2i}$ : 폐업 체납자  $i$ 가 지닌 특성 변수
    - $\beta_1, \beta_2$ : 모수(parameters)
    - $\epsilon_{1i}, \epsilon_{2i}$ : 폐업 체납자  $i$ 의 오차항(연구자 또는 과세당국에 관찰되지 않는  $i$ 와 관련한 정보 또는 외부적 환경변수)
  - 개인의 노동시장 수취임금:

$$y = \begin{cases} y_1 & \text{if } y_1 \geq y_2 \\ 0 & \text{if } y_1 < y_2 \end{cases} \quad \text{식 (1)}$$

- Gronau (1973)의 모형은 Amemiya(1985)가 토빗모형의 종류를 다섯 가지 분류·정리한 것 가운데 2번째 유형에 해당됨
- Sung (2014)도 Gronau (1973) 모형을 응용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출액함수를 제안·추정

□ 다만 세금 체납 폐업 영세개인사업자가 재창업을 통해 소득을 획득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종속변수(소득)의 실제값을 직접 관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종속변수의 값이 (+)인지의 여부, 즉 폐업 체납자의 재창업 여부만이 관측 가능하므로 종속변수( $y$ )가 두 가지 가능한 값을 가질 수 있는 이항분포(binomial distribution)를 따르는 것으로 보정하여 아래와 같이 모형을 수정하여 설정함

- 수정모형의 기본 형태

$$y = \begin{cases} 1 & \text{if } y_1 \geq y_2 \\ 0 & \text{if } y_1 < y_2 \end{cases} \quad \text{식 (2)}$$

- 상세 모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소개

- 이 경우 상기 식에 조건부 기대치를 취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됨

$$\begin{aligned} E(y|x) &= \Pr(y_1 > y_2|x) = \Pr(x_1\beta_1 - x_2\beta_2 > \epsilon_2 - \epsilon_1) && \text{식 (3)} \\ &= \Pr(x\beta > \epsilon) \\ &= \Phi_\epsilon(x\beta) \end{aligned}$$

단,  $x = (x_1, -x_2)$ ,  $\beta = (\beta_1, \beta_2)$ ,  $\epsilon = \epsilon_2 - \epsilon_1$ ,  $\Phi_\epsilon(\cdot)$ :  $\epsilon$ 의 누적확률분포함수

- 위에서는 재창업한 폐업 영세개인사업자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재창업하더라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흑자를 내더라도 체납세금을 자진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런 경우 재창업이 체납세금의 성공적인 후납부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재창업을 통한 체납세금 환수효과를 분석하는 데 상기 모형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위의 식 (2)에서, 종속변수  $y$ 가 단순히 재창업을 하는 경우를 1로 보지 않고, 대신 성공적 재창업을 통해 체납세금을 성공적으로 전액납부하게 되는 경우로 수정하면 성공적인 재창업과 체납세금 납부가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설정하여 가산금 면제제도의 정책효과에 대한 일치추정치를 추정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본 보고서를 통틀어 세금을 체납한 폐업 영세사업자의 재창업이라고 하면, 재창업과 체납세금의 동시적 납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도록 함

## 2) 폐업 영세개인사업자의 재창업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의사결정모형

- 본 목에서는 폐업 체납자에 대해 어떠한 지원제도도 적용하지 않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폐업 체납자  $i$ 가 재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모형을 분석

- 재창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폐업 체납자가 재창업을 통해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수익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비교하여
- 전자가 후자보다 크면 노동시장에 (재)진입(즉,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결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폐업 상태를 그대로 유지

□ 모형 분석을 위해 분석자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현실에서 연구자·과세당국의 관점에서는 폐업 체납자  $i$ 의 재창업 여부( $y_i$ )만을 관찰 가능
- 재창업시  $y_i$ 의 값으로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여 재창업 여부를 구분하여 데이터를 정리함
- 따라서  $y_i$ 는 이항분포를 따름

□ 폐업 체납자  $i$ 는 재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기대수익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기대비용을 각각  $y_{1i}$ 과  $y_{2i}$ 라고 할 때,  $y_{1i} > y_{2i}$ 인 경우에는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이 (+)가 되므로 재창업을 결정하고, 반대( $y_{1i} < y_{2i}$ )의 경우는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므로 노동시장에 참여(재창업)하지 않음

- 따라서  $y_{1i} > y_{2i}$ 일 때  $y_i = 1$ 의 값을 부여하고,  $y_{1i} < y_{2i}$ 일 때  $y_i = 0$ 의 값을 부여
  - $y_{1i} = y_{2i}$ 일 때에는 무차별하지만
  - 연속확률분포의 특성상 특정한 점(여기서는  $y_{1i} = y_{2i}$ )에서의 확률은 통계학적으로 0이므로 상기의 부등식 조건에 등호를 수익 또는 비용 중 어느 쪽에 포함시키더라도 확률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 아래에서는 폐업 체납자  $i$ 가 지니고 있는 인적 특성과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대수익과 기대비용을 함수의 형태로 형상화하여 노동시장 참여(재창업) 의사결정모형을 분석함

□ 기대수익( $y_{1i}$ ) 방정식:

$$y_{1i} = x_{1i}\beta_1 - (1+\tau)L_i + u_{1i} \tag{4}$$

단,  $L_i$ : 폐업 체납자  $i$ 의 체납세금

$u_{1i}$  오차항

- 일반적으로 개인  $i$ 가 시장에서 당면하는 기대수익은  $i$ 의 인적 특성(교육, 경력, 직종, 업종, 경험, 사업규모 등)이나 능력 등과 같이 제3의 연구자 등에게 관찰되는 변수  $x_{1i}$ 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  $x_{1i}\beta_1$ , 개인  $i$ 가 지닌 특성이지만 외부(연구자)에 관찰되지 않는 정보와 기타 관찰되지 않은 시장 여건·환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변동되는 기대수익을 오차항으로 표시한  $u_{1i}$ 의 두 가지로 구성
  -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x_{1i}\beta_1$ 을 (세후)관찰기대수익이라고 지칭하여도 무방함
- 만약 노동시장에 참여(재창업)하고자 하는 개인이 폐업 체납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일반개인과 달리 노동시장에 참여(재창업, 재취업 등)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체납세액(가산금이 있는 경우 가산금 포함)을 납부·차감해야 하므로 일반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 시장수익에서 체납세금액을 차감해야 함
  - 그러므로 폐업 체납자  $i$ 가 재창업을 통해 (+)의 성과를 얻게 되는 경우 세금 체납액과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기대수익에서 체납세액 원금( $L_i$ )과 가산금( $\tau L_i$ )을 합산한 체납세금 상환액  $(1+\tau)L_i$ 을 차감해야 함

□ 기대비용(또는 기회비용,  $y_{2i}$ ) 방정식

$$y_{2i} = x_{2i}\beta_2 + R_i + u_{2i} \quad \text{식 (5)}$$

- 폐업 체납자  $i$ 가 노동시장에 참여(재창업·재취업 등)하는 경우 예상되는 제반(기대)비용은, 해당 폐업자가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직접)비용, 시장에서 최소한 기대하는 유보임금·유보소득( $x_{2i}\beta_2$ ), 기회비용적 관점에서 재창업을 아닌 대안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익( $R_i$ ), 기타 관찰되지 않는 비용(또는 오차항,  $u_{2i}$ )의 합으로 구성
- 기대비용의 세 가지 구성항목
  - 폐업 체납자  $i$ 의 관찰가능 인적 특성( $x_{2i}$ )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해당 폐업 체납자  $i$ 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이나 노동시장에서 해당 체납자가 주관적으로 평가·기대하는 유보임금 부분을 합산하여 금전단위로 환산하여 평가한 부분( $x_{2i}\beta_2$ )
  - 노동시장에서 재창업·재취업하지 않는 경우 대안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예: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자산을 은행에 예치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자수입 등)으로서, 일종의 기회비용의 의미를 지니는 항목으로서 시장(명목)이자( $R_i$ )

- 기타 관찰불가능한 요인과 관련된 유보임금 부분( $u_{2i}$ )

□ 조세지원 전 노동시장 진입(재창업) 결정과정: 폐업 체납자는 재창업 시에 기대할 수 있는 기대수익이 기대비용보다 크면 (재)창업을 통해 기대순수익이 (+)가 되므로 재창업(노동시장 참여)을 결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재창업이 오히려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기대되므로 폐업 상태를 유지

○ 즉,  $y_{1i} \geq y_{2i}$ 의 조건이 성립할 때 노동공급(재창업)을 결정( $y_i = 1$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재창업을 포기( $y_i = 0$ )

□ 체납세금액의 크기는 체납자별로 다르므로 폐업 체납자  $i$ 의 체납세금액  $L_i$ 는 체납자별 특성변수( $x_i$ )의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

○ 기회비용 관점에서 고려하는 시장에서 획득가능한 이자수입에 대해 주관적으로 부여한 가치  $R_i$ 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평균이자수입  $\bar{R}$ 에 개인적 특성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이자수입 차이(또는 오차)를 나타내는 개인 특성변수( $\psi_i$ )를 합산한 형태로 구성:  $R_i = \bar{R} + \psi_i$

○ 그러므로 폐업 체납자별 체납세금액과 이자수입은 모두 폐업 체납자  $i$ 의 특성변수( $x_i$ )의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

$$L_i = L_i(x_i) \quad \text{식 (6)}$$

$$R_i = R_i(x_i) \quad \text{식 (7)}$$

□ 과세당국의 관점에서는 폐업 체납자 가운데 얼마만큼의 비율로 재창업을 할 것인지가 주된 관심 사항이므로 재창업 확률을 중심으로 논의함

○ 통계학적으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의 기대치(expected value)는 확률을 나타냄

○ 그러므로 이항분포를 따르는 재창업 여부를 나타내는 종속변수  $y_i$ 의 통계적 기대치를 구하면 재창업 확률(조건부 기대치)을 얻을 수 있음

- 폐업 체납자  $i$ 의 특성변수( $x_i$ )가 특정한 값( $x_i = x_0$ )을 가지는 경우의 조건부 기대치를 구하면 아래와 같음

$$\begin{aligned}
 - E(y_i|x_i = x_0) &= 1 \times \Pr(y_1 > y_2|x_0) + 0 \times \Pr(y_1 < y_2|x_0) && \text{식 (8)} \\
 &= \Pr(y_1 > y_2|x_0)
 \end{aligned}$$

단,  $x_i = (x_{1i}, x_{2i})$

- 식 (4)와 (5)를 식 (8)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음
  - 단, 식 (6)과 식(7)에서 보듯이  $L_i$ 와  $R_i$  모두  $x_i$ 의 함수임에 유의할 필요
  -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잠정적으로 하첨자  $i$ 를 생략하고 아래와 같이 조건부 기대확률을 도출함

$$\begin{aligned}
 \Pr(y_1 > y_2|x_0) &= \Pr\{x_1\beta_1 - (1+\tau)L - x_2\beta_2 - R > u_2 - u_1|x_0\} && \text{식 (9)} \\
 &= \Pr\{x_0\beta - (1+\tau)L - R > u\} \\
 &= \Phi_u\{x_0\beta - (1+\tau)L - R\}
 \end{aligned}$$

단,  $u (= u_2 - u_1)$

$\Phi_u(\cdot)$ : 결함오차항  $u$ 의 누적확률밀도함수

- 상기의 식 (9)는  $x$ 의 정의구역(domain) 안에 있는 모든  $x_0$  값에 대해 성립하므로, 특정한  $x_0$  값 대신  $x$ 로 일반화할 수 있으며, 그때 식 (9)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  $x$ 의 함수 형태로 변환이 가능

$$\text{재창업 확률: } E(y|x) = \Phi_u\{x\beta - (1+\tau)L - R\} \quad \text{식 (10)}$$

□ 식 (10)의 재창업 확률  $\Phi_u\{x\beta - (1+\tau)L - R\}$ 은  $x$ 의 특성을 지니고 체납액이  $L$ 인 폐업 체납자가 평균적으로 시장에 참여(재창업)할 조건부 확률을 나타냄

- 폐업 체납자의 재창업 확률은 다음의 조건이 성립할 때 커짐
  - 재창업에 따라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차감한 기대수익( $x\beta$ )이 커질수록,
  - 상환해야 할 가산금을 포함한 세금 체납액이 작을수록,
    - 체납액 부담은 체납원금  $L$ 이 작아질수록,
    - 또는 가산금률  $\tau$ 값이 작아질수록 상환해야 할 체납액이 작아짐
  - 기회비용적 관점에서의 시장이자율 또는 평균적 관점에서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장(평균)수익률, 즉  $R$ 이 낮을수록 상기 확률이 커짐

□ 과세당국의 관점에서 위의 3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요인( $x\beta$ )과 세 번째 요인( $L$ )은 통제불가능한 요인들인 반면, 두 번째 요인( $L$  또는  $\tau$ )은 통제 가능

- 그러므로 과세당국이 정책적 관점에서 폐업 체납자들의 재창업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L$  또는  $\tau$ 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
  - 현행의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시 일정 범위 내에서  $L$ 과  $\tau$ 를 0으로 해주는 제도
  - 본 보고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소액·장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tau$ 를 0으로 해주는 제도
- 일견 위의 두 가지 제도는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전자가 후자보다 잠재적으로 우월한 특성을 보일 수 있음
- 그렇지만 전자의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불성실납세자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키고, 성실납세자를 역차별함으로써 조세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공평과세의 틀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부작용이 있으므로
  - 현행 제도(전자)가 반드시 후자(가산금 면제제도)보다 효과성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
- 종합적으로 두 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상호비교하기 위해서는 재창업 확률의 증감 차이뿐만 아니라 조세지원(체납세금 납부의무 면제 또는 가산금 면제 등)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여 순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우열(상대적 효과성·유효성 등)을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
-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위장 영세개인사업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록 현행 제도가 가산금 제도에 비해 재창업 확률이 더 크더라도 부작용에 의한 역효과가 그 차이보다 더 크다면 현행 제도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안(가산금 등 면제 제도)의 정책성 및 효과성 등이 보다 우월
  - 다만 이 문제는 상기 식에서 결합오차항( $u$ )의 확률분포와 도덕적 해이의 크기에 따라 대소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호간의 우위성은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문제임

### 3)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의 분석모형

□ 본 목에서는 폐업 체납자의 창업 및 체납액 납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 즉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의 정책효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한 이론모형을 설정·분석

- 분석모형의 기본 틀은 위의 (2)목에서와 같이 아무런 조세지원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설정한 모형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현행 제도에 맞게 모형을 수정하여 분석
  - 과세당국의 경우에는 이전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업 체납자  $i$ 의 재창업 여부 ( $y_i$ )만을 관찰 가능

□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에서 폐업 체납자가 노동시장에 참여(재창업)하는 경우 노동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수익의 경우에는, 폐업 체납자에게 아무런 조세지원을 해주지 않는 (2)목의 식 (4)에서 체납액(가산금 포함)에 대한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한편, 기회비용은 종전(식 (5))과 동일

-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는 세금체납 폐업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 체납세금(가산금 포함)의 납부의무를 면제시켜주므로, 일차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재창업)시에 체납세금 납부부담이 경감
- 그러므로 현행 제도하에서 노동시장 참여(재창업)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수익은 식 (4)에 비해 납부의무가 사라진 체납세금액( $(1+\tau)L$ )만큼 증가

□ 기대수익 방정식:

$$y_{1i} = x_{1i}\gamma_1 + v_{1i} = x_{1i}\beta_1 + v_{1i} \quad \text{식 (11)}$$

단,  $\beta_1, \gamma_1$ : 추정모수

$v_{1i}$ : 오차항

- 개인  $i$ 의 기대수익은  $i$ 의 인적 특성 등을 나타내는  $x_{1i}$ 에 따라 기대되는 평균적 관점에서 기대되는 수익  $x_{1i}\gamma_1$ 와, 개인  $i$ 가 지닌 특성이지만 외부(연구자)에 관찰되지 않는 정보 및 시장 여건 등과 같이 관찰되지 않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변동되는 기대수익을 오차항으로 표시한  $v_{1i}$ 의 두 가지로 구성

- 식 (2)의 기대수익과 비교해보면,  $y_{1i}$ 의 구성항목 중에서 세금체납액 상환부담이 면제되므로 식 (2)의 기대수익방정식에서  $(1+\tau)L_i$  항목이 사라짐
- $x_{1i}$ 의 계수에 해당하는 모수는 굳이  $\beta_1$ 와 동일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반화 모형에서는 별개의 모수인  $\gamma_1$ 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고 수취하는 일차적인 수익이 여타 요인에 대해 독립적이라면  $\gamma_1 = \beta_1$ 로 보아도 무방
- 연구자나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는 다른 결정요인들을 대표하는 오차항 역시 별개의 식 (2)의 오차항과 동일하다고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v_{1i}$ 로 구분하여 표시
  - 물론 논의의 편의상  $L_i$ 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v$ 의 확률분포는  $u$ 의 확률분포와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함

□ 기대비용(또는 기회비용) 방정식의 경우에는, 영세사업자들의 체납세액 납부의무를 면제(소멸)시켜주더라도 변화가 없으므로 종전(식 (5))과 기본적으로 동일

- 기대비용 방정식:  $y_2 = x_{2i}\beta_2 + R_i + v_{2i}$ 
  - 기대수익 방정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gamma_2 = \beta_2$ 이므로  $\beta_2$ 로 통일하여 표기함

□ 조세지원(체납액 면제) 후 노동시장 진입(재창업) 결정과정

- 폐업 체납자는 재창업시 기대순편익이 기대비용보다 높으면 창업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폐업 상태를 유지
  - 즉,  $y_{1i} \geq y_{2i}$ 의 조건이 성립할 때  $y_i = 1$ 로 실현되고, 반대의 경우  $y_i = 0$

○ 재창업 기대확률

$$\begin{aligned}
 E(y_i|x_i = x_0) &= \Pr(y_1 > y_2|x_0) && \text{식 (12)} \\
 &= \Pr\{x_1\beta_1 - x_2\beta_2 - R > v_2 - v_1|x_0\} \\
 &= \Pr\{x_0\beta - R > v\} \\
 &= \Phi_v\{x_0\beta - R\}
 \end{aligned}$$

단,  $\Phi_v(\cdot)$ : 결함오차항  $v(=v_2-v_1)$ 의 누적확률밀도함수

- 식 (11)은 정의구역 안의 모든  $x_0$ 에 대해 성립하므로,  $x_0$  대신  $x$ 로 일반화 가능

□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단순화 차원에서  $u(=u_2-u_1)$ 가  $v(=v_2-v_1)$ 와 동일한 분포형태를 지니는 확률분포를 따르며 따라서 누적확률밀도함수도 서로 동일한 것으로 상정함:  $\Phi_u = \Phi_v$

○ 그러므로 식 (12)는 다음의 함수 형태로 변환이 가능

$$E(y|x) = \Phi_u(x\beta - R) \quad \text{식 (13)}$$

□  $\Phi_u(x\beta - R)$ 은  $x$ 의 특성을 지니고 세금체납액(원금 기준)이  $L$ 인 폐업 체납자가 평균적으로 시장에 참여(재창업)할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데, 특이한 점은 동 재창업 확률이 체납액의 크기와 무관하다는 점임

○ 폐업 체납자의 재창업 확률은 다음의 조건이 성립할 때 커짐

- 재창업에 따라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차감한 기대수익( $x\beta$ )이 커질수록,
- 기회비용적 관점에서의 시장이자율 또는 평균적 관점에서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장(평균)수익률, 즉  $R$ 이 낮을수록 폐업 체납자들의 재창업 확률이 커짐

○ 상기의 두 가지 요인은 과세당국과 관계없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항목들임

○ 따라서 정부의 조세정책 개입을 통해 재창업 확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에 유의할 필요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의 정책 효과성·타당성 등을 폐업 체납자들의 재창업 확률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아무런 조세지원이 없는 가상적인 상황(식 (10))과 상기 제도의 경우(식 (13))를 상호비교하여 정책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

□ 재창업 확률은 조세지원이 없는 경우보다 현행의 조세지원제도(가산금 포함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하에서 더 크기 때문에, 폐업 체납자들의 창업 장려·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자활)와 경제활성화 등의 정책목표 달성도의 관점에서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할 때 동 제도의 정책 효과성이 이론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 조세지원 후(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의 재창업 확률이,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의 확률보다 더 크기 때문에 동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폐업 체납자들의 창업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시사함

- 지원 후 재창업 확률 =  $\Phi_u(x\beta - R) > \Phi_u\{x\beta - (1+\tau)L - R\}$  = 무지원시 확률
- $\therefore (1+\tau)L > 0$ 이므로  $x\beta - R > x\beta - (1+\tau)L - R$ 이기 때문에 단조증가함수인  $\Phi_u(\cdot)$ 의 특성상 위의 부등호가 성립

□ 다만 상기 정책의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여 체납액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 해주기 때문에, 폐업 체납자가 아무리 많이 창업하여 영세소득자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더라도 세금 체납액 환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체납세액이나 가산금이 커질수록 폐업 체납자들이 창업 후 상환의무가 부여되는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창업을 저해하여 재창업 확률을 낮추는데,
- 현행의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폐업 체납자들이 재창업을 하는 경우 체납세액과 가산금 부담의무를 소멸시켜주기 때문에 재창업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 그러나 과세당국의 관점에서 볼 때 비록 영세한 폐업 체납자들의 재창업을 활성화되어 저소득층 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면제해줌에 따라 나타나는 재정수입 측면에서의 손실은 불가피함

-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중 일부는 별도의 조세지원이 없더라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며, 그때  $x\beta - (1+\tau)L - R$ 가 지나치게 작은 값(예:  $-\infty$ )을 가지지 않는 한 재창업 확률  $\Phi_u\{x\beta - (1+\tau)L - R\}$ 은 (+)의 값을 가짐

- $p_0 \equiv \Phi_u\{x\beta - (1+\tau)\bar{L} - R\} > 0$

- 폐업 체납자의 총인원이  $n_0$ 이고 체납자 1인당 세금 체납액 평균이  $\bar{L}$ 이라고 하면 아무런 조세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 체납자 중 사후적으로 재창업 후 체납세금(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는 총규모는  $p_0 n_0 (1+\tau)\bar{L}$ 에 이룸

- 폐업 체납자의 총인원  $n_0$ 명 가운데  $p_0$ 의 비율만큼의 체납자(즉, 평균적으로  $p_0 n_0$ 명)들은 사후적으로 재창업 후 체납세금을 납부

- 가산금을 포함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tau)\bar{L}$ 이므로, 체납세금의 환수규모는  $p_0 n_0 (1+\tau)\bar{L}$

- 그런데 현행 제도의 경우처럼 창업시 체납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면 사후적으로 상환납부될 수 있는 규모, 즉 상기의  $p_0 n_0 (1+\tau)\bar{L}$ 만큼 세수감소(재정손실) 현상이 발생

- 그런데 가산금은 물론이고 체납액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경우 성실신고자 가운데에서도 고의적인 세금 체납 및 체납액 납부의무 면제를 시도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이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나 불의의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선의의 체납 및 폐업하게 된 영세사업자들의 재창업 등을 통한 자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제도지만
  - 악용(도덕적 해이) 시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상자 선별 및 철저한 사후검정이 바람직
    - 현행 제도(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세경감 혜택을 누리고자, 납세능력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폐업 후 재창업하는 위장영세개인사업자가 발생 가능
    - 이 경우 폐업 체납자의 총인원은  $n_0$ 에서  $n_1$ 으로  $\Delta n (\equiv n_1 - n_0)$ 만큼 증가하고 세수는 추가적으로  $\Delta n \bar{L}$ 만큼 추가적으로 감소
  - 고의적으로 체납·위장폐업 후 재창업하는 부정직한 개인사업자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문서상으로는 재창업한 폐업 체납자의 수가 증가하여 마치 경제활성화 및 재창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의 성과가 증가한 것처럼 과대포장되어 보여질 뿐
    - 폐업 체납한 위장 영세개인사업자를 제외하면, 자활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증가 효과, 재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세수(재정)손실만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아무리 선의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성실납부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일부에 해당될 뿐이지만 체납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것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불공평 문제를 야기하므로 신중할 필요

#### 4) 영세사업자 소액·장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제도의 분석모형

- 본 목에서는 폐업 체납자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영세사업자들의 자활을 도움으로써 체납세금의 납부를 활성화하여 재정건전화 효과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영세사업자 소액·장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제도의 정책 효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한 이론모형을 설정·검토

- 기본 분석모형의 틀은 위의 (2)~(3)목의 형태와 사실상 동일
- (3)목에서 검토한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와 달리 세금 체납액 원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가산금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므로,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소멸)시켜주는 현행 제도에 비해 폐업 체납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유인의 절대크기는 작아짐
  - 대안정책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소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 가산금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므로, 현행 제도에 비해 불필요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 성실신고자들이 느낄 수 있는 조세불공평·역차별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다만 폐업 체납자들에게 재창업이 제공되는 경제적 유인의 크기가 현행 제도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에 유인효과는 정량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
- 기대수익의 경우에는 조세지원을 해주지 않는 (2)목의 식 (4)에서 체납액 가산금 부분( $\tau L$ )만큼만 납부를 면제해주므로, 폐업 체납자가 시장 참여(재창업 등)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기대수익은 식 (4)보다는 조금 더 커짐
  - 그러나 가산금과 체납원금 전체에 대해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3)목의 식 (10)에 비해서는 기대수익이 체납액 원금( $L$ )만큼 작아짐
  - 기회비용은 (2)~(3)목의 경우(식 (5))와 기본적으로 동일
- 기대수익 방정식:
 
$$y_{1i} = x_{1i}\delta_1 - L_i + w_{1i} = x_{1i}\beta_1 - L_i + w_{1i} \quad \text{식 (14)}$$

단,  $\delta_1$ : 추정모수(논의의 단순화 측면에서  $\delta_1 = \beta_1$ 으로 보아도 무방)

$w_{1i}$ : 오차항

  - 폐업 체납자  $i$ 의 기대수익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x_{1i}\beta_1$ 와, 연구자 또는 과세당국에 관찰되지 않는 개인  $i$ 가 지닌 여타 특성과 외부적인 환경요인에 의해 변동되는 오차항을 나타내는  $w_{1i}$ 의 합에서 체납금 원금 상환의무로 인한 체납원금  $L_i$ 를 차감

- (3)목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오차항은 다른 결정요인들이 변화하였으므로 별개의 오차항이라는 의미에서 위의 두 가지 경우와 구별하여  $w_{1i}$ 로 표시
  - (2)~(3)목에서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w$ 의 확률분포는  $u$ 의 확률분포와 동일한 확률분포군(確率分布群, probability distribution family)에 속하는 것으로 상정해도 무방:  $\Phi_u = \Phi_v = \Phi_w$

□ 기대비용(또는 기회비용) 방정식의 경우, 다른 여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2)~(3)목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

○ 기대비용 방정식:  $y_2 = x_{2i}\delta_2 + R_i + w_{2i} = x_{2i}\beta_2 + R_i + w_{2i}$

단,  $\delta_2$ : 추정모수(논의의 단순화 측면에서  $\delta_2 = \beta_2$ 으로 보아도 무방)

$w_2$ : 오차항

□ 조세지원(채납액 가산금 면제) 후 노동시장 진입(재창업) 결정과정

- 폐업 채납자는 재창업 시 기대순편익이 기대비용보다 높으면 창업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폐업 상태를 유지

-  $y_{1i} > y_{2i}$ : 폐업 채납자  $i$ 는 재창업을 결정  $\rightarrow y_i = 1$

-  $y_{1i} < y_{2i}$ : 폐업 채납자  $i$ 는 현상 유지(폐업 상태)를 결정  $\rightarrow y_i = 0$

-  $y_{1i} = y_{2i}$ : 재창업과 현상 유지 사이에 무차별

-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통계학적 관점에서 볼 때 확률이 0이므로 통계분석 시에는 확률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함

- 따라서  $y_{1i} = y_{2i}$ 인 경우를  $y_{1i} > y_{2i}$ 인 경우 또는  $y_{1i} < y_{2i}$ 인 경우 중 어디에 포함시키더라도 통계분석 결과의 일치성(consistency)에는 차이가 없음

- 재창업 기대확률: 재창업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확률변수  $y_i$ 에(조건부, 즉  $x_i = x_0$ ) 기댓값을 취하면 아래와 같이 (조건부) 재창업 확률을 얻을 수 있음

- 식 (13)과 식 (14)를 아래에 대입하면,

$$\begin{aligned}
 E(y_i | x_i = x_0) &= \Pr(y_1 > y_2 | x_0) && \text{식 (15)} \\
 &= \Pr(x_1\beta_1 - L_i - x_2\beta_2 - R > w_2 - w_1 | x_0) \\
 &= \Pr(x_0\beta - L - R > w | x_0) \\
 &= \Phi_u(x_0\beta - L - R)
 \end{aligned}$$

단,  $\Phi_u(\cdot) = \Phi_w(\cdot)$ : 결합오차항  $w(=w_2-w_1)$ 의 누적확률밀도함수

○ 식 (15)는 정의구역 안의 모든  $x_0$ 에 대해 성립하므로,  $x_0$ 대신  $x$ 로 일반화 가능

$$E(y|x) = \Phi_u(x\beta - L - R) \quad \text{식 (16)}$$

□  $\Phi_u(x\beta - L - R)$ 은  $x$ 의 특성을 지니고 체납액이  $L$ 이고 주관적으로 기대·평가하는 시장이자소득이  $R$ 인 폐업 체납자가 평균적으로 시장에 참여(재창업)할 조건부 확률을 나타냄

○ 폐업 체납자의 재창업 확률은 다음의 조건이 성립할 때 커짐

- 재창업에 따라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차감한 기대수익( $x\beta$ )이 커질수록,
- 체납액( $L$ )이 작아질수록,
-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장(평균)수익률  $R$ 이 낮을수록 폐업 체납자들의 재창업 확률이 커짐

○ 상기의 세 가지 요인 가운데 체납액의 원금이 커질수록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산금의 크기 역시 줄어들므로 재창업 확률을 상향조정하는 효과를 나타냄

- 그러나 가산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가산금률을 조정하더라도 그것이 재창업 확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영세사업자 소액·장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제도의 정책 효과성·타당성 등을 폐업 체납자들의 재창업 확률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이런 지원이 없는 가상적인 상황(식 (10))과 상기 제도의 경우(식 (15))를 비교하여 정책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

□ 세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시켜주는 경우에는, 아무런 조세지원이 없는 경우에 비해 폐업 체납자들의 재창업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을 체납한 폐업 영세사업자의 재창업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 그러므로 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가산금 면제제도의 경우 정책 효과성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 지원 후 재창업 확률 =  $\Phi_u(x\beta - L - R) > \Phi_u\{x\beta - (1+\tau)L - R\}$  = 무지원 시 확률

- $\therefore (1+\tau)L > L$ 이므로  $x\beta - L - R > x\beta - (1+\tau)L - R$ 이기 때문에 단조증가함수인  $\Phi_u(\cdot)$ 의 특성상 위의 부등호가 성립

- 그러므로 폐업한 체납자에 대해 아무런 조세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가산금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경우에는 재창업 장려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동 효과는 가산금률( $\tau$ )이 높을수록 재창업 장려효과가 커짐
- 가산금의 역할이 세금 체납의 한계비용을 높임으로써 세금 체납을 감축하고자 하는 정책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미 세금 체납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폐업한 체납자들이 재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경제활동 참가)하고자 할 때 가산금만큼 노동공급에 따른 순기대수익을 낮춤으로써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효과(즉, 시장 실패)를 나타냄
  - 그러므로 이미 체납이 발생하고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관점에서는 가산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외생적인 시장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
    - ※ 유의사항: 노동시장 참여시 기대수익은 기회비용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참가에 따른 기대비용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음
    - 단, 위에서 분석할 때에는 기대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음

#### 다. 체납액 가산금 면제제도의 정책 타당성의 이론적 근거: 과세당국 순세수 측면

-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체납액 가산금 면제제도의 정책 타당성은, 가산금 면제를 통한 세수손실 규모와, 가산금을 면제함에 따라 체납세금의 징수율(또는 체납자 입장에서는 자진 납부율)이 상승하면서 증가하는 세금 체납액(원금 기준) 중 납부액 규모 사이의 대소관계를 상호 비교형량함으로써 정량적으로 성과(효과성)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
  - 세금 체납액 중 일부는 추후 납부 또는 추징을 통해 환수(회수)되지만, 일부는 최종적으로 결손처리되기도 하므로, 세수순편익(또는 순손실) 규모는 체납액(여기서는 가산금 포함) 중 징수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일반적으로 후자가 전자보다 크면 잠재적으로 상기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
  - 반면에 전자가 후자보다 크면 이전에 징수하였던 가산금보다 체납액 징수 증가분이 더 작아 세수 순손실을 나타내므로 정책 타당성을 논하기 어려움
- 현행 제도(영세개인사업자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의 경우에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폐업 체납자가 재창업·재취업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성공

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상환납부되는 세금이 없음

- 동 정책의 수혜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체납세금 전체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소멸)시켜주기 때문에 체납세금의 환수효과는 0이므로, 재정 손실은, 폐업 체납자에 대해 아무런 조세지원이 없는 상태였다면, 사후적으로 체납세금이 상환되는 비율에 해당되는 만큼의 세수손실이 발생
- 조세지원을 통해 재창업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해준 만큼, 동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세수 측면에서 직접적인 증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그러므로 폐업 체납자의 재창업 등을 통한 세수효과·재정효과 분석은 대안제도(가산금 면제 등의 제도)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논의함

□ 체납 폐업자의 재창업 시 체납액 가산금 면제 허용 시 과세당국의 순편익

- 세금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면 과세당국은 세수감소 효과와 세수증가 효과가 동시에 발생
  - 세수감소 효과: 가산금 면제 이전에 징수되었던 가산금 규모만큼, 가산금 면제에 따라 세금징수액이 감소
  - 세수증가 효과: 가산금 면제를 통해 체납세금액 납부율이 증가하면 징수체납세금 증가분만큼 세수가 증가
  - 그러므로 과세당국이 체감하는 세수순편익은 후자에서 전자를 차감한 금액
- 순편익 = 체납액 중 징수증가분 - 가산금 면제에 따라 감소하는 가산금 기징수액
  - 가산금 징수액 = 가산금 × 체납세액 징수율
  - 체납액 중 회수증가분 = 체납액 징수액<sub>2</sub> - 체납액 징수액<sub>1</sub>
    - 체납액 징수액<sub>1</sub>: 대안제도 시행 전 체납액 중 (예상)회수 징수액
    - 체납액 징수액<sub>2</sub>: 대안제도 시행 후 체납액 중 (예상)회수 징수액
- 과세당국 입장에서의 순편익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L \times (p_2 - p_1) - \tau \times L \times p_1 = L \{ p_2 - (1 + \tau) p_1 \}$ 
    - 단,  $L$ : 세금 체납액
    - $\tau$ : 가산금률(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단일세율로 가정)
    - $p_1$ : 영세사업자 가산금 면제 시행 전 세금체납액 (자발적) 징수(회수)율
    - $p_2$ : 영세사업자 가산금 면제 시행 후 세금체납액 (자발적) 징수(회수)율

- 세금채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면 채납세금 납부에 대한 총부담(기존의 가산금 포함)이 감소하므로 세금채납액에 대한 자발적 납부비율(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징수(회수)율)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 그러므로  $p_2 \geq p_1$ 의 조건이 성립
  - 만약 채납액 자진납부비율이 한계비용(가산금 등)의 강단조감소함수(strictly monotonic decreasing function)하면  $p_2 > p_1$ 의 조건이 성립

□ 과세당국 입장에서 가산금 면제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순편익이 (+)이면, 가산금을 면제하더라도 징수세수 규모가 증가하므로, 잠재적으로 영세사업자 대상의 채납액 가산금 면제제도가 (+)의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만약 순편익이  $L \times (p_2 - p_1) - \tau \times L \times p_1 = L\{p_2 - (1 + \tau)p_1\} > 0$ 이면 잠재적으로 가산금 면제제도의 정책효과가 긍정적
- 상기의 부등식으로부터 (+)의 순편익을 만족시켜주는 조건을 도출하면
  - $p_2 - (1 + \tau)p_1 > 0 \rightarrow p_2 > (1 + \tau)p_1$ 의 조건이 충족

$$\text{즉, } \frac{p_2}{p_1} > 1 + \tau \quad \text{또는} \quad \frac{p_2 - p_1}{p_1} > \tau \quad \text{식 (17)}$$

□ 상기 조건의 의미는 가산금 면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세금 채납액(원금 기준)에 대한 징수분 증수효과가 가산금 면제액보다 더 커야만 정책성·타당성이 잠재적으로 인정됨을 의미

- 즉, 가산금 면제를 통해 채납세금액의 납부율의 증가율이 최소한 가산금률보다 높아야 가산금 면제제도를 통해 과세당국이 체감하는 순세수 효과가 (+)의 값을 실현할 수 있음을 의미
-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금 채납액에 대한 징수율의 상승률이 가산금률보다 더 커야 정책 효과성·타당성이 인정됨을 의미
  - 채납세금 징수율 제고를 통한 증수(增收)효과가 가산금 면제로 인한 세수감소보다 더 커야 세수 측면에서 최소한 동 정책이 효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 증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산금률보다 채납세금의 징수비율의 증가율이 더 높아야 함을 의미
  - 가산금률이 높을수록 채납세금 징수율도 더 많이 증가하여야만 가산금 면제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
- 아래의 예시를 통해 이해도를 증진

□ (예시) 세금 체납액이 3,000만원, 가산금률 10%, 체납세금 징수(회수)율이 30%(가산금 면제제도가 없는 경우, 기준선(baseline))이었는데, 가산금 면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체납세금 징수율이 32%(Case 1) 또는 35%(Case 2)로 증가한다는 가상적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체감하는 (세수)순편익의 변화 효과

○ 체납세금 가산금 면제 시 세수감소 규모

- 세금체납액(3,000만원) × 회수율(30%) × 가산금률(10%) = 90만원

○ 세금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징수규모

- 기준선 (가산금 부과, 회수율 30%)

• 체납액+가산금(3,300만원) 중 30% 회수: 총 990만원

- Case 1 (가산금 면제, 회수율 32%)

• 체납액 3,000만원 중 32% 회수: 총 960만원

- Case 2 (가산금 면제, 회수율 35%)

• 체납액 3,000만원 중 35% 회수: 총 1,050만원

○ 결과적으로 가산금 면제를 통해 기회비용적 관점에서 포기한 가산금 징수가능세액(상기 예에서 90만원)보다 체납원금에 대한 징수세액 증분이 더 큰 경우 (Case 2)에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가산금 면제제도의 실효성·타당성이 인정 가능

○ 상기 예시에서는 징수율이 현재의 30% 수준에서 가산금률(10%) 만큼 증가한 33%에 이를 때 무차별해지며, 징수율의 상승률이 가산금률보다 높으면 잠재적으로 경제성이 있고, 그보다 낮으면 손실을 의미

- 그러므로 가산금 면제 후 징수율이 33%보다 더 높아지면 잠재적으로 정책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 그와 반대로 징수율이 33%에 미달하면 비용 대비 효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가산금 면제제도의 시행 전·후의 체납세금 징수율  $p_1$ 과  $p_2$ 은 각각 위의 나항에서 논의하였던  $p_1 = \Phi_u\{x\beta - (1+\tau)L - R\}$ 과  $p_2 = \Phi_u(x\beta - L - R)$ 의 관계가 성립

○  $x\beta - (1+\tau)L - R < x\beta - L - R$ 이므로  $\Phi_u\{x\beta - (1+\tau)L - R\} < \Phi_u(x\beta - L - R)$ 이 항상 성립하여  $p_1 < p_2$ 의 관계가 성립

○ 상기 관계를 식 (17)에 대입하면  $\frac{\Phi_u(x\beta - L - R)}{\Phi_u\{x\beta - (1+\tau)L - R\}} > 1 + \tau$ 의 관계가 도출

- 여기에서 가산금률  $\tau$ 의 값이 커질수록 부등호의 좌변의 분모가 작아지므로 좌변의 크기가 커지지만, 동시에 우변의 값도 커지므로  $\tau$ 의 값을 증가시킬 때 상기 부등호의 관계를 충족시키는지의 여부에 대한 효과는 불분명함
- $\tau$ 의 값이 증가할 때 부등식의 두 변의 값이 동일한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는 결과적으로 오차항  $u$ 의 누적확률분포함수  $\Phi_u(\cdot)$ 의 형태에 의존함
- 만약 두 측정점  $x\beta - (1+\tau)L - R$ 과  $x\beta - L - R$  사이에 폐업 체납자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면, 즉 두 점 사이의 구간에 위치한 폐업 체납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상기 부등식의 관계가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짐
- 다만 두 측정점 사이에 존재하는 폐업 체납자의 비율의 크기는 표본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형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사례별로(on a case-by-case basis) 검정이 필요한 문제임
- ※ 참고적으로 현행 제도(영세개인사업자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의 경우 도덕적 해이 현상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체납세금 납부의무 면제를 통해 감소하는 세수규모는, 전체 폐업 체납자의 수와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을 각각  $n_0$ 와  $\bar{L}$  이라고 할 때  $p_1 n_0 \bar{L} \approx \Phi_u\{x\beta - (1+\tau)\bar{L} - R\} n_0 \bar{L}$
- 만약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납세의무자의 수가  $n_0$ 에서  $n_1$ 으로 증가한다면 세수감소규모는 대략  $\Phi_u\{x\beta - (1+\tau)\bar{L} - R\} n_0 \bar{L} + \Delta n \bar{L}$ 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단,  $\Delta n \equiv n_1 - n_0$
-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의로 위장 세금 체납 및 폐업 사업자들은, 고의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체납 및 일시적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것일 뿐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의·위장 폐업 체납자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재창업을 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라. 영세사업자 소액·장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제도의 정책적 타당성 비교분석

- 폐업 체납자의 재창업 확률은, 폐업 체납자에 대해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경우  $\Phi_u\{x\beta - (1+\tau)L - R\}$ 로 표현되는데, 현행 제도와 대안제도의 경우에는 폐업 체납자들의 재창업 확률과 상호간의 대소·우열관계는 아래와 같음

○ 측정점의 대소관계

$$- x\beta - (1+\tau)L - R < x\beta - L - R < x\beta - R$$

(무지원)                      (가산금 면제)                      (채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 정책대안(가산금 면제 시)의 경우  $\tau L = 0$
- 현행 제도(채납세금(가산금 포함) 납부의무 면제)의 경우:  $(1+\tau)L = 0$

○ 조건부 확률의 재창업 확률의 대소관계

$$- \Phi_u\{x\beta - (1+\tau)L - R\} < \Phi_u(x\beta - L - R) < \Phi_u(x\beta -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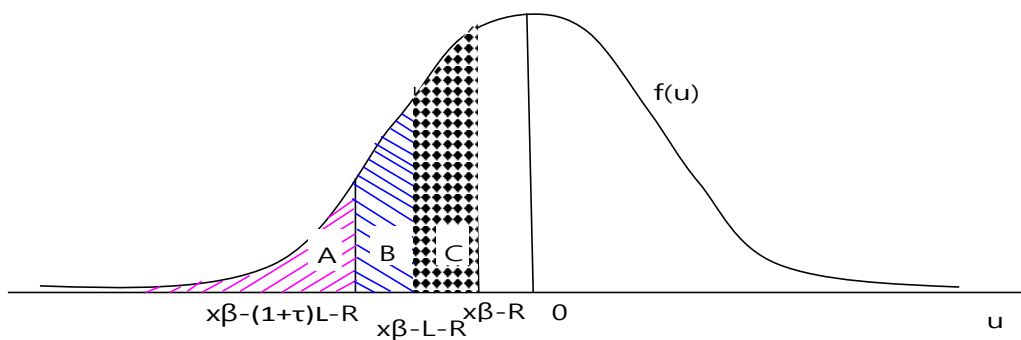
(무지원)                                      (가산금 면제)                                      (채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 [그림 III-1]은 회귀방정식의 오차항  $u$ 의 확률밀도함수를  $f(u)$ 라고 할 때,  $u$ 의 누적확률을 기준으로 상기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재창업 확률 측정점과 재창업 확률을 그림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줌

○ 위의 재창업 확률을 [그림 III-1]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아무런 조세지원이 없는 경우의 재창업 확률:  $\Phi_u\{x\beta - (1+\tau)L - R\} = A$
- 대안정책(가산금 면제제도)의 재창업 확률:  $\Phi_u(x\beta - L - R) = A + B$
- 현행 제도(채납세금 납부의무 면제)의 재창업 확률:  $\Phi_u(x\beta - R) = A + B + C$

[그림 III-1] 재창업 확률의 비교



□ 폐업한 채납 영세사업자의 자활 및 재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정책 목적 중 일부로 하는 두 정책(세금채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 가산금 면제제도)은 재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폐업 채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창업지원의 일환으로 재창업시의 제반 부담 중 일부를 경감시켜주는 것을 주된 정책 내용으로 함

- 제도의 설계 등의 측면에서 두 제도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지만
  - 폐업 체납자(영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체납액 상환부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두 제도는 유사한 제도
- 그러나 납세자의 행태 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체납액(가산금 포함) 전체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소멸)시켜주는 것과 가산금만 선택적으로 면제해주는 두 제도 사이에는 매우 커다란 차이가 존재
- 전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사업자 중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려는 의도를 가지거나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경우를 배제하기 어려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
- 아울러 전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자에 비해 세금 체납자의 경제적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세부담의 공평성이 저해되고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내포
  - 아울러 가산금과 체납원금 모두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기 때문에 재창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소기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더라도 재정 측면에서 체납세액이 회수되지 않으므로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체납액 원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경우 성실신고자 가운데에서도 고의적인 세금 체납 및 체납액 납부의무 면제를 시도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이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나 불의의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선의에서 체납 및 폐업하게 된 영세사업자들의 재창업 등을 통한 자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제도지만
  - 악용(도덕적 해이) 시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상자 선별 및 철저한 사후검정이 바람직
  - 아울러 아무리 선의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성실납부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일부에 해당될 뿐이지만 체납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것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불공평 문제를 야기하므로 신중할 필요

- 상기 정책 중 후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체납 폐업 영세사업자들의 자활 및 세금 체납 완화를 목적으로 체납액 가산금 부담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재창업이 활성화되는 만큼 영세소득자들의 소득증대, 경제활성화와 함께 세금 체납액 원금 중 일부를 추가 환수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산금 부담을 면제시켜주므로, 기존 제도(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에 비해서는 폐업 체납자가 체감하는 체납세금의 부담 완화 정도가 작지만,
  - 가산금 납부의무만 면제해주고 체납원금은 분할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해줄 뿐이며, 납부의무는 지속되므로 재정 측면에서의 일부 손실 보전이 가능
    - ※ 체납액 상황부담 완화수준의 변화
      - (기존 제도) 체납액+가산금 → (가산금 면제 제도) 체납액
  
-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부작용, 세금 체납액 환수 등을 통한 재정 보전 측면 등에서 볼 때 가산금 면제제도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인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폐업 체납자의 재창업 활성화를 통한 영세사업자들의 자활 지원 효과는, 재창업 시 그들에게 부여되는 경제적 유인이 기존 제도보다 작은 만큼, 재창업 유발효과(확률)는 기존 제도보다 조금 더 작은 것으로 분석됨
  - 상기의 확률 차이는  $\Phi_u(x\beta - R) - \Phi_u(x\beta - L - R) (> 0)$
  - 정량적으로 그 크기는 체납액(L)의 크기와 누적확률밀도함수( $\Phi_u$ )의 곡률(curvature)에 의존
    - 그런데 체납액의 크기는 체납자별로 다르며, 오차항의 확률분포에 대한 정보도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 동 확률의 수치적 크기는 사전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문제

#### 4. 소결

- 영세사업자 체납액 가산금 면제의 경우 체납금 납부의무 면제(소멸)특례제도에 비해 폐업 체납자들에 대한 창업 활성화 효과(재창업 확률)는 다소 작지만, 여전히 조세지원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소기의 재창업 확률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대안제도(가산금 등 면제)는 현행 제도(체납세금 납부의무의 소멸·면제)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 해이(예: 성실납세 의무에 대한 책임감 등이 약화되는 현상 등)와 불법적 행위(예: 위장 체납·폐업 등)가 증가하는 문제와, 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부담의 역차별 등 세부담의 공정성 차원에서의 문제점 등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현행 제도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재창업 시에 체납세금 전액에 대한 세금납부를 면제시켜주므로 세부담 회피 목적으로 고의적·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위장폐업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게 작용
  - 반면에 대안제도에서는 가산금을 면제해주더라도 체납세금 원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지속되기 때문에 고의적 체납 및 위장 폐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작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 비해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작아짐
  
- 본 장의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주면, 폐업 체납자들의 재창업 확률을 높여주므로 영세사업자의 자활효과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가산금 면제에 따라 일차적으로 정부의 재정(체납액 환수)이 감소되는데, 재창업 활성화를 통해 체납세금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상환되는지에 따라 세수감소 규모가 축소되거나 또는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동 효과는 실증분석을 통해 별도의 경제성 검정작업이 필요한 사안
  
- 만약 가상적으로 체납자 전원이 폐업을 결정하고 이들 가운데 재창업을 하는 경우 세금 체납액을 사후에 납부하는 것으로 단순화시켜 본다면, 체납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없는 경우와 영세사업자의 소액·장기 체납액 가산금 면제제도를 적용해주는 경우의 재창업 확률(각각  $\Phi_u\{x\beta-(1+\tau)L-R\}$ 과  $\Phi_u(x\beta-L-R)$ )은 제3절 나항에서 과세당국이 인지하는 징수율  $p_1$ 과  $p_2$ 에 해당
  - 누적확률밀도함수  $\Phi_u(\cdot)$ 가 단조증가함수(monotonic increasing function)라는 점에 착안할 때  $p_1 = \Phi_u\{x\beta-(1+\tau)L-R\} < = \Phi_u(x\beta-L-R) = p_2$ 의 조건이 성립하므로,
  - 가산금을 면제할 때 재창업 확률이 상승

□ 다만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체납금 환수를 통한 재정 보전효과가 (+)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frac{\Phi_u(x\beta - L - R)}{\Phi_u\{x\beta - (1 + \tau)L - R\}}$ 의 비율이  $(1 + \tau)$ 보다 커야 하는데,

- 과연 이 조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는 실증분석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일반적으로 구간  $[x\beta - (1 + \tau)L - R, x\beta - \tau L - R]$  사이에 폐업 체납자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Phi_u(x\beta - L - R)$ 와  $\Phi_u\{x\beta - (1 + \tau)L - R\}$ 의 차이가 커지므로 상기의 확률 상대비의 크기가  $(1 + \tau)$ 보다 더 큰 값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짐
- 이는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 근처에 위치한 한계폐업·체납자들이 많을수록 가산금을 면제해줌으로써 재창업을 결정하는 폐업 체납자들의 절대수와 비율이 모두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 통계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림 III-1]에서 확률변수  $u$ 의 분산 (variance)이 작아질수록 체납세액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면제해줄 때의 정책 효과성이 커지며
  - 반대로 분산이 작을수록, 즉  $u$ 가 좌우로 넓게 분포할수록 가산금 면제제도의 정책(효과)성이 작아짐을 시사
- 그러므로 통계학적으로 가산금 면제제도의 정책성이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업 체납자들의 확률분포에 대한 통계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IV. 경제 효과성 분석





## IV. 경제 효과성 분석

### 1. 경제성 분석의 개요

#### 가. 수요추정

- 본 경제성 분석은 ‘취약계층의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 납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 제도의 수혜자가 면제받는 가산금과 체납세액 분할 납부로 인한 납부지연을 비용으로 설정하고, 수혜자가 재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편익으로 설정하고 추정함
  - 이러한 방법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에 앞서 이 제도의 수혜자 규모, 즉 제도의 수요를 추정함
  
- 2018년에 시행된 유사한 조세특례 항목인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의 대상자 8,009명을 기준<sup>4)</sup>으로 ‘취약계층의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제도의 수혜자를 다음 방법으로 추정함
  - 유사 제도의 대상자 × 체납액 기준에 따른 수혜자의 비율 × 본 제도의 대상자 증가율 × 신청자 비율
    - 체납액 기준에 따른 수혜자의 비율: 유사 제도인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이하 ‘체납액 소멸제도’)의 체납의무 소멸이 승인된 수혜자의 신청 당시 체납액 정보를 활용하여 전체 수혜자 중 체납액이 3,000만원 이하인 수혜자의 비율(54.8%)과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수혜자의 비율(80.0%)을 도출하여 적용
    - \* 기획재정부의 제안서에 제시된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의 대상자 숫자는 8,009명이나 본 연구진이 제공받은 2018년 체납액납부의무 소멸 승인자 자료는 총 6,940명의 승인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4) 기획재정부의 제안서에 제시된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의 대상자 숫자임

<표 IV-1> 체납액에 따른 수혜자의 비율

(단위: 명, %)

체납액 기준금액	체납의무 소멸이 승인된 수혜자	체납액에 따른 수혜자의 수	체납액에 따른 수혜자의 비율
3,000만원	6,940	3,803	54.8
5,000만원		5,552	80.0

자료: 2018년 체납액납부의무소멸 승인자의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부가되는 가산금, 농특세, 체납처분비 현황

- 본 제도의 대상자 증가율: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을 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납액 소멸제도의 조건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본 제도의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사 제도의 대상자보다 일정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된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sup>5)</sup>와 체납액 소멸 제도 사이의 신청자 증가율(33%)보다 본 제도의 증가율이 약 20%p 높을 것으로 가정하고 대상자 증가율을 도출함
- \* 2안의 경우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재창업 또는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는 1안에 적용되는 53%의 2배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함
- \* 1안과 3안의 경우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재창업 또는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는 53%의 1.5배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함
- 신청자 비율: 체납액을 분할하여 완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최대 3년 안에 분납해야 하는 1안은 유사제도의 약 70%가 신청할 것으로 가정하고 최대 5년 안에 분납해야 하는 2안과 3안은 유사제도의 약 80%가 신청할 것으로 가정함

5) 이 제도의 대상자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자로 등록 혹은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중이어야 하며,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평균 2억원 이하여야 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조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함. 또한 이 제도의 소멸한도액은 1인당 500만원임

<표 IV-2> 대상자 증가율

(단위: 명, %)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청자 수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자 수	기존제도 증가율	구분	본 제도의 증가율
6,010	8,009	33	1안	33%(기존 제도 증가율) + 20% = 53% (1.53배) 53% × 1.5 =80% (1.80배)
			2안	1, 3안의 증가율 × 2 =106% (2.06배)
			3안	1안의 증가율과 동일 80% (1.80배)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1안) 8,009명(유사 제도의 대상자) × 54.8%(체납액이 3,000만원 이하인 수혜자의 비율) × 1.8배(본 제도의 대상자 증가율) × 70%(신청자 비율) = 5,530명
- (2안) 8,009명(유사 제도의 대상자) × 80.0%(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수혜자의 비율) × 2.06배(본 제도의 대상자 증가율) × 80%(신청자 비율) = 10,559명
- (3안) 8,009명(유사 제도의 대상자) × 80.0%(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수혜자의 비율) × 1.8배(본 제도의 대상자 증가율) × 80%(신청자 비율) = 9,226명

<표 IV-3> 대상자 선정방법에 따른 수혜자 추정

(단위: 명, %)

	유사 제도의 대상자	체납액기준에 따른 수혜자비율	대상자 증가율	신청자 비율	수혜자 수
1안	8,009	54.8	1.80배	70	5,530
2안		80.0	2.06배	80	10,559
3안		80.0	1.80배	80	9,226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나. 비용 및 편익 추정

### 1) 비용

□ 본 분석에서의 비용은 취약계층의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 납부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 제도의 수혜자가 면제받는 가산금과 체납세액 분할 납부로 인한 납부지연이므로 다음과 같이 비용을 추산함

- (가산금 면제비용) 수혜자 수 × 1인당 가산금 금액
  - 수혜자의 개인의 가산금 금액은 그들의 체납액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각 안은 체납액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1인당 가산금 금액 또한 각 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주어야 함
  - 체납액이 3,000만원 이하인 승인자의 평균 가산금 금액은 488만원이며,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승인자의 경우 798만원임

<표 IV-4> 체납액기준에 따른 1인당 가산금 금액

(단위: 만원)

체납액	1인당 가산금 금액
3,000만원 이하	488
5,000만원 이하	798

자료: 2018년 체납액납부의무소멸 승인자의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부가되는 가산금, 농특세, 체납처분비 현황

- 수요 추정에서 도출한 수혜자 수와 1인당 가산금 금액을 곱하여 각 안의 가산금 면제 금액을 추산하면, 1안의 경우 26,986백만원이며, 2안의 경우 84,261백만원, 3안의 경우 73,623백만원임

<표 IV-5> 제도 시행으로 인한 가산금 면제 비용

(단위: 명, 만원, 백만원)

	수혜자 수	1인당 가산금 금액	제도 시행으로 인한 가산금 면제 비용
1안	5,530	488	26,986
2안	10,559	798	84,261
3안	9,226	798	73,623

자료: 2018년 체납액납부의무소멸 승인자의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부가되는 가산금, 농특세, 체납처분비 현황

- (체납세액 납부지연비용) 수혜자 수 × 연도별 1인당 체납액(가산금 제외) × 이자율(2.1%)
  - 수혜자들은 체납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동 제도가 시행되면 체납된 세금을 3년 또는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 본 비용에는 수혜자가 체납된 세금납부를 지연함으로써 정부가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세금액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비용을 국고채 3년물 금리(2018년 기준, 2.1%)를 적용하여 계산함
  - 각 안은 체납액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1인당 체납액을 각 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주어야 함

<표 IV-6> 대상자에 따른 체납액

(단위: 명, 만원, 백만원)

	체납액	가산금을 제외한 1인당 체납액	수혜자수	전체 체납액
1안	3,000만원 이하	920	5,530	50,876
2안	5,000만원 이하	1,404	10,559	148,248
3안	5,000만원 이하	1,404	9,226	129,533

자료: 2018년 체납액납부의무소멸 승인자의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부가되는 가산금, 농특세, 체납처분비 현황

- 체납액은 1안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2안과 3안은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 본 분석에서는 3년 혹은 5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매년 말일에 납부한다고 가정하고 비용을 계산함
  - \* 따라서 3년의 경우 제도 신청 후 1년차에는 체납액 100%에 대한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산정하며, 2년차에는 체납액의 66.67%에 대한 이자금액, 3년차에는 체납액의 33.33%에 대한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산정함
  - \* 5년의 경우 제도 신청 후 1년차에는 체납액 100%,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60%, 4년차에는 40%, 5년차에는 20%에 대한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산정함

<표 IV-7> 연차별 체납세액 납부지연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안	1,068	716	353	-	-
2안	3,113	2,491	1,868	1,245	623
3안	2,720	2,176	1,632	1,088	544

자료: 2018년 체납액납부의무소멸 승인자의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부가되는 가산금, 농특세, 체납처분비 현황

## 2) 편의

- 본 분석에서의 편의는 수혜자가 재창업 또는 취업을 하여 벌어들인 매출액 또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액임
  - 이때, 수혜자의 경제활동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세금과 세율은 다를 것이므로 수혜자가 재창업을 하는 경우와 취업을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세금액을 계산함. 각 경우에 대한 편의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재창업을 하는 경우에 수혜자가 부담하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음
    - 재창업하는 수혜자 수 × 1인당 세금액(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사업영위기간
  - 취업을 하는 경우에 수혜자가 부담하는 세금에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음
    - 취업하는 수혜자 수 × 1인당 세금액(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취업기간 × 고용유지확률
- 우선 재창업을 하는 수혜자와 취업을 하는 수혜자의 수를 도출하기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의 승인자 정보를 활용하여 이들의 재창업 및 취업 비율을 적용함

<표 IV-8>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승인자 비율

(단위: 명, %)

경제활동유형	승인자 수	승인자 비율
재창업	3,145	45.3
취업	3,795	54.7

자료: 2018년 체납액납부의무소멸 승인자의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부가되는 가산금, 농특세, 체납처분비 현황

- 이러한 재창업 및 취업 비율을 각 안의 수혜자 수에 적용하여 재창업자 또는 취업자 수를 도출하면, 1안의 경우 재창업자는 2,130명이며, 취업자는 2,571명이고, 2안의 경우 재창업자는 4,185명이며, 취업자는 5,054명, 3안의 경우 재창업자는 4,179명이며, 취업자는 5,047명임

<표 IV-9>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수혜자 수

(단위: 명, %)

		수혜자 수	재창업/취업 비율	경제활동에 따른 수혜자 수
1안	재창업	5,530	45.3	2,505
	취업		54.7	3,025
2안	재창업	10,559	45.3	4,783
	취업		54.7	5,776
3안	재창업	9,226	45.3	4,180
	취업		54.7	5,047

자료: 재정패널 1~10차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4), 자영업자 폐업 실태조사

#### 가) 재창업

- 재창업자가 1인당 부담하는 세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음
  - 부가가치세는 재창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매출액의 10%로 계산할 수 있음
  - 매출액은 창업자의 사업규모, 개인의 능력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체납액 소멸제도의 승인자 정보에서 체납액이 적을수록 영세한 사업장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음
    - 체납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저매출 창업자, 체납액이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고매출 창업자일 것으로 예상하고, 그들의 구성비율을 적용
    - 1안에서는 창업자 모두가 저매출 창업자일 것으로 가정하며, 2안과 3안에서는 68.5%는 저매출 창업자, 31.5%는 고매출 창업자일 것으로 가정함

<표 IV-10> 체납액에 따른 승인자의 비율

(단위: 명, %)

체납액 기준금액	체납액에 따른 승인자의 수	체납액에 따른 승인자의 비율
3,000만원 이하 (저매출)	3,803	68.5
3,000~5,000만원 (고매출)	1,749	31.5
합계	5,552	

자료: 2018년 체납액납부의무소멸 승인자의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부가되는 가산금, 농특세, 체납처분비 현황

- 창업자에게 적용할 매출액의 경우 재정패널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매출액 정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4)의 보고서를 활용하였음
  - 저매출의 경우 재정패널에서 1억~1억 5천만원 사이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평균 매출액 11,878만원을 사용하였음
    - 체납액이 3천만원 미만자인 체납액납부의무소멸 승인자의 신청 당시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약 1,134만원인 것을 감안하여 이들의 평균매출액이 1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으므로 재정패널에서 1억~1억 5천만원 사이의 매출액을 가진 가구원의 평균 매출액을 사용함
    - 이때 각 연도의 매출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18년 가치로 환산하여 활용함
  - 고매출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4)의 보고서 ‘자영업자 폐업 실태조사’에서 제시한 마지막 창업 시의 월평균 매출액을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18년 가치로 환산(2,061만원)하고 12개월을 곱하여 연평균 매출액(24,732만원)으로 사용6)
    - 재창업의 경우 최초창업 시보다 자영업 경험 축적 등의 이유로 매출액이 최초창업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4)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마지막 창업 시의 월평균 매출액을 사용함7)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4)의 보고서의 설문조사에서는 최초 창업과 마지막 창업 시의 월평균 매출액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최초 창업 시의 월평균 매출액은 1,165만원이며, 마지막 창업 시에는 평균 1,959만원으로 나타남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4)에 따르면 최초 창업 시의 월평균 매출액은 1,165만원이며, 마지막 창업 시의 월평균 매출액은 1,959만원으로 나타남

- 사업소득자의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매출액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매출액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부가가치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하였음
  - 저매출의 경우 재정패널에서 1억~1억 5천만원 사이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고매출의 경우 매출액이 2억~2억 5천만원인 가구원의 자료를 사용하여 도출하였음
  - 저매출인 경우의 부가가치세액 대비 소득세액의 비율은 4.5%이며, 고매출인 경우에는 5.3%로 나타남

<표 IV-11> 재창업자의 매출액 규모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액 비율

(단위: 만원, %)

매출액 규모	평균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소득세액	부가가치세액 대비 소득세액 비율
1억~1억5천만원	11,878	1,188	53	4.5
2억~2억5천만원	22,068	2,207	118	5.3

자료: 재정패널 1~10차 자료

- 각 자료를 활용하여 저매출 창업자와 고매출 창업자의 평균매출액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합한 1인당 세금액은 저매출 창업자의 경우 1,246만원, 고매출 창업자의 경우 2,617만원으로 나타남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규모로 책정함

<표 IV-12> 재창업자의 1인당 세금액

(단위: 만원)

	평균매출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1인당 세금액
저매출	11,878	1,188	53	5	1,246
고매출	24,732	2,473	131	13	2,617

자료: 재정패널 1~10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4), 자영업자 폐업 실태조사

- 각 안에 따른 수혜자 수 와 1인당 세금액을 곱하여 재창업자의 연간 편익을 도출하면, 1안의 경우 31,212백만원, 2안의 경우 80,257백만원임

<표 IV-13> 재창업자의 연간 편익

(단위: 명, 만원, 백만원)

		수혜자 수	1인당 세금액	재창업자의 연간 편익	
1안		2,505	1,246	31,212	
2안	저매출	3,276	1,246	40,819	80,257
	고매출	1,507	2,617	39,438	
3안	저매출	2,863	1,246	35,673	70,139
	고매출	1,317	2,617	34,466	

자료: 저자 작성(시나리오 분석)

- 이러한 재창업자는 그들이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4)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창업 시 사업영위기간은 평균 4.5년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서의 재창업자들은 경과기간이 5년이 될 때까지 영업을 하며, 처음 1년에는 6개월만 영업을 하는 것으로 설정함

<표 IV-14> 사업영위기간을 반영한 재창업자의 편익

(단위: 백만원)

경과기간	재창업자 편익		
	1안	2안	3안
1년	15,606	40,129	35,070
2년	31,212	80,257	70,139
3년	31,212	80,257	70,139
4년	31,212	80,257	70,139
5년	31,212	80,257	70,139

자료: 저자 작성(시나리오 분석)

나) 취업

- 사업장 폐업 후 취업을 하는 수혜자들의 1인당 세금액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의 평균 근로소득과 평균세율을 도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장을 폐업한 후 취업을 하는 임금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을 임금근로자 전체의 평균 근로소득과 같다고 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
  - 재정패널 1~10차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소득자에서 임금근로소득자로 전환된 가구원의 연간 근로소득과 유효세율을 활용하여 근로소득세 금액을 도출
    - 그 결과 취업자의 1인당 근로소득세는 29만원이었으며, 근로소득세의 10% 규모로 책정한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1인당 취업자의 세금액은 32만원임
    - 이때 각 연도의 근로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18년 가치로 환산하여 활용함

<표 IV-15> 취업자의 1인당 세금액

(단위: 만원, %)

연간근로소득	유효세율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1인당 세금액	평균연령
2,617	1.09	29	3	32	47세

자료: 재정패널 1~10차 자료

- 각 안에 따른 수혜자 수 와 1인당 세금액을 곱하여 취업자의 연간 편익을 도출하면, 1안의 경우 968백만원, 2안의 경우 1,848백만원, 3안의 경우 1,615백만원임

<표 IV-16> 취업자의 연간 편익

(단위: 명, 만원, 백만원)

	수혜자 수	1인당 세금액	취업자의 연간 편익
1안	3,025	32	968
2안	5,776		1,848
3안	5,047		1,615

자료: 저자 작성(시나리오 분석)

- 이러한 취업자는 그들이 임금근로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 재정패널자료에서 사업소득자에서 임금근로소득자로 전환된 가구원의 평균 연령은 47세임
  - 연령이 47세인 취업자가 60세까지 임금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취업자의 기대근로연수는 14년임
  - 하지만 취업자가 60세까지 매년 임금근로를 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연령별 고용률을 적용함으로써 연령별로 수혜자가 고용이 되어 있을 확률을 반영하여 편익을 도출함

〈표 IV-17〉 연령별 고용률

(단위: 천명, %)

연령 구간	인구	취업자	고용률
45~49세	4,332	3,515	81.1
50~54세	4,145	3,239	78.1
55~59세	4,107	2,982	72.6
60~64세	3,160	1,917	60.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IV-18〉 연령별 고용률을 반영한 취업자의 편익

(단위: 백만원)

연령(경과기간)	취업자 편익		
	1안	2안	3안
47(1년)	785	1,499	1,310
48(2년)	785	1,499	1,310
49(3년)	785	1,499	1,310
50(4년)	756	1,443	1,261
51(5년)	756	1,443	1,261
52(6년)	756	1,443	1,261
53(7년)	756	1,443	1,261
54(8년)	756	1,443	1,261
55(9년)	703	1,342	1,172
56(10년)	703	1,342	1,172
57(11년)	703	1,342	1,172
58(12년)	703	1,342	1,172
59(13년)	703	1,342	1,172
60(14년)	588	1,122	980

자료: 저자 작성(시나리오 분석)

다) 총편익

□ 재창업을 한 수혜자와 취업을 한 수혜자의 편익을 모두 합한 총편익을 경과기간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IV-19> 총편익(1안)

(단위: 백만원)

경과기간	재창업	취업	총편익
1년	15,606	785	16,391
2년	31,212	785	31,997
3년	31,212	785	31,997
4년	31,212	756	31,968
5년	31,212	756	31,968
6년	-	756	756
7년	-	756	756
8년	-	756	756
9년	-	703	703
10년	-	703	703
11년	-	703	703
12년	-	703	703
13년	-	703	703
14년	-	588	588

자료: 저자 작성(시나리오 분석)

<표 IV-20> 총편익(2안)

(단위: 백만원)

경과기간	재창업	취업	총편익
1년	40,129	1,499	41,628
2년	80,257	1,499	81,756
3년	80,257	1,499	81,756
4년	80,257	1,443	81,700
5년	80,257	1,443	81,700
6년	-	1,443	1,443
7년	-	1,443	1,443
8년	-	1,443	1,443
9년	-	1,342	1,342
10년	-	1,342	1,342
11년	-	1,342	1,342
12년	-	1,342	1,342
13년	-	1,342	1,342
14년	-	1,122	1,122

자료: 저자 작성(시나리오 분석)

<표 IV-21> 총편익(3안)

(단위: 백만원)

경과기간	재창업	취업	총편익
1년	35,070	1,310	36,379
2년	70,139	1,310	71,449
3년	70,139	1,310	71,449
4년	70,139	1,261	71,400
5년	70,139	1,261	71,400
6년	-	1,261	1,261
7년	-	1,261	1,261
8년	-	1,261	1,261
9년	-	1,172	1,172
10년	-	1,172	1,172
11년	-	1,172	1,172
12년	-	1,172	1,172
13년	-	1,172	1,172
14년	-	980	980

자료: 저자 작성(시나리오 분석)

#### 다. 경제성 분석

- 본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편익분석법(Benefit-Cost Analysis) 중에서 비용-편익비율 평가법(B-C Ratio)를 적용하여 경제성을 평가함<sup>8)</sup>
  - 편익-비용비율 평가법(B-C Ratio)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을 추정하고 이 값이 가장 큰 대안을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하는 방법
  - 사업의 비용 및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투입되거나 발생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를 현재에 발생하는 것으로 환산하여 비교함
  - 각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현재가치로 환산된 비용과 편익으로 표시함

$$B/Cratio = \frac{\sum_{t=0}^n \frac{B_t}{(1+r)^t}}{\sum_{t=0}^n \frac{C_t}{(1+r)^t}}$$

- $B_t$ 와  $C_t$ 는  $t$ 년도의 편익과 비용을 의미하며,  $r$ 은 사회적 할인율,  $t$ 는 분석기간을 의미함

8) 한국개발연구원(2008)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

- 편익 및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4.5%와 5.5%를 적용하였음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른 4.5%의 사회적 할인율과 2017년까지 적용된 사회적 할인율 5.5%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 우리나라의 공적 타당성 평가인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1999년 당시에는 7.5%의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변동을 반영하여 2004년 6.5%, 2008년 5.5%로 변동<sup>9)</sup>
    - \* 2017년 9월부터는 시장금리 및 경제성장률과 같은 지표가 추세적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여 4.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sup>10)</sup>
- 분석의 현재시점은 제도가 시작되는 2020년 말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취업자의 기대 취업기간인 14년(2020~2033년)임
  - 비용은 제도가 시행되는 2020년에 발생하고, 편익은 수혜자가 제도를 신청하고 사업 및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대 기간인 2020~2033년에 발생한다고 가정함

- 사회적 할인율을 4.5%로 적용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살펴본 경제성 분석결과, 1안의 경우 B/C는 4.66, 2안은 3.69, 3안은 3.69로 나타나 1안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 순현재가치로 평가하였을 때는 2안, 3안이 1안보다 더 크게 나타나지만, 사업의 규모, 즉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B/C가 더 높게 나타나는 1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는 1안의 B/C가 4.56, 2안은 3.61, 3안은 3.61로 나타남

#### 1) 4.5%의 사회적 할인율 적용

-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1안의 B/C는 4.66, 2안은 3.69, 3안도 3.69로 1안의 B/C가 가장 높게 나타남

9) 김상겸(2013), 『사회적 할인율 변화가 편익-비용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 조사의 사례분석』

1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8. 11), 「경제 및 재정 여건변화 등에 부합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표 IV-22> 경제성 분석 결과(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단위: 백만원)

구분	할인편익 계	할인비용 계	NPV	B/C
1안	135,476	29,062	106,414	4.66
2안	343,120	93,082	250,038	3.69
3안	299,863	81,330	218,533	3.69

자료: 저자 작성(시나리오 분석)

- 사회적 할인율을 4.5%를 적용하여 각 안에 따른 연도별 편익 및 비용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IV-23> 1안 경제성 분석 결과(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단위: 백만원)

연도	편익	비용	편익현재가	비용현재가	순현재가치
2020	16,391	28,054	16,391	28,054	-11,663
2021	31,997	716	30,619	685	29,934
2022	31,997	353	29,301	323	28,978
2023	31,968	-	28,014	-	28,014
2024	31,968	-	26,807	-	26,807
2025	756	-	607	-	607
2026	756	-	581	-	581
2027	756	-	556	-	556
2028	703	-	494	-	494
2029	703	-	473	-	473
2030	703	-	453	-	453
2031	703	-	433	-	433
2032	703	-	415	-	415
2033	588	-	332	-	332
합계	150,692	29,123	135,476	29,062	106,414

자료: 저자 작성(시나리오 분석)

<표 IV-24> 2안 경제성 분석 결과(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단위: 백만원)

연도	편익	비용	편익현재가	비용현재가	순현재가치
2020	41,628	87,374	41,628	87,374	-40,032
2021	81,756	2,491	78,235	2,384	66,708
2022	81,756	1,868	74,866	1,711	64,667
2023	81,700	1,245	71,593	1,091	62,636
2024	81,700	623	68,510	522	59,939
2025	1,443	-	1,158	-	1,013
2026	1,443	-	1,108	-	970
2027	1,443	-	1,060	-	928
2028	1,342	-	944	-	825
2029	1,342	-	903	-	790
2030	1,342	-	864	-	756
2031	1,342	-	827	-	723
2032	1,342	-	791	-	692
2033	1,122	-	633	-	554
합계	380,701	93,601	343,120	93,082	250,038

자료: 저자 작성(시나리오 분석)

<표 IV-25> 3안 경제성 분석 결과(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단위: 백만원)

연도	편익	비용	편익현재가	비용현재가	순현재가치
2020	36,379	76,344	36,379	76,344	-39,964
2021	71,449	2,176	68,372	2,082	66,290
2022	71,449	1,632	65,428	1,495	63,933
2023	71,400	1,088	62,568	953	61,614
2024	71,400	544	59,874	456	59,417
2025	1,261	-	1,012	-	1,012
2026	1,261	-	969	-	969
2027	1,261	-	927	-	927
2028	1,172	-	824	-	824
2029	1,172	-	789	-	789
2030	1,172	-	755	-	755
2031	1,172	-	722	-	722
2032	1,172	-	691	-	691
2033	980	-	553	-	553
합계	332,704	81,784	299,863	81,330	218,533

자료: 저자 작성(시나리오 분석)

## 2) 5.5%의 사회적 할인율 적용

-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1안의 B/C는 4.56, 2안은 3.61, 3안도 3.61로 4.5%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와 동일하게 1안의 B/C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26> 경제성 분석 결과(사회적 할인율 5.5% 적용)

(단위: 백만원)

구분	할인편익 계	할인비용 계	NPV	B/C
1안	132,500	29,050	103,450	4.56
2안	335,745	92,976	242,769	3.61
3안	293,415	81,239	212,176	3.61

자료: 저자 작성(시나리오 분석)

- 사회적 할인율을 5.5%를 적용하여 각 안에 따른 연도별 편익 및 비용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IV-27> 1안 경제성 분석 결과(사회적 할인율 5.5% 적용)

(단위: 백만원)

연도	편익	비용	편익현가	비용현가	순현재가치
2020	16,391	28,054	16,391	28,054	-11,663
2021	31,997	716	30,329	679	29,650
2022	31,997	353	28,748	317	28,431
2023	31,968	-	27,224	-	27,224
2024	31,968	-	25,805	-	25,805
2025	756	-	578	-	578
2026	756	-	548	-	548
2027	756	-	520	-	520
2028	703	-	458	-	458
2029	703	-	434	-	434
2030	703	-	412	-	412
2031	703	-	390	-	390
2032	703	-	370	-	370
2033	588	-	293	-	293
합계	150,692	29,123	132,500	29,050	103,450

자료: 저자 작성(시나리오 분석)

<표 IV-28> 2안 경제성 분석 결과(사회적 할인율 5.5% 적용)

(단위: 백만원)

연도	편익	비용	편익현재가	비용현재가	순현재가치
2020	41,628	87,374	41,628	87,374	-45,746
2021	81,756	2,491	77,494	2,361	75,133
2022	81,756	1,868	73,454	1,678	71,776
2023	81,700	1,245	69,577	1,060	68,517
2024	81,700	623	65,950	503	65,447
2025	1,443	-	1,104	-	1,104
2026	1,443	-	1,047	-	1,047
2027	1,443	-	992	-	992
2028	1,342	-	874	-	874
2029	1,342	-	829	-	829
2030	1,342	-	786	-	786
2031	1,342	-	745	-	745
2032	1,342	-	706	-	706
2033	1,122	-	559	-	559
합계	380,701	93,601	335,745	92,976	242,769

자료: 저자 작성(시나리오 분석)

<표 IV-29> 3안 경제성 분석 결과(사회적 할인율 5.5% 적용)

(단위: 백만원)

연도	편익	비용	편익현재가	비용현재가	순현재가치
2020	36,379	76,344	36,379	76,344	-39,964
2021	71,449	2,176	67,724	2,063	65,661
2022	71,449	1,632	64,193	1,466	62,727
2023	71,400	1,088	60,805	927	59,879
2024	71,400	544	57,636	439	57,196
2025	1,261	-	965	-	965
2026	1,261	-	915	-	915
2027	1,261	-	867	-	867
2028	1,172	-	764	-	764
2029	1,172	-	724	-	724
2030	1,172	-	686	-	686
2031	1,172	-	651	-	651
2032	1,172	-	617	-	617
2033	980	-	489	-	489
합계	332,704	81,784	293,415	81,239	212,176

자료: 저자 작성(시나리오 분석)

## 라. 소결 및 한계점

### 1) 소결

- 본 장에서는 ‘취약계층의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제도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다음의 3가지 안을 검토하였음
  - (1안)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재창업 또는 취업한 자가 대상이며, 체납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함
  - (2안)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재창업 또는 취업한 자가 대상이며,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3안)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재창업 또는 취업한 자가 대상이며,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비용-편익분석법을 적용한 경제성 분석결과 현재 고려중인 3가지 안 모두 B/C가 1을 초과하여 동 제도의 경제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3가지 안 중에서는 사회적 할인율 4.5%를 고려하였을 때 1안은 4.66, 2안은 3.69, 3안은 3.69로 나타나 1안의 경제성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는 제도의 대상자 요건에서 신청가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혜자가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편익보다 비용이 더 증가하는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여겨짐

### 2) 한계점

- 그러나 본 분석은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과 다양한 가정을 통해 편익과 비용을 추산함으로써 인해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우선, 본 분석에서의 비용은 수혜자가 면제받는 가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체납자가 수납을 포기하여 지불하지 않게 되는 체납액 또한 비용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음
  - 또한 편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재창업과 취업을 한 경우만을 반영하여 순수한 제도의 편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합리적인 가

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시도하지 못함

- 재창업의 경우 본 제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었으나 본 제도로 인하여 재창업을 하게 되었거나 사업의 규모를 확장한 경우만을 고려하는 것이 제도의 편익에 가까움
- 취업의 경우도 본 제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었으나 본 제도로 인하여 취업을 하게 되었거나 보다 긴 근로시간을 선택하게 된 경우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본 분석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과대추정되어 있을 수 있음

□ 재창업/취업자의 비율, 고매출/저매출 창업자의 비율 등을 기존 제도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체납자의 자료를 통해서 사용하고, 이들의 매출액 또한 다양한 가정을 통해 산정함으로써 인해 편익과 비용의 추정에 있어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가용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V. 형평성 분석





## V. 형평성 분석

### 1. 형평성 분석의 개요

- 형평성 분석은 신규 특례 도입의 수혜자와 일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함
  - 현행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는 납부조건이 없는 체납액 전액 탕감으로 일반 성실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의지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내포함
  - 이에 따라, 성실납세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체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어, 일반 성실납세자들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함
  - 신규 특례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제안되었기 때문에, 일반 성실납세자들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신규 특례는 기존 제도에 비해 형평성 차원에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됨
  
- 일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제시된 신규 특례의 세 가지 대안과 관련하여 의식조사를 통하여 신규 특례 도입의 정책 취지를 달성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조사함
  
- 신규 특례의 도입에 따른 형평성은 일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체납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은 체납 발생 전 세금 납부실적에 따라 신규 특례로 인해 얻게 되는 한계편익이 다를 수 있음
  - 이로 인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다가 체납이 발생한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정성적인 분석으로 형평성 문제를 검토함

## 2. 설문 조사의 개요

□ 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함<sup>11)</sup>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6월 13일에서 6월 19일 까지 7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함
- 표본은 2019년 6월 인구행정자료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배분하여 추출함

□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표 V-1>)

- 개인의 소득 및 부채 금액 정보를 비롯한 기초적인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배경을 조사함
- 신규 특례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의지 및 정부 신뢰도와 관련한 인식조사를 병행함
- 신규 특례와 관련하여서는 신규 특례의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세 가지 대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역차별 문제 및 정책 목표 달성에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 정책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대안과 역차별 문제가 가장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하게 함
- 최종적으로 선호하는 대안에 대해 선택하여 선호를 조사함

□ 응답자 분포는 다음과 같음(<표 V-2>)

- 기본적으로 균형잡힌(well balanced) 표본 추출임
- 남성의 경우 49.6%, 여성의 경우 50.4%임
-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이 46.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20~40대의 경우 균일하게 분포함
-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응답이 19.3%이며 인천/경기 지역이 30.6%를 차지하였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15.3%임
- 응답자 가운데 67.7%는 기혼자였으며, 32.3%는 미혼임
- 응답자 가운데 가구주의 경우가 54.7%, 가구원의 경우 45.3%임

11) 설문 조사는 Research & Research 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함

- 응답자의 가구원 수 분포를 살펴보면, 3인가구 이하가 60%를 상회하였고, 4인가구의 경우 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졸업 비율이 54.8%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2.2%, 전문대학교 졸업이 13.4%, 대학원 재학 이상은 9.6%로 나타남

### 3. 신규 특례와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

- 현행 제도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인지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서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84.5%로 나타나 신규 특례가 도입되어도 일반 납세자들의 제도 인지력은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 <표 V-3>은 개인 특성별로 현행 제도의 인지 여부를 조사함
  - 남성의 경우 84.7%가 현행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우는 84.3%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없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19.2%가 제도를 인지하여 기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보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광주/전라 지역이 20%가 넘는 응답자들이 제도를 인지하여 10%대에 그치는 기타 지역과 차이를 보임
  - 가구주일 경우 제도에 대한 인지 비율이 더 높았으며 대졸자 이상 집단에서 제도에 대한 인지가 높았음
  -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17.4%가 제도를 알고 있는 반면, 소득활동이 없는 집단에서는 7.7%만 제도를 인지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 체납과 관련된 제도인 만큼 체납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43.7%가 제도를 알고 있었으며, 체납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의 경우 12.8%만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음

<표 V-1> 주요 조사 내용

중분류	조사 내용
소득 및 부채 상황	지난 한달간 소득활동 여부
	소득활동 유형
	연간 소득금액
	부동산 시가와 금융자산 총액
	채무 유무
	채무 금액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 경력 유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규모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납부완료 금액
정부 신뢰도 및 세금에 대한 인식 수준	정부 관료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여부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
	조세제도가 조세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는지 여부
	탈세자 처벌수준에 대한 의견
	본인의 경제적 능력 대비 세금 납부 정도
	납부한 세금 대비 혜택 수준
	비슷한 경제적 능력의 납세자들 대비 세금 부담 정도
	10만원 취득시 정부 기부 의향 금액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에 대한 의견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인지 여부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도움 여부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성실납세자 역차별 여부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필요성
	납부의무 소멸제도 변경안의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도움 여부
	납부의무 소멸제도 변경안의 성실납세자 역차별 여부
	영세개인사업자 재기에 도움이 되는 제도안
	성실납세자 역차별이 적은 제도안
	선호하는 제도안

<표 V-2>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사례 수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496	49.6
	여성	504	50.4
연령별	19~29세	173	17.3
	30대	167	16.7
	40대	195	19.5
	50세 이상	465	46.5
지역별	서울	193	19.3
	인천/경기	306	30.6
	대전/세종/충청	106	10.6
	광주/전라	99	9.9
	대구/경북	100	10
	부산/울산/경남	153	15.3
	강원/제주	43	4.3
결혼 여부	미혼	323	32.3
	기혼	677	67.7
가구주 여부	가구주(세대주)	547	54.7
	가구원(세대원)	453	45.3
가구원 수	1인가구	177	17.7
	2인가구	179	17.9
	3인가구	285	28.5
	4인가구	294	29.4
	5인가구 이상	65	6.5
학력별	고졸 이하	222	22.2
	전문대졸	134	13.4
	대졸	548	54.8
	대학원 재학 이상	96	9.6

<표 V-3> 개인 특성별 현행 제도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알고있다	모른다
전체		(1,000)	15.5	84.5
성별	남성	(496)	15.3	84.7
	여성	(504)	15.7	84.3
연령별	19~29세	(173)	15.0	85.0
	30대	(167)	19.2	80.8
	40대	(195)	13.3	86.7
	50세 이상	(465)	15.3	84.7
지역별	서울	(193)	20.2	79.8
	인천/경기	(306)	11.1	88.9
	대전/세종/충청	(106)	15.1	84.9
	광주/전라	(99)	22.2	77.8
	대구/경북	(100)	11.0	89.0
	부산/울산/경남	(153)	17.6	82.4
결혼 여부	강원/제주	(43)	14.0	86.0
	미혼	(323)	13.9	86.1
가구주 여부	기혼	(677)	16.2	83.8
	가구주	(547)	18.1	81.9
가구원 수	가구원	(453)	12.4	87.6
	1인가구	(177)	15.3	84.7
	2인가구	(179)	17.3	82.7
	3인가구	(285)	15.8	84.2
	4인가구	(294)	15.3	84.7
학력별	5인가구 이상	(65)	10.8	89.2
	고졸 이하	(222)	11.3	88.7
	전문대졸	(134)	9.7	90.3
	대졸	(548)	17.9	82.1
소득활동 여부	대학원재학 이상	(96)	19.8	80.2
	소득활동 있음	(805)	17.4	82.6
소득활동 유형	소득활동 없음	(195)	7.7	92.3
	근로소득	(675)	16.9	83.1
	사업소득	(106)	21.7	78.3
채무 유무	둘다	(24)	12.5	87.5
	채무 있음	(432)	17.4	82.6
채납경험 유무	채무 없음	(568)	14.1	85.9
	채납경험 있음	(87)	43.7	56.3
채납경험 유무	채납경험 없음	(913)	12.8	87.2

- 현행 제도의 정책 목표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 것에 있으며, 일반 납세자들 입장에서 현행 제도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문으로 검토함
  - 현행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응답자들에게는 제도의 취지와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한 후 설문을 진행함
  - 현행 제도가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45.3%, 도울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1.9%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본 응답이 더 많음
  - <표 V-4>는 개인의 특성별로 제도의 정책 목표 달성에 관한 설문 결과를 요약한 것임
  - 남성과 여성 모두 45% 내외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와 50대 이상에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다는 응답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광주/전라 지역에서 정책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으며, 가구주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48.4%로 가구원 41.5%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자가 46%, 대학원 재학 이상이 49%로 다른 학력 응답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제도 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응답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제도가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6%이며,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의 경우 그 비율이 42.1%로 나타남
  - 체납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상이하였는데, 체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57.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체납경험이 없는 경우 44.1%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 V-4>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도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도울 수 있다고 생각	도울 수 없다고 생각	모르겠음
전체		(1,000)	45.3	31.9	22.8
성별	남성	(496)	44.6	34.3	21.2
	여성	(504)	46.0	29.6	24.4
연령별	19~29세	(173)	43.9	26.6	29.5
	30대	(167)	45.5	30.5	24.0
	40대	(195)	42.6	39.5	17.9
	50세 이상	(465)	46.9	31.2	21.9
지역별	서울	(193)	48.2	30.1	21.8
	인천/경기	(306)	45.8	31.0	23.2
	대전/세종/충청	(106)	44.3	27.4	28.3
	광주/전라	(99)	52.5	30.3	17.2
	대구/경북	(100)	36.0	37.0	27.0
	부산/울산/경남	(153)	46.4	34.0	19.6
	강원/제주	(43)	32.6	41.9	25.6
결혼 여부	미혼	(323)	45.5	28.2	26.3
	기혼	(677)	45.2	33.7	21.1
가구주 여부	가구주	(547)	48.4	32.2	19.4
	가구원	(453)	41.5	31.6	26.9
가구원 수	1인가구	(177)	46.9	28.2	24.9
	2인가구	(179)	41.9	32.4	25.7
	3인가구	(285)	48.8	29.5	21.8
	4인가구	(294)	42.2	37.1	20.7
	5인가구 이상	(65)	49.2	27.7	23.1
학력별	고졸 이하	(222)	44.1	26.6	29.3
	전문대졸	(134)	41.8	32.8	25.4
	대졸	(548)	46.0	31.8	22.3
	대학원재학 이상	(96)	49.0	43.8	7.3
소득활동 여부	소득활동 있음	(805)	45.8	33.4	20.7
	소득활동 없음	(195)	43.1	25.6	31.3
소득활동 유형	근로소득	(675)	45.6	33.8	20.6
	사업소득	(106)	50.0	30.2	19.8
	둘다	(24)	33.3	37.5	29.2
채무 유무	채무 있음	(432)	51.9	29.9	18.3
	채무 없음	(568)	40.3	33.5	26.2
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155)	62.6	30.3	7.1
	모른다	(845)	42.1	32.2	25.7
채납경험 유무	채납경험 있음	(87)	57.5	24.1	18.4
	채납경험 없음	(913)	44.1	32.6	23.2

- 반면, 현행 제도는 체납액을 전액 소멸시킴으로써 일반 성실납세자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있으며, 신규 특례는 이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함
  - <표 V-5>는 개인 특성별로 제도의 역차별 문제에 관한 응답 분포를 살펴봄
  - 실제로 응답자의 51.8%가 현행 제도의 경우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역차별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9.3%에 그침
  -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40대의 경우 60%로 기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광주/전라 지역은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타 지역보다 적게 나타남
  - 결혼 여부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데, 기혼 응답자의 경우 54.9%가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미혼 응답자의 경우 그 비율이 45.2%에 불과함
  -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이 증가할수록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3%이며, 대학원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경우 응답자의 64.6%가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대답함
  -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서도 응답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는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53.7%가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활동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44.1%가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응답함
  - 제도 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음
  - 체납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응답 비율이 차이가 있었는데, 체납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적었는데, 이는 이들이 제도의 잠재적 수혜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됨

<표 V-5>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성실납세자 역차별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역차별 한다고 생각	역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모르겠음
전체		(1,000)	51.8	29.3	18.9
성별	남성	(496)	54.0	30.4	15.5
	여성	(504)	49.6	28.2	22.2
연령별	19~29세	(173)	43.9	26.6	29.5
	30대	(167)	53.9	27.5	18.6
	40대	(195)	60.0	26.7	13.3
	50세 이상	(465)	50.5	32.0	17.4
지역별	서울	(193)	47.2	35.2	17.6
	인천/경기	(306)	52.3	26.5	21.2
	대전/세종/충청	(106)	50.0	29.2	20.8
	광주/전라	(99)	49.5	30.3	20.2
	대구/경북	(100)	58.0	29.0	13.0
	부산/울산/경남	(153)	52.9	28.8	18.3
결혼 여부	강원/제주	(43)	60.5	23.3	16.3
	미혼	(323)	45.2	27.2	27.6
가구주 여부	기혼	(677)	54.9	30.3	14.8
	가구주	(547)	52.7	31.3	16.1
가구원 수	가구원	(453)	50.8	26.9	22.3
	1인가구	(177)	50.8	24.9	24.3
	2인가구	(179)	50.3	30.7	19.0
	3인가구	(285)	48.8	29.1	22.1
	4인가구	(294)	57.8	29.3	12.9
학력별	5인가구 이상	(65)	44.6	38.5	16.9
	고졸 이하	(222)	44.1	30.6	25.2
	전문대졸	(134)	49.3	29.9	20.9
	대졸	(548)	53.3	29.2	17.5
소득활동 여부	대학원재학 이상	(96)	64.6	26.0	9.4
	소득활동 있음	(805)	53.7	30.4	15.9
소득활동 유형	소득활동 없음	(195)	44.1	24.6	31.3
	근로소득	(675)	54.7	29.6	15.7
	사업소득	(106)	50.0	35.8	14.2
채무 유무	둘다	(24)	41.7	29.2	29.2
	채무 있음	(432)	54.4	31.0	14.6
제도 인지 여부	채무 없음	(568)	49.8	28.0	22.2
	알고 있다	(155)	54.2	40.0	5.8
채납경험 유무	모른다	(845)	51.4	27.3	21.3
	채납경험 있음	(87)	46.0	40.2	13.8
	채납경험 없음	(913)	52.4	28.3	19.4

- 현행 제도와 관련한 일반 납세자들의 인식 수준에 근거하여, 현행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2%가 필요하지 않은 제도라고 응답하였으며, 37.1%가 여전히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함(<표 V-6>)
  - 개인 특성별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3.8%로 여성(36.7%)에 비해 크게 나타남
  -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기혼 응답자의 경우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혼 응답자에 비해 많이 높았음
  -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55.5%가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한 반면 40.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는 33.7%가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40.5%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이룸
  - 체납경험 유무에 따라 응답의 분포 역시 제도 인지 여부와 비슷하였는데, 체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51.7%가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한 반면, 27.6%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체납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35.7%가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41.4%가 동의하지 않았음
  - 이는 역차별 문제 관련 설문과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체납 경력이 있는 응답자를 제도의 잠재적 수혜자로 생각하면,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음
  
- 신규 특례(세 가지 대안과 관계없이)가 도입될 경우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지 설문한 결과 54.9%가 도울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5.8%가 도울 수 없다고 응답함(<표 V-7>)
  - 45.3%가 영세개인사업자를 도울 수 있다고 응답한 현행 제도의 경우보다 약 10%포인트 가깝게 증가한 54.9%가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다고 응답하여,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함
  - 개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2.6%로 높게 나타났으며, 체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응답자의 57.5%가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다고 응답함

<표 V-6>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	필요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	모르겠음
전체		(1,000)	37.1	40.2	22.7
성별	남성	(496)	38.9	43.8	17.3
	여성	(504)	35.3	36.7	28.0
연령별	19~29세	(173)	32.9	35.3	31.8
	30대	(167)	38.3	39.5	22.2
	40대	(195)	35.4	43.1	21.5
	50세 이상	(465)	38.9	41.1	20.0
지역별	서울	(193)	38.9	37.8	23.3
	인천/경기	(306)	37.3	39.2	23.5
	대전/세종/충청	(106)	36.8	36.8	26.4
	광주/전라	(99)	40.4	43.4	16.2
	대구/경북	(100)	37.0	44.0	19.0
	부산/울산/경남	(153)	34.6	43.1	22.2
	강원/제주	(43)	30.2	39.5	30.2
결혼 여부	미혼	(323)	36.8	33.1	30.0
	기혼	(677)	37.2	43.6	19.2
가구주 여부	가구주	(547)	40.4	41.7	17.9
	가구원	(453)	33.1	38.4	28.5
가구원 수	1인가구	(177)	35.0	35.0	29.9
	2인가구	(179)	36.3	44.7	19.0
	3인가구	(285)	40.0	35.8	24.2
	4인가구	(294)	35.7	45.6	18.7
	5인가구 이상	(65)	38.5	36.9	24.6
학력별	고졸 이하	(222)	39.2	35.1	25.7
	전문대졸	(134)	32.1	46.3	21.6
	대졸	(548)	37.0	40.0	23.0
	대학원재학 이상	(96)	39.6	44.8	15.6
소득활동 여부	소득활동 있음	(805)	38.1	41.5	20.4
	소득활동 없음	(195)	32.8	34.9	32.3
소득활동 유형	근로소득	(675)	37.8	42.4	19.9
	사업소득	(106)	41.5	36.8	21.7
	둘다	(24)	33.3	37.5	29.2
채무 유무	채무 있음	(432)	41.2	39.4	19.4
	채무 없음	(568)	34.0	40.8	25.2
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155)	55.5	38.7	5.8
	모른다	(845)	33.7	40.5	25.8
채납경험 유무	채납경험 있음	(87)	51.7	27.6	20.7
	채납경험 없음	(913)	35.7	41.4	22.9

<표 V-7> 납부의무 소멸제도 신규 특례의 영세사업자 재기 도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도움 수 있다고 생각	도움 수 없다고 생각	모르겠음
전체		(1,000)	54.9	25.8	19.3
성별	남성	(496)	55.0	26.4	18.5
	여성	(504)	54.8	25.2	20.0
연령별	19~29세	(173)	48.6	24.9	26.6
	30대	(167)	60.5	21.6	18.0
	40대	(195)	51.3	31.3	17.4
	50세 이상	(465)	56.8	25.4	17.8
지역별	서울	(193)	58.0	26.4	15.5
	인천/경기	(306)	55.9	23.2	20.9
	대전/세종/충청	(106)	54.7	25.5	19.8
	광주/전라	(99)	59.6	21.2	19.2
	대구/경북	(100)	52.0	26.0	22.0
	부산/울산/경남	(153)	52.9	30.1	17.0
	강원/제주	(43)	37.2	37.2	25.6
결혼 여부	미혼	(323)	50.8	23.2	26.0
	기혼	(677)	56.9	27.0	16.1
가구주 여부	가구주	(547)	57.6	26.1	16.3
	가구원	(453)	51.7	25.4	23.0
가구원 수	1인가구	(177)	54.8	21.5	23.7
	2인가구	(179)	49.2	30.7	20.1
	3인가구	(285)	55.8	25.6	18.6
	4인가구	(294)	56.5	26.9	16.7
	5인가구 이상	(65)	60.0	20.0	20.0
학력별	고졸 이하	(222)	58.6	18.0	23.4
	전문대졸	(134)	44.8	33.6	21.6
	대졸	(548)	55.3	26.8	17.9
	대학원재학 이상	(96)	58.3	27.1	14.6
소득활동 여부	소득활동 있음	(805)	55.3	27.7	17.0
	소득활동 없음	(195)	53.3	17.9	28.7
소득활동 유형	근로소득	(675)	56.0	26.7	17.3
	사업소득	(106)	51.9	35.8	12.3
	둘다	(24)	50.0	20.8	29.2
채무 유무	채무 있음	(432)	60.9	24.3	14.8
	채무 없음	(568)	50.4	26.9	22.7
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155)	67.1	27.1	5.8
	모른다	(845)	52.7	25.6	21.8
체납경험 유무	체납경험 있음	(87)	54.0	23.0	23.0
	체납경험 없음	(913)	55.0	26.1	18.9

□ <표 V-8>은 신규 특례가 일반 성실납세자들을 역차별하는지 여부를 개인 특성별로 분포를 살펴본 결과임

- 응답자의 50.7%가 신규 특례는 일반 성실납세자들을 역차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32.2%가 역차별한다고 응답함
- 현행 제도가 역차별한다고 응답한 51.8%보다 신규 특례의 경우 그 비율이 약 20%포인트 감소한 32.2%로 많은 차이를 보임
- 현행 제도가 역차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29.3%에 비해 신규 특례의 경우 그 비율이 20% 포인트가 넘게 상승하여 50.7%가 역차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역차별 문제 인식에 있어서 상당히 개선됨을 파악할 수 있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에 비해 40대 이상에서 신규 특례는 역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54.7%로 역차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강원/제주 지역은 41.9%가 역차별한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이룸
-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신규 특례의 도입이 일반 성실납세자를 역차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동시에 역차별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됨
- 소득활동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34.2%가 역차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활동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24.1%가 역차별한다고 응답함
- 제도 인지 여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역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역차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에 비해 모두 높은 경향을 보임
- 체납경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체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역차별한다고 생각한 비율이 41.3%로 체납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31.3%)에 비해 높게 나타나, 현행 제도하의 응답 결과와 대조를 이룸

□ 전반적으로,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 신규 특례가 현행 제도에 비해 영세개인의 재기를 돕는 데 더 바람직하게 보이며, 역차별 문제도 줄어드는 것으로 인지하여 현행 제도에 비해서 정책적 타당성 및 형평성 측면의 우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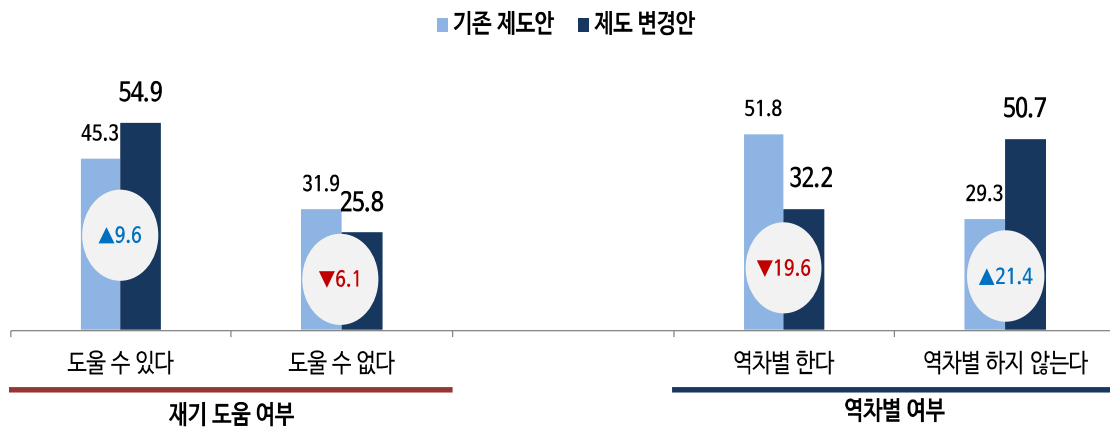
<표 V-8> 납부의무 소멸제도 변경안의 성실납세자 역차별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역차별한다고 생각	역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모르겠음
전체		(1,000)	32.2	50.7	17.1
성별	남성	(496)	33.3	51.8	14.9
	여성	(504)	31.2	49.6	19.2
연령별	19~29세	(173)	28.9	46.2	24.9
	30대	(167)	39.5	47.3	13.2
	40대	(195)	35.9	53.3	10.8
	50세 이상	(465)	29.2	52.5	18.3
지역별	서울	(193)	33.2	51.8	15.0
	인천/경기	(306)	31.4	51.3	17.3
	대전/세종/충청	(106)	26.4	54.7	18.9
	광주/전라	(99)	34.3	49.5	16.2
	대구/경북	(100)	32.0	47.0	21.0
	부산/울산/경남	(153)	32.7	50.3	17.0
	강원/제주	(43)	41.9	44.2	14.0
결혼 여부	미혼	(323)	33.7	44.6	21.7
	기혼	(677)	31.5	53.6	14.9
가구주 여부	가구주	(547)	33.5	51.7	14.8
	가구원	(453)	30.7	49.4	19.9
가구원 수	1인가구	(177)	33.9	46.9	19.2
	2인가구	(179)	30.2	52.5	17.3
	3인가구	(285)	33.3	47.0	19.6
	4인가구	(294)	34.0	53.1	12.9
	5인가구 이상	(65)	20.0	61.5	18.5
학력별	고졸 이하	(222)	26.6	46.8	26.6
	전문대졸	(134)	30.6	50.7	18.7
	대졸	(548)	33.6	51.6	14.8
	대학원재학 이상	(96)	39.6	54.2	6.3
소득활동 여부	소득활동 있음	(805)	34.2	51.1	14.8
	소득활동 없음	(195)	24.1	49.2	26.7
소득활동 유형	근로소득	(675)	33.9	52.0	14.1
	사업소득	(106)	34.9	46.2	18.9
	둘다	(24)	37.5	45.8	16.7
채무 유무	채무 있음	(432)	31.7	54.9	13.4
	채무 없음	(568)	32.6	47.5	19.9
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155)	36.8	56.8	6.5
	모른다	(845)	31.4	49.6	19.1
체납경험 유무	체납경험 있음	(87)	41.4	46.0	12.6
	체납경험 없음	(913)	31.3	51.2	17.5

- 현행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와 비교하여 신규 특례의 정책 취지 달성 및 역차별 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현행 제도의 경우 영세사업자를 도울 수 있다는 비율이 45.3%이며, 신규 특례의 경우 54.9%로 9.6%포인트 상승하였음
  - 반대로, 도울 수 없다는 응답은 현행 제도의 경우 31.9%로 신규 특례 25.8%의 경우에 비해 6.1%포인트 낮았음
  - 결론적으로, 일반 납세자들 입장에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정책 목표 달성에는 신규 특례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됨
  - 역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경우 응답자의 51.8%가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신규 특례의 경우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2%로 19.6%포인트 하락함
  - 역차별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현행 제도의 경우 29.3%, 신규 제도의 경우 50.7%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일반 납세자들 입장에서 역차별 문제는 신규 특례 도입으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V-1] 현행 제도와 신규 특례의 도움 여부 및 역차별 여부



- 신규 특례가 현행 제도보다 형평성 차원에서 더 우수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신규 특례로 제안된 세 가지 대안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대안 중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정책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응답자의 30.1%가 3안이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1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25.7%, 그리고 2안의 경우 21.4%로 나타남
- 1안의 경우는 체납액 한도(3,000만원)가 3안(5,000만원)의 경우보다 적기 때문에,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3안이 더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며, 2안의 경우는 취업 및 재창업 기간이 2021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3안과 1안의 2022년 기간과 비교하여, 현재 시점에서 미래 기한까지 촉박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결과적으로 응답자들은 체납 한도액과 현재부터 취업 및 재창업 요건 달성 기한까지를 고려하여 영세사업자의 재기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표 V-9>는 개인별 특성에 따른 세 가지 대안 선택의 분포를 보여줌
- 남성과 여성 모두 3안이 영세사업자의 재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0대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의 연령 집단에서 3안이 가장 도움이 되는 대안이라고 응답함
-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1안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제도를 모르는 응답자들의 경우는 3안을 선택하여 대조를 이룸
- 체납경험 유무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체납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34.5%가 2안이 영세사업자의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긴 취업 및 재창업 기간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해석됨
-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3안이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응답하였으며, 잠재적 수혜자로 볼 수 있는 체납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취업 및 재창업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표 V-9> 영세개인사업자 재기에 도움이 되는 제도안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1안	2안	3안	모르겠음
전체		(1,000)	25.7	21.4	30.1	22.8
성별	남성	(496)	25.0	21.8	31.5	21.8
	여성	(504)	26.4	21.0	28.8	23.8
연령별	19~29세	(173)	26.6	24.3	24.9	24.3
	30대	(167)	28.7	24.0	31.7	15.6
	40대	(195)	22.6	20.5	32.8	24.1
	50세 이상	(465)	25.6	19.8	30.3	24.3
지역별	서울	(193)	27.5	19.2	30.1	23.3
	인천/경기	(306)	22.5	22.5	32.7	22.2
	대전/세종/충청	(106)	26.4	17.9	32.1	23.6
	광주/전라	(99)	27.3	24.2	29.3	19.2
	대구/경북	(100)	27.0	22.0	29.0	22.0
	부산/울산/경남	(153)	29.4	22.9	27.5	20.3
결혼 여부	강원/제주	(43)	18.6	18.6	20.9	41.9
	미혼	(323)	25.1	22.0	27.2	25.7
가구주 여부	기혼	(677)	26.0	21.1	31.5	21.4
	가구주	(547)	25.4	20.8	31.8	21.9
가구원 수	가구원	(453)	26.0	22.1	28.0	23.8
	1인가구	(177)	24.3	15.8	31.6	28.2
	2인가구	(179)	25.1	18.4	30.2	26.3
	3인가구	(285)	24.9	24.2	30.5	20.4
	4인가구	(294)	26.5	24.5	28.2	20.7
학력별	5인가구 이상	(65)	30.8	18.5	32.3	18.5
	고졸 이하	(222)	27.0	19.8	26.1	27.0
	전문대졸	(134)	27.6	23.1	23.1	26.1
	대졸	(548)	24.5	22.4	32.5	20.6
소득활동 여부	대학원재학 이상	(96)	27.1	16.7	35.4	20.8
	소득활동 있음	(805)	26.2	22.4	30.2	21.2
소득활동 유형	소득활동 없음	(195)	23.6	17.4	29.7	29.2
	근로소득	(675)	26.4	22.8	30.4	20.4
	사업소득	(106)	26.4	19.8	32.1	21.7
채무 유무	둘다	(24)	20.8	20.8	16.7	41.7
	채무 있음	(432)	25.7	21.1	33.8	19.4
제도 인지 여부	채무 없음	(568)	25.7	21.7	27.3	25.4
	알고 있다	(155)	33.5	32.9	23.9	9.7
채납경험 유무	모른다	(845)	24.3	19.3	31.2	25.2
	채납경험 있음	(87)	19.5	34.5	25.3	20.7
	채납경험 없음	(913)	26.3	20.2	30.6	23.0

- 다음으로, 신규 특례의 세 가지 대안 가운데 일반 성실납세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가장 적은 대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응답자의 31.0%가 1안이 역차별 문제가 가장 적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3안(25.4%)과 2안(19.1%)이 선택됨
  - 2안의 경우는 취업 및 재창업 기간이 1안과 3안에 비해 길어, 혜택을 많이 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선호하지 않는 선택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임
  - 1안이 3안보다 역차별 문제가 적다고 선택된 이유는 체납 허용 한도액이 1안의 경우 3,000만원으로 3안의 5,000만원보다 적게 설정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표 V-10>은 개인 특성별로 세 가지 대안 선택의 분포를 나타냄
  - 성별에 따른 분포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1안이 역차별 문제가 가장 적다고 판단함
  - 연령별, 지역별, 결혼 여부, 학력별, 소득 수준 등 대부분의 개인 특성별 분포에서 1안이 역차별 문제가 가장 적은 대안으로 선택되어, 분포의 이질성이 적음
  - 다만, 체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기타 특성별 분포와는 달리, 세 가지 대안의 선택이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함
  - 결론적으로,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1안이 역차별 문제가 가장 적은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정책 목표 달성과 일반 성실납세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최소화하는 등 두 가지 목표를 고려하여 세 가지 대안 중 가장 선호하는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가장 선호하는 대안으로는 3안이 39.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1안이 37.6%, 그리고 2안은 22.6%가 선택됨
  - 3안과 1안의 선택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2안의 경우 선호도가 많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V-11>은 개인 특성별로 세 가지 대안의 선호도 분포를 나타냄
  -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안은 42.3%, 1안은 36.3%로 3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1안이 38.9%로 3안(37.3%)의 선택보다 더 높았음

-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3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1안보다 더 높았으나, 40대 이상의 경우는 1안과 3안의 선택이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거나, 1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도 있음
- 지역별 분포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서울의 경우 1안과 3안의 선택 비율은 매우 유사한 반면, 인천/경기 지역은 3안을 선택하는 비율이 1안을 선택하는 비율보다 상당히 높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반대로 1안을 선택하는 비율이 3안보다 높음
-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경우 43.7%가 1안을 가장 선호한 반면, 전문대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3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서 분포에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채무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1안을 가장 선호한 반면, 채무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3안을 선호함
- 제도 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응답 분포에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1안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다음 2안, 3안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제도를 알지 못하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3안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1안, 2안 순으로 선호도가 집계됨
- 체납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체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선호도의 분포가 비교적 균일하게 나타난 반면, 체납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3안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다음 1안과 2안 순으로 나타남

<표 V-10> 성실납세자 역차별이 적은 제도안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1안	2안	3안	모르겠음
전체		(1,000)	31.0	19.1	25.4	24.5
성별	남성	(496)	31.5	19.0	27.4	22.2
	여성	(504)	30.6	19.2	23.4	26.8
연령별	19~29세	(173)	26.0	22.5	23.1	28.3
	30대	(167)	32.3	23.4	23.4	21.0
	40대	(195)	30.3	16.4	28.2	25.1
	50세 이상	(465)	32.7	17.4	25.8	24.1
지역별	서울	(193)	33.7	16.6	25.9	23.8
	인천/경기	(306)	30.7	16.7	29.1	23.5
	대전/세종/충청	(106)	31.1	21.7	26.4	20.8
	광주/전라	(99)	27.3	20.2	26.3	26.3
	대구/경북	(100)	33.0	21.0	19.0	27.0
	부산/울산/경남	(153)	30.7	22.9	21.6	24.8
결혼 여부	강원/제주	(43)	25.6	20.9	20.9	32.6
	미혼	(323)	28.8	18.6	22.0	30.7
가구주 여부	기혼	(677)	32.1	19.4	27.0	21.6
	가구주	(547)	29.8	21.4	26.0	22.9
가구원 수	가구원	(453)	32.5	16.3	24.7	26.5
	1인가구	(177)	27.1	16.4	25.4	31.1
	2인가구	(179)	26.3	23.5	23.5	26.8
	3인가구	(285)	32.3	19.6	27.0	21.1
	4인가구	(294)	34.4	19.4	26.2	20.1
학력별	5인가구 이상	(65)	33.8	10.8	20.0	35.4
	고졸 이하	(222)	31.5	14.9	24.8	28.8
	전문대졸	(134)	30.6	18.7	23.1	27.6
	대졸	(548)	30.7	20.4	25.5	23.4
소득활동 여부	대학원재학 이상	(96)	32.3	21.9	29.2	16.7
	소득활동 있음	(805)	30.8	20.9	24.8	23.5
소득활동 유형	소득활동 없음	(195)	31.8	11.8	27.7	28.7
	근로소득	(675)	30.4	21.3	25.9	22.4
	사업소득	(106)	33.0	18.9	20.8	27.4
채무 유무	둘다	(24)	33.3	16.7	12.5	37.5
	채무 있음	(432)	32.9	19.9	24.8	22.5
제도 인지 여부	채무 없음	(568)	29.6	18.5	25.9	26.1
	알고 있다	(155)	34.2	30.3	25.8	9.7
체납경험 유무	모른다	(845)	30.4	17.0	25.3	27.2
	체납경험 있음	(87)	27.6	27.6	20.7	24.1
	체납경험 없음	(913)	31.3	18.3	25.8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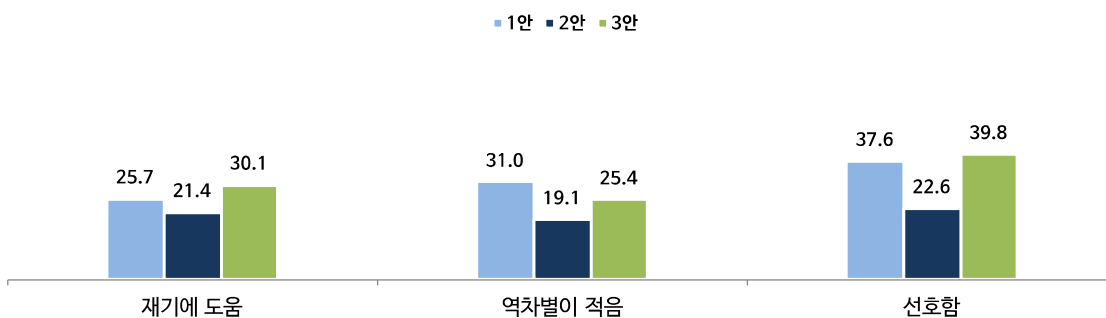
<표 V-11> 선호하는 제도안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1안	2안	3안
전체		(1,000)	37.6	22.6	39.8
성별	남성	(496)	36.3	21.4	42.3
	여성	(504)	38.9	23.8	37.3
연령별	19~29세	(173)	32.9	25.4	41.6
	30대	(167)	34.1	26.9	38.9
	40대	(195)	41.0	16.4	42.6
	50세 이상	(465)	39.1	22.6	38.3
지역별	서울	(193)	37.8	24.9	37.3
	인천/경기	(306)	33.7	21.6	44.8
	대전/세종/충청	(106)	36.8	19.8	43.4
	광주/전라	(99)	39.4	23.2	37.4
	대구/경북	(100)	38.0	23.0	39.0
	부산/울산/경남	(153)	43.1	24.2	32.7
	강원/제주	(43)	41.9	18.6	39.5
결혼 여부	미혼	(323)	36.2	23.8	39.9
	기혼	(677)	38.3	22.0	39.7
가구주 여부	가구주	(547)	36.6	22.1	41.3
	가구원	(453)	38.9	23.2	38.0
가구원 수	1인가구	(177)	36.7	19.2	44.1
	2인가구	(179)	39.7	22.9	37.4
	3인가구	(285)	36.1	25.6	38.2
	4인가구	(294)	39.8	21.4	38.8
	5인가구 이상	(65)	30.8	23.1	46.2
학력별	고졸 이하	(222)	43.7	20.7	35.6
	전문대졸	(134)	38.1	20.9	41.0
	대졸	(548)	35.4	23.7	40.9
	대학원재학 이상	(96)	35.4	22.9	41.7
소득활동 여부	소득활동 있음	(805)	37.9	22.7	39.4
	소득활동 없음	(195)	36.4	22.1	41.5
소득활동 유형	근로소득	(675)	36.4	23.0	40.6
	사업소득	(106)	44.3	21.7	34.0
	둘다	(24)	50.0	20.8	29.2
채무 유무	채무 있음	(432)	42.6	18.1	39.4
	채무 없음	(568)	33.8	26.1	40.1
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155)	45.8	31.0	23.2
	모른다	(845)	36.1	21.1	42.8
채납경험 유무	채납경험 있음	(87)	35.6	32.2	32.2
	채납경험 없음	(913)	37.8	21.7	40.5

-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한 신규 특례의 도입은 타당해 보이며, 제시된 세 가지 대안에 대해 정책 목표 달성, 역차별 발생 가능성, 세 가지 대안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설문조사를 요약함([그림 V-2])
  - 정책 취지 달성과 관련하여,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대안은 3안의 경우 30.1%, 1안의 경우 25.7%, 2안의 경우 21.4%로 조사되어, 3안의 경우가 정책 목표 달성에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음
  - 이는 3안의 경우 체납액 한도가 높았고, 향후 2022년까지 취업 및 재창업 요건을 설정하여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해석됨
  - 역차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1안의 경우 31%, 3안의 경우 25.4%, 2안의 경우 19.1%로 1안의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안의 경우 체납액 한도가 3천만원이며, 2안과 3안의 경우 한도가 5천만원으로서 한도액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보임
  - 종합하여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3안의 경우 39.8%, 1안의 경우 37.8%, 2안의 경우 22.6%로 3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결론적으로, 일반 납세자들 기준으로 3안의 경우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3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V-2] 신규 특례에 대한 의견



#### 4. 신규 특례 인식조사 상세 분석

- 지금까지 설문조사의 기초 통계량을 바탕으로 형평성 분석을 실시한 것에 더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 경제적 요인들과 세 가지 대안 선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형평성 분석을 추가 진행함

- 세 가지 대안의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찾아 해석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에 대해 논의함
- 여러 사회 경제적 요인들과 제안된 세 가지 대안의 선택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사용함
  -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의 결과 변수가 두 개 이상의 범주 변수일 경우 사용함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변수를  $y$ 로 표시하고, 1안, 2안, 3안 세 가지 선택( $m=3$ )을 고려함
  - 모형의 중요한 가정은 1안, 2안, 3안은 숫자에 따른 서수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즉, 1안<2안<3안이 의미하는 바가 1안이 3안보다 우수하다는 관계가 아니므로, 이러한 가정을 모형에 반영함
  - 다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 각각 대안의 선택에 미치는 요인들( $X$ )의 효과는 계수  $\beta^{(1)}, \beta^{(2)}, \beta^{(3)}$ 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음

$$\Pr(y = 1) = \frac{e^{X\beta^{(1)}}}{e^{X\beta^{(1)}} + e^{X\beta^{(2)}} + e^{X\beta^{(3)}}}$$

$$\Pr(y = 2) = \frac{e^{X\beta^{(2)}}}{e^{X\beta^{(1)}} + e^{X\beta^{(2)}} + e^{X\beta^{(3)}}}$$

$$\Pr(y = 3) = \frac{e^{X\beta^{(3)}}}{e^{X\beta^{(1)}} + e^{X\beta^{(2)}} + e^{X\beta^{(3)}}}$$

- 모형의 식별(identification)을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대안을 선택하여, 그 대안과 다른 대안들을 비교해야 함
- 만약 대안 2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 $\beta^{(2)} = 0$ ),  $\beta^{(1)}$ 과  $\beta^{(3)}$ 은 대안 2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안을 기준점으로 삼고 분석할 예정이며, 따라서 이 경우 각각의 대안을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Pr(y = 1) = \frac{e^{X\beta^{(1)}}}{e^{X\beta^{(1)}} + 1 + e^{X\beta^{(3)}}}$$

$$\Pr(y = 1) = \frac{1}{e^{X\beta^{(1)}} + 1 + e^{X\beta^{(3)}}}$$

$$\Pr(y = 1) = \frac{e^{X\beta^{(3)}}}{e^{X\beta^{(1)}} + 1 + e^{X\beta^{(3)}}}$$

- 2안에 비해 1안 또는 3안을 선택할 상대적인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frac{\Pr(y = 1)}{\Pr(y = 2)} = e^{X\beta^{(1)}}, \quad \frac{\Pr(y = 3)}{\Pr(y = 2)} = e^{X\beta^{(3)}}$$

- 설문조사 결과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대안으로 선택된 신규 특례안은 3안(30.1%), 1안(25.7%), 2안(21.4%)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영향을 미친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형평성 분석을 실시함

- 대안의 선택에는 연령, 지역, 학력, 가구원 수, 결혼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배경 요소가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발견함
- 잠재적인 영향 인자(factor)로 설정한 변수는, 소득, 자산, 성(sex), 거주 지역, 학력, 나이, 가구 정보임
- 이러한 잠재적인 영향 인자를 통제변수로 사용한 후 대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심 변수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함

- 설문조사 결과 제도 인지 여부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재기에 관련된 대안 선택의 분포가 달라졌는데, 회귀방정식상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발견되는지 검토함

- <표 V-12>는 각 대안들 사이에서 제도 인지 여부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나타낸 결과임

<표 V-12> 제도 인지 여부에 따른 영세사업자 재기 선택

대안 간 선택	$\beta$	$z$	$P >  Z $
1안 VS 2안	0.0648	0.253	0.800
1안 VS 3안	0.7263	2.795	0.005***
2안 VS 3안	0.6615	2.452	0.014**

주: \*\*\* 는 통계적으로 유의도 1%에서 유의미함 \*\*는 통계적으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1안과 2안의 선택 사이에 제도 인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3안에 비해 1안과 2안의 경우 제도 인지 여부가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줌
  - 1안과 3안을 비교하였을 때는 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2안과 3안의 경우 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됨
  - 제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안 또는 2안보다 3안을 더 선호했는데, 3안이 1안과 2안의 장점을 결합한 대안으로 생각하여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음
  - 설문조사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84.5%)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대표 표본으로 생각한다면, 일반 성실납세자들 사이에서도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일반 성실납세자 입장에서는 3안이 영세사업자의 재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 다음으로는 체납경험 여부와 영세사업자의 재기에 도움 여부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통해 대안 선택 결과를 검토해봄
- <표 V-13>은 각 대안들 사이에서 체납경험 유무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나타낸 결과임
  - 1안과 3안의 선택을 비교해보면, 체납경험 여부가 두 대안의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표 V-13> 체납경험 여부에 따른 영세사업자 재기 선택

대안 간 선택	$\beta$	$z$	$P >  z $
1안 VS 2안	-0.8669	-2.482	0.013**
1안 VS 3안	-0.4820	-1.329	0.184
2안 VS 3안	0.3849	2.482	0.013**

주: \*\*는 통계적으로 유의도 5%에서 유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1안과 2안을 비교하면, 체납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2안보다는 1안이 영세사업자의 재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경향이 큼

- 반면, 2안과 3안을 비교해보면, 체납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3안보다는 2안이 영세사업자의 재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경향이 큼
- 2안과 3안을 비교한 결과를 해석하면, 취업 및 재창업의 긴 것이 제도의 잠재적 수혜자들인 체납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임

- 다음으로는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영세사업자의 재기에 도움이 되는 대안의 선택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검토함
  - <표 V-14>는 각 대안들 사이에서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인식과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대안 선택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줌

<표 V-14>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와 영세사업자 재기 선택

대안 간 선택	$\beta$	$z$	$P >  Z $
1안 VS 2안	-0.1417	-0.620	0.535
1안 VS 3안	0.2245	1.111	0.267
2안 VS 3안	0.3662	1.656	0.098*

주: \*는 통계적으로 유의도 10%에서 유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1안과 2안의 선택, 1안과 3안의 선택에서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인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지는 않음
-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한다고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2안이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약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는 현재의 조세제도가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영세사업자의 재기에 도움이 되는 대안의 선택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검토함
  - <표 V-15>는 각 대안들 사이에서 현재의 조세제도가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는지에 관한 인식과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대안 선택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줌

<표 V-15> 조세제도의 공평성과 영세사업자 재기 선택

대안 간 선택	$\beta$	$z$	$P >  Z $
1안 VS 2안	-0.2001	-0.892	0.372
1안 VS 3안	-0.2727	-1.323	0.186
2안 VS 3안	-0.0726	-0.334	0.738

자료: 저자 작성

- 각각 대안의 선택 간에 조세제도의 공평성 인식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는 현재 탈세자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과 영세사업자의 재기에 도움이 되는 대안의 선택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검토함
  - <표 V-16>는 각 대안들 사이에서 현재의 탈세자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과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대안 선택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줌

<표 V-16> 탈세자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과 영세사업자 재기 선택

대안 간 선택	$\beta$	$z$	$P >  Z $
1안 VS 2안	-0.0457	-0.191	0.849
1안 VS 3안	0.4421	1.858	0.063*
2안 VS 3안	0.4878	1.995	0.046**

주: \*\*는 통계적으로 유의도 6%에서 유의미함 \*는 통계적으로 유의도 10% 수준에서 유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1안과 2안의 선택 간에는 탈세자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1안과 3안, 2안과 3안의 선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줌
- 현재 우리나라의 탈세자 처벌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1안보다는 3안을, 2안보다는 3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음
- 반대로 생각해보면, 탈세자의 처벌 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3안이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 마지막으로 현재 수중에 10만원이 생겼을 때 정부에 기부할 의향을 묻는 인식 조사와 영세사업자의 재기에 도움이 되는 대안의 선택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검토함
  - <표 V-17>은 각 대안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기여금액 (0원~10만원)과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대안 선택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줌

<표 V-17> 정부에 대한 기여금과 영세사업자 재기 선택

대안 간 선택	$\beta$	$z$	$P >  Z $
1안 VS 2안	-0.0519	-1.455	0.146
1안 VS 3안	-0.0150	-0.439	0.661
2안 VS 3안	0.0369	1.062	0.288

자료: 저자 작성

- 정부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말은 정부를 더 신뢰하거나 정부를 통한 분배 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영세사업자의 재기와 관련이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신규 특례의 목적 중 하나는 일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비슷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개인별 특성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선택 간의 관계를 살펴봄
- 먼저 제도 인지 여부가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대안 선택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검토함
  - <표 V-18>은 각 대안들의 선택이 제도 인지 여부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여줌
  - 제도 인지 여부에 따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따른 대안 선택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는 설문조사에서는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 회귀식 분석 결과, 제도 인지 여부와 역차별과 관련된 선택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이는 형평성 분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제도 인지 여부에 편향되어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여, 해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표 V-18> 제도 인지 여부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대안 선택

대안 간 선택	$\beta$	$z$	$P >  Z $
1안 VS 2안	-0.0702	-0.267	0.789
1안 VS 3안	0.1114	0.444	0.657
2안 VS 3안	0.1816	0.649	0.516

자료: 저자 작성

- 다음으로 체납경험 여부와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대안 선택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검토함
  - <표 V-19>는 각 대안들의 선택이 체납경험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 검토함

<표 V-19> 체납경험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대안 선택

대안 간 선택	$\beta$	$z$	$P >  Z $
1안 VS 2안	-0.3501	-1.008	0.313
1안 VS 3안	0.0074	0.022	0.983
2안 VS 3안	0.3575	0.968	0.333

자료: 저자 작성

- 체납경험에 따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따른 대안 선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이는 제도 인지 여부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차원에서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대안 선택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검토함
  - <표 V-20>는 각 대안들의 선택이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검토함

- 1안과 2안, 1안과 3안의 선택은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

〈표 V-20〉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대안 선택

대안 간 선택	$\beta$	$z$	$P >  Z $
1안 VS 2안	-0.3149	-1.340	0.180
1안 VS 3안	0.2063	1.021	0.307
2안 VS 3안	0.5212	2.137	0.033**

주: \*\*는 통계적으로 유의도 6%에서 유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한다고 인식할수록 2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으며, 5%의 통계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음
  - 반대로 해석해보면,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역차별 문제가 적은 대안으로 3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즉, 현재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역차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3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다음으로 현재의 조세제도가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대안 선택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검토함
- <표 V-21>은 각 대안들의 선택이 현재의 조세제도가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검토함

〈표 V-21〉 조세제도의 공평성과 납세자와의 형평성 대안 선택

대안 간 선택	$\beta$	$z$	$P >  Z $
1안 VS 2안	-0.2257	-0.991	0.322
1안 VS 3안	-0.2781	-1.355	0.175
2안 VS 3안	-0.0524	-0.221	0.825

자료: 저자 작성

- 대안 간 선택에 있어서,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조세제도 자체에 대한 공평성은 대안 간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앞서 분석했듯이 정부가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성이 보여 대조를 이룸
- 다음으로 현재 탈세자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과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대안 선택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검토함
- <표 V-22>는 각 대안들의 선택이 현재의 탈세자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검토함

<표 V-22> 탈세자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과 납세자와의 형평성 대안 선택

대안 간 선택	$\beta$	$z$	$P >  z $
1안 VS 2안	-0.4527	-1.847	0.065*
1안 VS 3안	-0.0125	-0.052	0.958
2안 VS 3안	0.4401	1.711	0.087*

주: \*는 통계적으로 유의도 10%에서 유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1안과 3안의 선택은 탈세자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1안과 3안의 선택, 2안과 3안의 선택 문제에는 탈세자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 현재 탈세자 처벌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2안보다는 1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으며, 3안보다는 2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
- 반대로 해석하면, 현재 탈세자 처벌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1안보다는 2안을, 2안보다는 3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지만, 직접적으로 1안과 3안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
- 결론적으로, 현재 탈세자 처벌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형평성에 대한 요구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3안이 역차별 문제를 최소화할 것으로 선택된 것은 형평성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현재 수중에 10만원이 생겼을 때 정부에 기부할 의향을 묻는 인식 조사와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대안 선택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검토함
  - <표 V-23>은 각 대안들의 선택이 정부에 대한 기여금액 (0원~10만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검토함
  - 대안 간 선택에는 정부에 대한 기여금액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음

<표 V-23> 정부에 대한 기여금액과 납세자와의 형평성 대안 선택

대안 간 선택	$\beta$	$z$	$P >  Z $
1안 VS 2안	-0.0155	-0.425	0.671
1안 VS 3안	0.0130	0.383	0.702
2안 VS 3안	0.0285	0.745	0.456

자료: 저자 작성

- 본 절의 분석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미시 요인 분석을 한 것으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정책 목표 달성과 일반 성실납세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고려한 대안의 선택이 개인별로 어떤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함
  -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지 여부 및 현재 조세제도의 탈세자 처벌 수준과 대안 선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
  - 형평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개인일수록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측면과 일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3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
  - 이는 설문조사에서 3안이 가장 많이 선호되어 나타난 결과에 대한 근거로 해석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설문조사와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3안이 가장 나은 대안으로 보임

## 5. 체납액 납부 실적에 따른 형평성 문제

- 형평성에 대한 마지막 분석으로 성실납부 실적에 따른 정성 분석을 시도함
  - 기존에 성실히 납세하다가 체납액이 발생한 사람과,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체납액이 발생한 사람을 구별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제도 이용 신청 이전의 납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량적인 효과 분석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검토함
-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제도 이용 신청 이전의 납부 실적만 다른 경우를 상정하여 검토함
- 극단적인 상황으로, A수혜자는 체납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신청으로 수혜를 보는 경우이며, B수혜자는 체납액을 거의 완납하고, 일부 체납액만 수혜받는 상황으로 가정함
  - 1안의 경우와 3안을 비교하면, 취업 및 재창업 기간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체납액 한도와 분납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 이 경우 A 입장에서는 분할 완납 기간이 긴 3안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으며,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으로 1안이 3안에 비해 역차별 문제가 적을 가능성이 있음
  - 2안과 3안을 비교하면, 체납액 한도와 체납액 분할 완납기간에는 차이가 없으며 취업 및 재창업 기간에서 차이가 있음
  - A 수혜자의 경우와 B 수혜자의 경우 모두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똑같은 조건으로 취업 또는 재창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 및 재창업 기간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는 적을 것으로 예상함
  - 1안과 2안을 비교하면, 체납액 한도와 분납 기간 및 취업, 재창업 기간에서 차이가 있음
  - 1안과 3안을 비교하는 논리가 1안과 2안의 비교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1안이 2안에 비해 체납액 납부 실적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함
- 결과적으로 체납자들 사이에서의 역차별 문제는 1안의 경우 그 문제를 최소화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체납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실납세자들의 비중이 체납자들의 비중에 비해 크며, 일반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분석을 고려하면, 1안과 3안 가운데 3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임

## VI.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 Ⅵ.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 1. 계층화 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종합평가

#### 가. AHP 분석의 개요

- 예비타당성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종 평가를 위해 각 부문별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균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균형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 중 하나인 AHP를 이용한 분석으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함
  - AHP는 Thomas Saaty에 의해 1970년대 초에 개발된 분석방법으로서 최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정량적 판단이 어려운 다기준 의사결정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임(김학수 외, 2018)
    - 본 연구와 같이 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시행된 다양한 효과성 분석을 동일 평가 기준에 따라 군집화하고 이를 다수의 분석 수준으로 분류하여 계층화한 후 각각의 수준 및 중요도에 따라 평가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임
    - 일반적으로 제1계층에서는 경제성, 정책성, 형평성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2계층에서는 제1계층 분석 기준의 세부적인 항목을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하위 항목 각각에 대하여 평가함
    - 최종적으로 제1계층 및 제2계층의 평가결과에 각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
- AHP 분석방법의 특징은 제시된 대안들 간의 ① 계층적 구조설정 ② 상대적 중요도 설정 ③ 논리적 일관성의 유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이를 위해 제도 관련 전문가들이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일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량적으로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합리성을 확보함
- 본 보고서에서는 앞서 제시한 정책성 및 경제성, 형평성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AHP를 수행하여 전문가 9인의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1) 정책성 분석의 특징

- 예비타당성평가에서 정책성 분석이란 신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정책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항목임
-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AHP의 제2계층 분석을 통해 정량화된 수치로 평가를 진행함

### 2) 경제성 분석의 특징

- 예비타당성평가에서 경제성 분석이란 제도의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 및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성을 살펴보는 항목임
- 제도 도입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과 추후 얻게 되는 편익을 비교함
  - 사회적 비용은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지출규모와 관련 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임
  - 편익의 경우 신규 특례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추후 납세 규모로 추정할 수 있음

### 3) 형평성 분석의 특징

- 예비타당성평가에서 형평성 분석이란 제도의 도입에 따른 일반 성실납세자 혹은 영세개인사업자들 간의 과세 형평성을 평가하는 항목임
- 형평성 분석의 경우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도 도입의 형평성을 평가함

#### 4) AHP 분석 결과의 한계

- AHP 분석에서 경제성 분석은 설문조사 평가자들이 경제성 분석 측면에서 제도 도입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한 점수를 활용함
  -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도출된 편익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책성 및 형평성 분석과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치화하여 경제성 분석에 이용함
  
-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AHP 평가를 바탕으로 정성적 분석에 집중하였으므로, B/C 비율을 이용한 AHP 분석 결과와의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 B/C 비율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과 AHP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정성적 분석의 방법론적인 우열은 판단할 수 없음(권태형, 2008)
  - 정량적 분석의 한계점을 오히려 해당 제도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AHP 분석 결과로 보완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이동규·송호신·김승래, 2017)

#### 나. AHP 분석을 활용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종합평가

##### 1) 평가 대안

- 본 분석의 목적은 신규 특례 도입과 기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신규 특례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으며, 제도 평가에 사용된 여러 가지 척도를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 집중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제도의 도입과 미도입을 비교하여 어느 안이 더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본 신규 특례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함

##### 2) 조사 대상 집단

- AHP 분석은 소수의 평가자를 대상(전문가 9인)으로 진행하므로, 의사결정 대상자 구성이 편향되었을 경우,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집단 구성이 신중해야 함

- 우선 설문 대상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본 AHP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는 총 9명으로, 3명은 본 예비 타당성평가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진이며 나머지 6명은 학계에서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선출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됨
- 최종 결과 분석은 분석 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계량화된 수치인 종합평점이 최솟값 및 최댓값이 나온 평가자 2인의 응답 내용을 제외하고 그 점수를 집계함

〈표 VI-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평가결과 요약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공통조건	① (수입금액조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 신고대상 기준 미만인 자(도소매업의 경우 15억 미만, 제조업의 경우 7.5억 미만,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5억원 미만) ② (조세법칙 관련 처벌 관련 조건) 직전 5년 이내 조세법칙 관련 처벌·처분을 받거나 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판이 없으며,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법칙사건 조사가 없는 자	
	정책 대상자	1안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재창업 또는 취업한 자
		2안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재창업 또는 취업한 자
		3안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재창업 또는 취업한 자
지원 방식	1안	체납처분중지,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대상이며, 체납액 한도는 3천만원으로 최대 3년 안에 분할 완납하여야 함	
	2안	체납처분중지,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대상이며, 체납액 한도는 5천만원으로 최대 5년 안에 분할 완납하여야 함	
	3안	체납처분중지,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대상이며, 체납액 한도는 5천만원으로 최대 5년 안에 분할 완납하여야 함	
세제지원방식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할 납부 허용 징수특례 보완	
운영기간		2020년 ~	

<표 VI-1>의 계속

구 분		내 용
정책성 분석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신규 특례는 현행 제도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가 잠재적으로 유발하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제시된 제안이며, 기획재정부의 전략목표 및 부처 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해당 제도는 체납액 가산금 면제를 통한 폐업 체납자 재창업 활성화와 저소득층 소득증대, 분배구조 개선, 경제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영세사업자들의 체납액 납부 실적 여부에 따른 형평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가산금 면제제도는 기존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인 것으로 평가됨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이론모형 분석 결과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주면, 폐업체납자들의 재창업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영세사업자의 자활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제도 설계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경제성 분석	<p>비용-편익분석법을 적용한 경제성 분석결과 현재 고려중인 3가지 안 모두 B/C가 1을 초과하여 동 제도의 경제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결과 비용-편익 비율 1안 4.66, 2안과 3안 3.69로 1안의 경제 효과성이 가장 우수</li> <li>- 사회적 할인율 5.5% 적용 결과 비용-편익 비율 1안 4.56, 2안과 3안 3.61로 1안의 경제 효과성이 가장 우수</li> </ul> <p>기본적으로 세 가지 모든 대안이 경제 효과성 측면에서는 모두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p>	
형평성 분석	<p>일반 성실납세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대안은 3안(39.8%), 역차별 문제가 가장 적은 대안은 1안(31%),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정책 목표 달성 측면에서는 3안(30.1%)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p> <p>체납자들 간 형평성 측면에서는 1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반 성실납세자들까지 고려할 경우 3안이 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p>	

###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 본 분석은 <표 VI-1>의 경제성, 정책성, 형평성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경제성 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확인한 각 평가자가 이를 바탕으로 평가한 점수를 직접 활용함

- 정책성 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 각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평가기준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 형평성 분석은 신규 특례 도입의 수혜자와 일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함
- <표 VI-2>에서 제1계층 평가기준 각각의 가중치 산정범위를 제시함

<표 VI-2> 가중치 산정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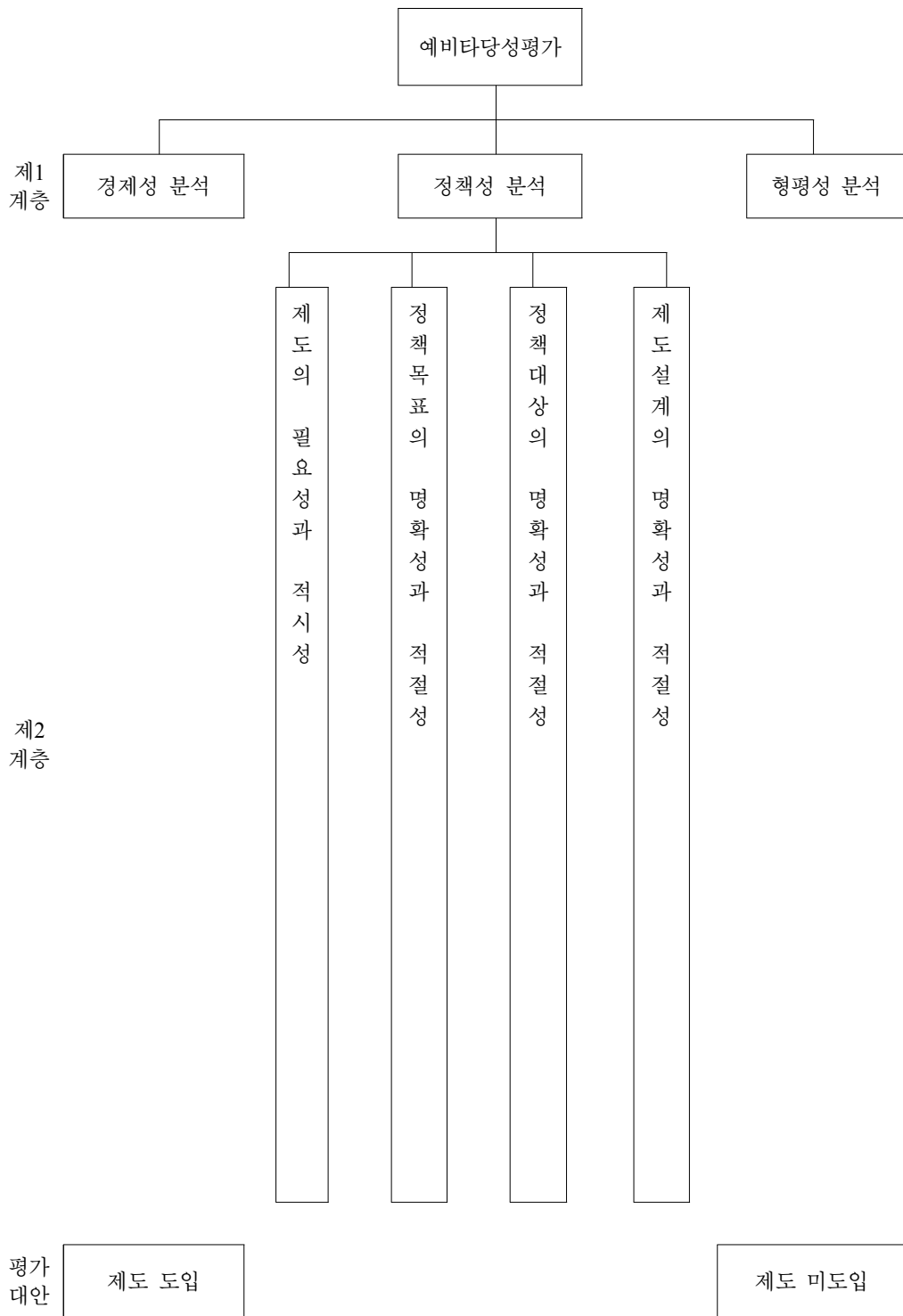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형평성 분석
30 ~ 50	30 ~ 40	20 ~ 30

자료: 저자 작성

-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2개의 계층분석으로 AHP 분석을 실시함
  - 제1계층 분석은 경제성, 정책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가가 본 제도 도입의 타당성 정도를 점수로 계산함
  - 제2계층 분석은 정책성 분석의 하위 평가기준 4가지인 ①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②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③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④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의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바라본 제도 도입의 타당성 정도를 점수로 계산함
  - 이렇게 제시된 제1계층 및 제2계층의 점수에 각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곱하여 AHP 분석의 종합점수를 산출함
  - 평가자들은 최종적으로 해당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함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점수와 AHP 분석의 종합점수를 비교함으로써 AHP 분석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함

[그림 VI-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AHP 계층 구조



자료: 저자 작성

**<표 VI-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기준
경제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측면에서의 제도 도입 타당성</li> <li>· 비용-효과 분석 결과의 타당성</li> <li>· 비용-효과 분석 활용 근거의 타당성</li> </ul>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b>정책성 분석</b>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계획과의 연계성</li> <li>· 제도의 필요성</li> <li>· 제도의 적시성</li> <li>·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li> </ul>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의 명확성</li> <li>· 정책목표의 적절성</li> </ul>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대상의 명확성</li> <li>· 정책대상의 적절성</li> <li>· 정책대상의 감면혜택 비수혜 가능성</li> <li>· 비정책대상의 감면혜택 수혜 가능성</li> </ul>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요소의 명확성</li> <li>· 성과지표의 적절성</li> <li>· 유인제공의 적절성</li> <li>· 평가왜곡 가능성</li> </ul>	
형평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평성 측면에서의 제도 도입 타당성</li> </ul>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자료: 저자 작성

#### 4) AHP 분석 결과

AHP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평가자들은 설문문항의 쌍대비교를 통해 각 계층별로 평가항목이 갖는 가중치를 산정함

- 평가항목의 가중치란 평가자들이 생각하는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의미함
  - 평가자들은 제1계층 평가항목인 경제성, 정책성, 형평성 분석의 가중치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주어진 가중치 범위 내에서 선택함
    - 이때 평가자들이 선택한 각 항목 가중치의 합은 100점이 되어야 하며, 각 항목의 가중치 선택 범위는 <표 VI-2>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름
  - 제2계층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Saaty(1990)의 AHP분석 기본모형인 9점 척도 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함
  - 평가자들의 일관적인 응답을 검증하기 위해 Saaty(2008)의 Random Index를 활용하였으며, 계산된 점수의 응답 비일관도가 0.15 이상일 경우 설문을 재설시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치함
    - Saaty(2008)에 의하면 응답 비일관도가 0.1 미만일 경우, 설문 결과에 합리적인 일관성이 있으며, 0.2 미만일 경우, 용인 가능한 수준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들 응답의 일관성 척도 기준을 0.15로 설정함
- 제도 도입의 타당성 정도는 Saaty의 9점 척도 모형을 활용하여 수치화한 AHP 표준점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제도 도입 적합도 점수와 연계하여 활용함
- AHP 표준점수의 가장 높은 점수인 9는 제도 도입이 매우 적절한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9는 제도 도입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0부터 1까지 분포되어 있는 조세특례 도입 적합도 범위와 연계시킬 수 있음(<표 VI-4> 참고)
  - 조세특례 도입 적합도 점수 1은 해당 제도 도입이 매우 적절하다는 의미이고, 0은 해당 제도 도입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미임
  - 또한 조세특례 도입 적합도가 0.5인 경우는 제도의 도입안과 미도입안이 무차별하다는 의미로, 제도 간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의미임
  - AHP 표준점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도 도입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며 1 미만인 경우는 미도입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임

〈표 VI-4〉 AHP 표준점수에 따른 제도 도입 적합도

AHP 표준점수	제도 도입 적합도
9	1
8	0.9375
7	0.875
6	0.8125
5	0.75
4	0.6875
3	0.625
2	0.5625
1	0.5
-2	0.4375
-3	0.375
-4	0.3125
-5	0.25
-6	0.1875
-7	0.125
-8	0.0625
-9	0

자료: 이상엽·한종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신설』, 2015.9.

- 제1계층 분석과 관련하여 가중치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 분석의 중요도가 정책성, 형평성 분석에 비해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표 VI-5> 참고)
  - 평가자들은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형평성 분석 순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종합 평가 결과 약 39:35:25의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종합 결과로 도출된 각 항목의 가중치는 개별 평가자들이 응답한 설문 결과를 기하평균하여 도출하였으므로 세 가중치의 합이 100이 아닐 수 있음
  - 정책성 분석의 제2계층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각 항목 간 쌍대비교 설문 응답을 이용한 행렬의 정규화 과정을 통하여 도출함
    - 제2계층 종합평가 결과도 제1계층과 마찬가지로 각 평가자들의 설문 응답 내용을 기하평균하여 도출하였으므로 제2계층 가중치의 총합이 ‘정책성 분석’ 항목의 종합 가중치와 다를 수 있음

- 세부적으로는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이 7.3%로 중요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이 6.3%를 차지함
- 다음 순위로는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의 중요도가 약 5.9%로 평가되었으며 ‘제도 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의 중요도가 4.5%로 가장 낮음

<표 VI-5>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평가항목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평가자 6	평가자 7	종합
경제성 분석	0.30	0.30	0.45	0.50	0.35	0.45	0.40	0.39
정책성 분석	0.40	0.40	0.35	0.30	0.35	0.35	0.30	0.35
-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0.08	0.05	0.21	0.02	0.22	0.04	0.02	0.06
-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0.29	0.05	0.09	0.14	0.08	0.04	0.02	0.07
-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0.02	0.25	0.03	0.09	0.04	0.13	0.07	0.06
-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0.02	0.05	0.02	0.05	0.02	0.13	0.20	0.04
형평성 분석	0.30	0.30	0.20	0.20	0.30	0.20	0.30	0.25

주: 1. 종합은 각 평가자 가중치의 기하평균값

2. 분석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자체자료)

- 각 항목의 제도 도입에 대한 평점과 가중치를 이용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합평점(weighted sum) 0.76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대안이 더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표 VI-6> 참고)
  - 일반적으로 AHP 설문 결과 해석은 종합평점 0.5 기준 미만인 경우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쪽의 의견으로 초과인 경우 제도를 도입하는 쪽의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개별 평가자들의 종합 분석 결과값을 살펴보면 최저 0.66부터 최고 0.83까지 다양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표준편차는 0.06으로 산출됨
    - 최저 수치인 0.66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제도를 도입하는 쪽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 설문은 다양한 집단에서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각 전문가의 배경이나 소속 집단에서의 이해관계, 평가자들의 주관적인 의견 등이 설문 응답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자 전원의 의견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모아졌으므로 제도 도입 대안이 더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표 VI-6> AHP 평가 결과

평가자	제도 도입	제도 미도입
총 합	0.76	0.23
평가자1	0.75	0.25
평가자2	0.74	0.26
평가자3	0.80	0.20
평가자4	0.83	0.17
평가자5	0.74	0.26
평가자6	0.66	0.34
평가자7	0.82	0.18

주: 1. 총합은 각 평가자 가중치의 기하평균값  
 2. 분석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자체자료)

- 끝으로 설문 마지막에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물어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확인함(<표 VI-7> 참고)
  - 제도 도입에 대한 직접 설문 응답에서의 종합 결과는 0.70으로 AHP 평가에 의한 종합평점인 0.76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으나 이 결과 또한 앞서 언급한 0.5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값이므로 직접 설문 응답과 AHP 평가 결과 모두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일부 정도의 차이는 보이나 두 가지 분석 모두 모든 평가자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안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표 VI-7> 설문 응답에서의 제도 도입 점수

평가자	제도 도입	제도 미도입
총 합	0.70	0.30
평가자1	0.65	0.35
평가자2	0.70	0.30
평가자3	0.80	0.20
평가자4	0.75	0.25
평가자5	0.55	0.45
평가자6	0.70	0.30
평가자7	0.70	0.30

주: 1. 종합은 각 평가자 가중치의 기하평균값  
 2. 분석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자체자료)

## 2. 결론 및 정책제언

### □ 신규 특례의 개요

- 체납액에 기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국세를 장기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 자영업자 소득 여건의 악화로 인한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서민·자영업자가 재기하여 소득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신규 특례 도입의 목적이 있음
- 건의된 제안은 세 가지 대안으로서, 기본적으로 폐업 후 취업 또는 재창업 조건을 일정 기간 안에 만족하였을 경우, 체납 한도액 안에서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해 주는 것임
  - 다만 일정 기간에 대한 조건, 체납 한도액, 체납 국세 분할 납부 기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

### □ 부문별 분석결과

- (정책성 분석) 취업 및 재창업등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저소득자업자들의 경제활동 참가, 소득증대,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함

- (정책적 일관성) 신규 특례는 현행 제도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가 잠재적으로 유발하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제시된 제안이며, 기획재정부의 전략목표 및 부처 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영세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재창업, 체납액 요건 등을 갖춘 경우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책대상이 명확하며, 영세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정책대상의 선정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경제성 분석) 현행 제도의 수혜자를 통해 수혜자 규모를 추정한 후 이들이 면제받는 가산금과 체납세액 분할납부로 인한 납부지연 비용, 수혜자가 취업 또는 재창업을 하여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계산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함
  -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1안의 경우 비용 편익 비율이 4.66으로 2안과 3안의 3.69보다 높게 나타남
  -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1안의 경우 비용 편익 비율이 4.56, 2안과 3안의 경우 3.61로 역시 1안의 경제 효과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모든 대안이 경제 효과성 측면에서는 모두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형평성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체납 실적에 따른 체납자 간의 형평성 문제는 정성 분석으로 검토함
  - 일반 성실납세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대안으로 3안을 선택한 응답 비율은 39.8%, 1안을 선택한 비율은 37.8%, 2안을 선택한 비율은 22.6%로 나타남
  - 역차별 문제가 가장 적은 대안은 1안의 경우 31%, 3안은 25.4%, 2안은 19.1%로 나타났으며,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정책 목표 달성 측면에서는 3안이 30.1%, 1안이 25.7%, 2안이 21.4%로 나타남
  - 체납자들 간의 형평성과 관련하여서는 1안의 경우 가장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반 성실납세자들까지 고려할 경우 3안의 경우가 더 타당해 보임

□ 위의 분석결과와 함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AHP 설문 분석을 시행한 결과도 동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대안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AHP 설문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평점은 0.76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 종합평점뿐만 아니라 모든 평가자들의 개별 결과 분석에서도 제도 도입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됨

□ 신규 조세특례제도 관련 정책제언

- 신규 제도는 서민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되나,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서는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서 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음
  - 체납액을 소멸하는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가산금만 면제해 주기 때문에, 제도의 수혜자들의 혜택은 줄어들게 됨
- 하지만 일반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현행 제도보다 신규 특례의 경우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1안이 2안과 3안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보이나, 2안과 3안도 비용 효과성이 1보다 크며, 1안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편은 아님
- 신규 특례가 도입된 배경에는 일반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효과성의 크기만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형평성 분석 결과 3안이 1안과 2안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결론적으로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신규 특례의 도입 배경 중 중요한 이슈인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3안의 경우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8.
- 권태형, 「공공사업 타당성평가에서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한계」, 『한국공공관리학보』 22(3), 2008, pp. 31~51.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 김태호, 「지방세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중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학 연구』, 32권 4호, 2015, pp. 199~218.
- 김학수, 김진영, 지해명, 최동욱,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9.
- 소상공인진흥공단, 「자영업자 폐업 실태조사」, 2014.
- 이동규·송호신·김승래, 『201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1)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 비용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Amemiya, Takeshi, *Advanced Econometrics*, Basil Blackwell, 1985.
- Gronau, R., “Wage Comparisons-A Selectivity Bia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1974, pp. 1119~1143.
- Saaty, T. L.,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 AHP series, RWS Publication, 1990.
- \_\_\_\_\_, “The Analytic Hierarchy and Analytic Network Measurement Process: Applications to Decisions under Risk,” *European Journal of Pure and Applied Mathematics*, Vol.1, No.1, 2008, pp. 122~196
- Sung, M. J., “Estimation of Passenger Car Demand under the Censored Tobit Model with Latent Floating Thresholds,” *The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Vol. 19, No. 3, 2014, pp. 283~307.

# 부 록





## <부 록 1>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특례 예비타당성평가 AHP 분석을 위한 설문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조세특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우 설문을 다시 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 \_\_\_\_\_ (서 명)  
소 속 : \_\_\_\_\_  
직 위 : \_\_\_\_\_  
연락처 : ☎ \_\_\_\_\_ E-mail: \_\_\_\_\_

#### AHP(계층화 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제도 도입', '제도 미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 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p. 2~7에서 제시하는 평가 요령,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평가결과 요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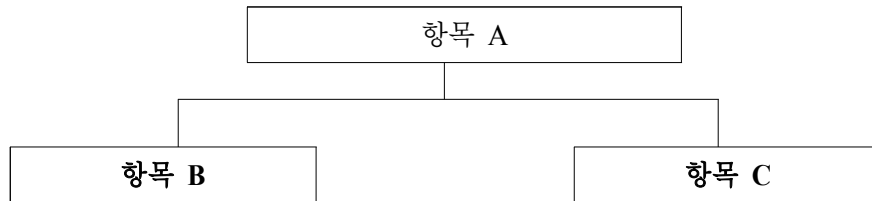
# 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 1. 응답 예

예) 항목 A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항목 B가 항목 C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평가 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평가 항목
항목 B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항목 C	

[그림 1] 평가 예



## 2. 응답 일관도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부산물로 비일관도 지수가 생성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0.15이상**이 될 경우 **응답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설문**하게 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높게 나오는 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원인 1] 서수적 일관성 결여 (A > B > C의 순위가 바뀌게 응답)

예) A가 B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B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A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응답할 경우  
 ※ A > B, B > C → A > C라고 응답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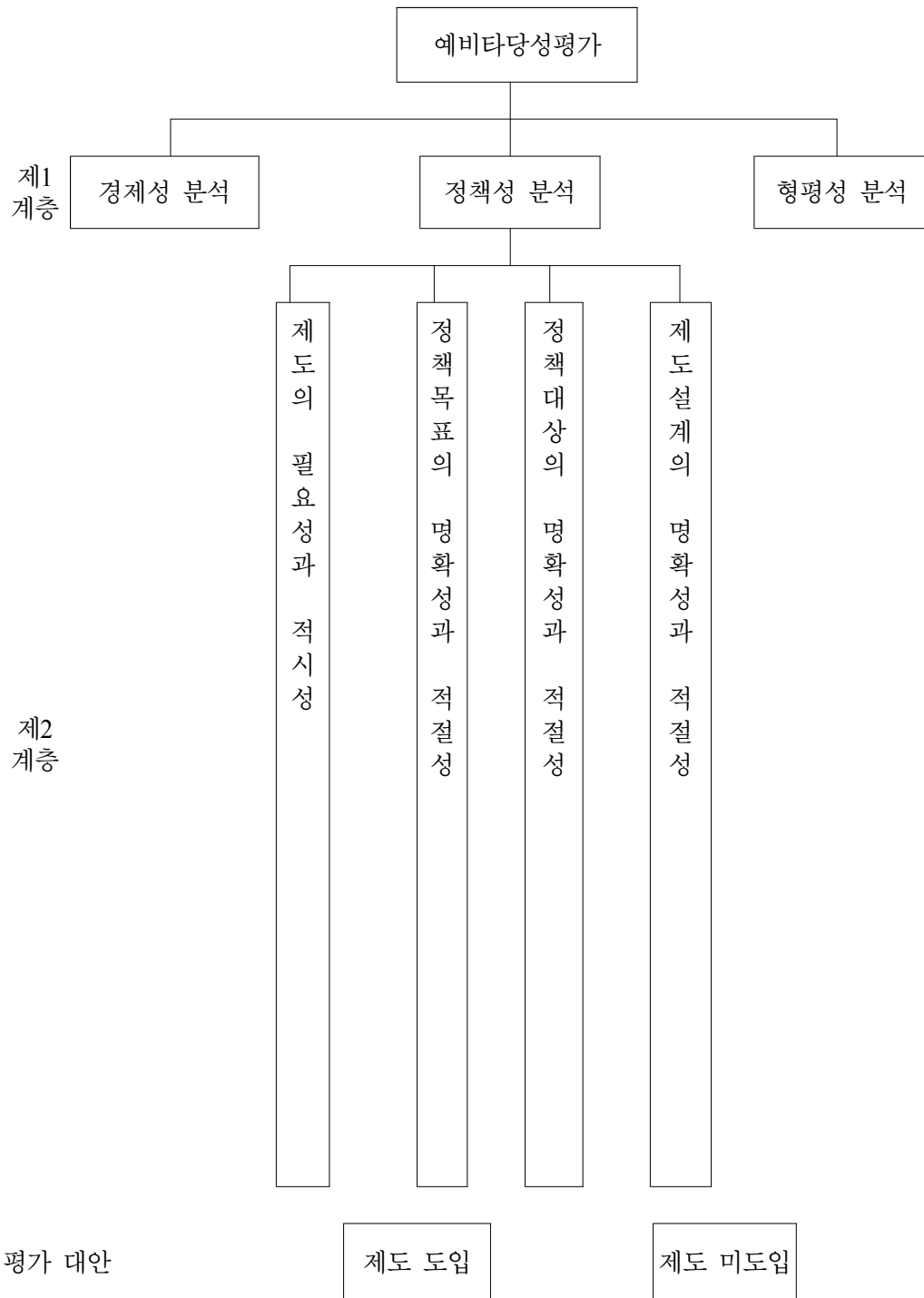
[원인 2] 기수적 일관성 결여

예) A가 B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A가 C보다 4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B가 C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가 C보다 9배 중요하다고  
 응답할 경우

※ 상대적 중요도 평가 설문은의 경우 특히 응답일관도에 유념하여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2.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그림 2]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AHP 계층 구조



〈표 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기준
경제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측면에서의 제도 도입 타당성</li> <li>· 비용-효과 분석 결과의 타당성</li> <li>· 비용-효과 분석 활용 근거의 타당성</li> </ul>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b>정책성 분석</b>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계획과의 연계성</li> <li>· 제도의 필요성</li> <li>· 제도의 적시성</li> <li>·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li> </ul>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의 명확성</li> <li>· 정책목표의 적절성</li> </ul>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대상의 명확성</li> <li>· 정책대상의 적절성</li> <li>· 정책대상의 감면혜택 비수혜 가능성</li> <li>· 비정책대상의 감면혜택 수혜 가능성</li> </ul>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요소의 명확성</li> <li>· 성과지표의 적절성</li> <li>· 유인제공의 적절성</li> <li>· 평가왜곡 가능성</li> </ul>	
형평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평성 측면에서의 제도 도입 타당성</li> </ul>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평가자의 개인의견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 3.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 다음 설문 I은 p.3.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그리고 형평성 분석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도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I. 본 제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형평성 분석 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 아래 <표 2>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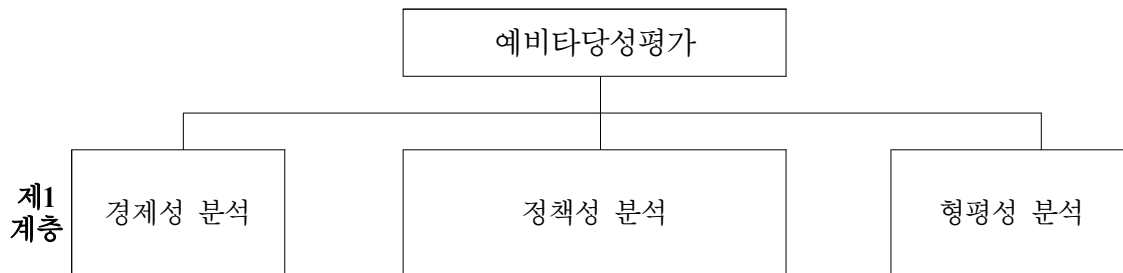
경제성 분석 : 정책성 분석 : 형평성 분석 = \_\_\_\_\_ : \_\_\_\_\_ : \_\_\_\_\_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형평성 분석
30~50	30~40	20~30

[그림 3] 제1계층 중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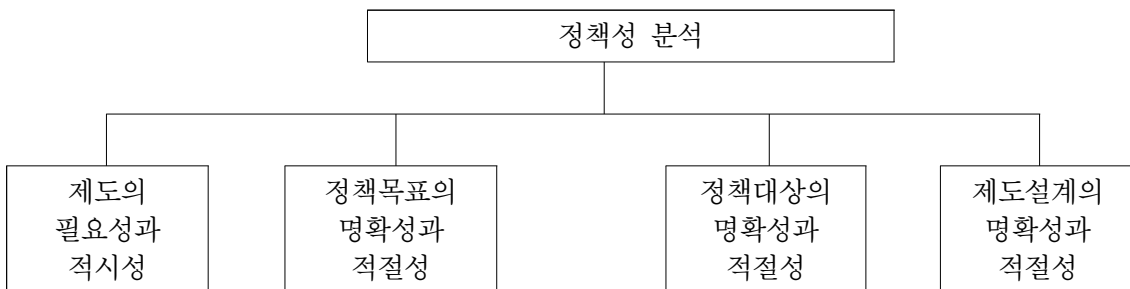


□ **설문 II**는 제2계층의 평가항목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2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II.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성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그림 4] 제2계층 중요도 평가



####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 III는 본 제도의 도입과 미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도를 도입하는 대안(제도 도입)과 도입하지 않는 대안(제도 미도입)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표 하십시오.

III.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대안이 제도 미도입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 항목	대안	평가 기준																대안	
		절대적절	매우적절	적절	약간적절	같다	약간적절	적절	매우적절	절대적절									
경제성 분석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형평성 분석	제도 도입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 미도입

IV. 본 제도는 각 분석의 관점에서 제도 도입 대안이 제도 미도입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제도 도입 : 제도 미도입 = \_\_\_\_\_ : \_\_\_\_\_

◆ 수 고 하 셧 습 니 다 ◆

## <부 록 2>



### 납세 의지 관련 및 영세사업자 체납액 가산금 소멸 관련 의식 조사 보고서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2019. 06.



## 제1장 조사개요

### I. 조사 목적

- ▶ 본 조사는 정부의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가산금 소멸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II.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및 규모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 방법	• 자사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실시기간	• 6월 13일 ~ 6월 19일 (7일간 진행)
표본추출방법	• 2019년 6월 인구행정자료 기준 성/연령/지역별 비례배분
조사기관	• (주)리서치앤리서치

### III. 주요 조사 내용

중분류	조사 내용
소득 및 부채 상황	지난 한달 간 소득 활동 여부
	소득 활동 유형
	연간 소득 금액
	부동산 시가와 금융 자산 총액
	채무 유무
	채무 금액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 경력 유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규모
정부 신뢰도 및 세금에 대한 인식 수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한 체납액 규모
	정부 관료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여부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
	조세제도가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는지 여부
	탈세자 처벌수준에 대한 의견
	본인의 경제적 능력 대비 세금 납부 정도
	납부한 세금 대비 혜택 수준
	비슷한 경제적 능력의 납세자들 대비 세금 부담 정도
10만원 취득시 정부 기부 의향 금액	

중분류	조사 내용
영세개인사업자의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에 대한 의견	영세개인사업자의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인지 여부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도움 여부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성실납세자 역차별 여부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필요성
	납부의무 소멸제도 변경안의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도움 여부
	납부의무 소멸제도 변경안의 성실납세자 역차별 여부
	영세개인사업자 재기에 도움이 되는 제도안
	성실납세자 역차별이 적은 제도안 선호하는 제도안

#### IV.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 전 체 ■		사례 수	비율
■ 전 체 ■		1,000	100.0
성별	남성	496	49.6
	여성	504	50.4
연령별	19~29세	173	17.3
	30대	167	16.7
	40대	195	19.5
	50세 이상	465	46.5
지역별	서울	193	19.3
	인천/경기	306	30.6
	대전/세종/충청	106	10.6
	광주/전라	99	9.9
	대구/경북	100	10
	부산/울산/경남	153	15.3
결혼 여부	강원/제주	43	4.3
	미혼	323	32.3
가구주 여부	기혼	677	67.7
	가구주(세대주)	547	54.7
가구원 수	가구원(세대원)	453	45.3
	1인가구	177	17.7
	2인가구	179	17.9
	3인가구	285	28.5
	4인가구	294	29.4
	5인가구 이상	65	6.5
학력별	고졸이하	222	22.2
	전문대졸	134	13.4
	대졸	548	54.8
	대학원 재학 이상	96	9.6

##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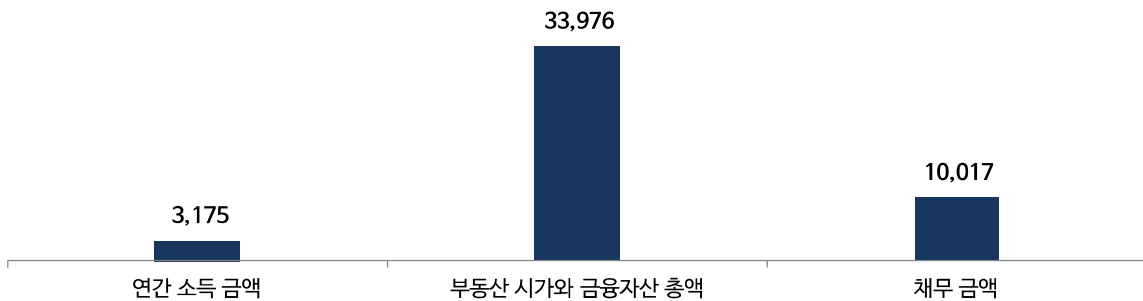
### ◎ 소득 및 부채 상황

연간 소득 금액 약 3,175만원  
부동산 시가와 금융자산 총액 약 3억 3,975만원  
채무 금액 약 1억 17만원

- 응답자의 소득 및 부채 상황의 평균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 금액은 3,175만원으로 나타났고, 부동산 시가와 금융자산의 총액은 3억 3,975만원, 개인별 채무의 평균은 1억 17만원 가량으로 나타남

[그림 5] 소득 및 부채 상황 평균

(Base: 전체, n=1,000, 단위: 만원)



### ◎ 정부 신뢰도 및 세금에 대한 인식 수준

비슷한 경제적 능력의 납세자들 대비 세금 부담 정도 평균<sup>12)</sup> 6.51점  
본인의 경제적 능력 대비 세금 납부 정도 평균 6.37점

12) 전혀 그렇지 않다(강한 부정) 1점, 그렇지 않다(약한 부정)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약한 긍정) 4점, 매우 그렇다(매우 긍정) 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으로 계산하였으며, 부정 Bottom2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합산, 긍정 Top2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합산임.

- 정부의 신뢰도 및 세금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비슷한 경제적 능력의 납세자들 대비 세금 부담 정도가 6.51점, 본인의 경제적 능력 대비 세금 납부 정도가 6.37점으로 중위값 6점 보다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세금 납부 정도에 부담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탈세자 처벌수준에 대한 부정 의견이 높아, 처벌 수준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 정부 신뢰도 및 세금 인식 수준

(Base: 전체, n=1,000, 단위: %, 점)

구분	부정 BOTTOM2	긍정 TOP2	5점 평균	10점 평균
정부 관료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여부	40.0	22.7	2.72	4.30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	54.2	15.9	2.44	3.61
조세제도가 조세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는지 여부	58.7	13.2	2.40	3.51
탈세자 처벌수준에 대한 의견	77.2	7.0	1.86	2.16
본인의 경제적 능력 대비 세금 납부 정도	3.9	51.0	3.55	6.37
납부한 세금 대비 혜택 수준	63.1	5.9	2.22	3.05
비슷한 경제적 능력의 납세자들 대비 세금 부담 정도	4.9	55.1	3.60	6.51

## 제3장 세부 조사 결과

### 1. 소득 및 부채 상황

#### (1) 지난 한달 간 소득 활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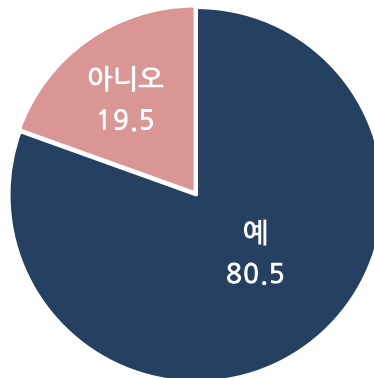
Q. 귀하는 지난 한달 간 소득활동을 하셨습니까?

예 80.5% > 아니오 19.5%

□ 지난 한달 간 소득 활동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0.5%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지난 한달 간 소득 활동 여부

(Base: 전체, n=1,000, 단위: %)



<응답자 특성>

□ 지난 한달간 소득 활동 여부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 30~40대, 지역별로는 서울, 가구주, 채무가 있는 경우, 제도 인지층, 체납경험 있는 경우 소득활동을 하고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4> 지난 한달 간 소득 활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000)	80.5	19.5
성별	남성	(496)	87.1	12.9
	여성	(504)	74.0	26.0
연령별	19~29세	(173)	81.5	18.5
	30대	(167)	90.4	9.6
	40대	(195)	86.2	13.8
	50세 이상	(465)	74.2	25.8
지역별	서울	(193)	89.6	10.4
	인천/경기	(306)	78.1	21.9
	대전/세종/충청	(106)	79.2	20.8
	광주/전라	(99)	72.7	27.3
	대구/경북	(100)	83.0	17.0
	부산/울산/경남	(153)	78.4	21.6
	강원/제주	(43)	79.1	20.9
결혼 여부	미혼	(323)	83.3	16.7
	기혼	(677)	79.2	20.8
가구주 여부	가구주	(547)	89.0	11.0
	가구원	(453)	70.2	29.8
가구원 수	1인가구	(177)	82.5	17.5
	2인가구	(179)	77.1	22.9
	3인가구	(285)	79.3	20.7
	4인가구	(294)	83.0	17.0
	5인가구 이상	(65)	78.5	21.5
학력별	고졸 이하	(222)	64.0	36.0
	전문대졸	(134)	85.1	14.9
	대졸	(548)	85.0	15.0
	대학원재학 이상	(96)	86.5	13.5
채무 유무	채무 있음	(432)	85.2	14.8
	채무 없음	(568)	76.9	23.1
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155)	90.3	9.7
	모른다	(845)	78.7	21.3
채납 경력 유무	채납경험 있음	(87)	90.8	9.2
	채납경험 없음	(913)	79.5	20.5

## (2) 소득활동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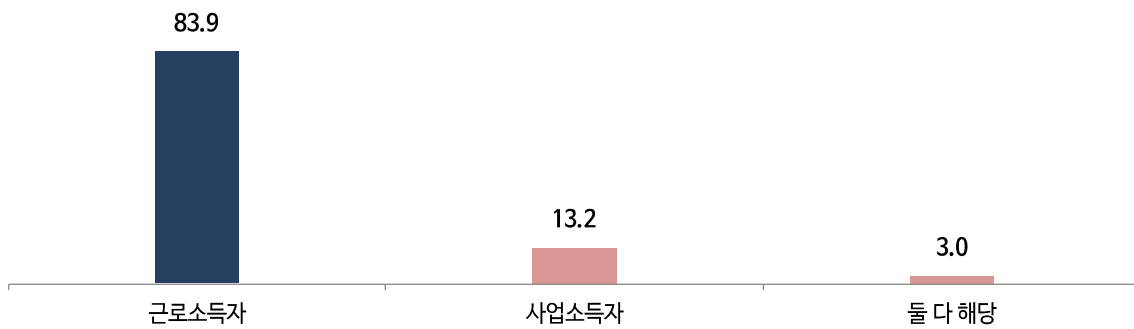
Q. 그렇다면 귀하는 근로소득자(취업자)입니까? 사업소득자(사업소득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자영업자 등 포함)입니까?

근로소득자 83.9%

□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에게 소득활동 유형을 물어본 결과, 근로소득자가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7] 소득활동 유형

(Base: 소득활동 하고 있는 응답자, n=805, 단위: %)



### <응답자 특성>

□ 지난 한달간 소득활동 유형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체납 경력 유무별로는 근로 소득자는 체납 경력 없음이 84.3%로 높게 나타났고, 사업 소득자의 경우 체납 경력 있음이 20.3%로 높게 나타남

<표 5> 소득활동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둘 다 해당
전체		(805)	83.9	13.2	3.0
성별	남성	(432)	82.2	14.8	3.0
	여성	(373)	85.8	11.3	2.9
연령별	19~29세	(141)	95.0	3.5	1.4
	30대	(151)	89.4	7.3	3.3
	40대	(168)	85.7	11.9	2.4
	50세 이상	(345)	75.9	20.3	3.8
지역별	서울	(173)	86.7	11.0	2.3
	인천/경기	(239)	84.1	13.0	2.9
	대전/세종/충청	(84)	85.7	11.9	2.4
	광주/전라	(72)	86.1	9.7	4.2
	대구/경북	(83)	84.3	13.3	2.4
	부산/울산/경남	(120)	76.7	19.2	4.2
	강원/제주	(34)	82.4	14.7	2.9
결혼 여부	미혼	(269)	88.1	9.3	2.6
	기혼	(536)	81.7	15.1	3.2
가구주 여부	가구주	(487)	81.3	15.8	2.9
	가구원	(318)	87.7	9.1	3.1
가구원 수	1인가구	(146)	80.8	15.1	4.1
	2인가구	(138)	82.6	14.5	2.9
	3인가구	(226)	82.3	14.6	3.1
	4인가구	(244)	89.8	8.2	2.0
	5인가구 이상	(51)	74.5	21.6	3.9
학력별	고졸 이하	(142)	77.5	19.0	3.5
	전문대졸	(114)	90.4	5.3	4.4
	대졸	(466)	83.9	13.7	2.4
	대학원재학 이상	(83)	85.5	10.8	3.6
채무 유무	채무 있음	(368)	82.6	14.1	3.3
	채무 없음	(437)	84.9	12.4	2.7
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140)	81.4	16.4	2.1
	모른다	(665)	84.4	12.5	3.2
채납경험 유무	채납경험 있음	(79)	79.7	<b>20.3</b>	0.0
	채납경험 없음	(726)	<b>84.3</b>	12.4	3.3

### (3) 연간 소득 금액

Q. 귀하의 연간 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소득 기준은 가구 전체가 아닌 본인의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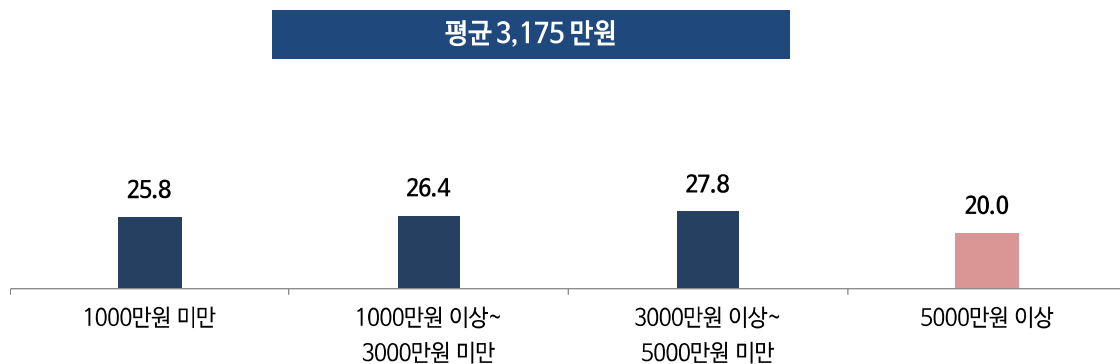
**평균 3,175만원**

□ 연간 소득 금액은 1,000만원 미만 25.8%,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6.4%,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7.8%로 나타났으며, 한편 5,000만원 이상은 20.0%임

□ 연간 소득 금액은 평균 3,175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8] 연간 소득 금액

(Base: 전체, n=1,000, 단위: %)



#### <응답자 특성>

□ 연간 소득 금액의 응답자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남성이 3,847만원으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에서 4,353만원, 지역별로는 서울이 4,190만원,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3,539만원, 가구주 여부별로는 가구주가 3,856만원, 가구원 수별로는 3인 가구 3,380만원, 학력별로는 대학원재학이상 4,348만원, 소득활동 여부별로는 소득활동 있음이 3,614만원, 소득활동 유형별로는 사업소득이 4,651만원, 채무 유무별로는 채무 있음이 3,994만원, 제도 인지 여부별로는 알고 있다 3,730만원, 체납 경력 유무별로는 체납 경력 있음 4,661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 연간 소득 금액

(단위: 만원, 명, %)

구분		사례 수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평균
전체		(1,000)	25.8	26.4	27.8	20.0	3,175
성별	남성	(496)	19.0	19.8	31.7	29.6	3,847
	여성	(504)	32.5	32.9	24.0	10.5	2,514
연령별	19~29세	(173)	33.5	35.8	24.3	6.4	2,101
	30대	(167)	16.8	21.6	42.5	19.2	3,252
	40대	(195)	21.5	18.5	26.7	33.3	4,353
	50세 이상	(465)	28.0	28.0	24.3	19.8	3,054
지역별	서울	(193)	19.2	24.4	30.1	26.4	4,190
	인천/경기	(306)	29.4	25.2	24.2	21.2	2,843
	대전/세종/충청	(106)	22.6	29.2	30.2	17.9	2,951
	광주/전라	(99)	26.3	23.2	33.3	17.2	3,798
	대구/경북	(100)	20.0	30.0	30.0	20.0	3,102
	부산/울산/경남	(153)	32.0	29.4	24.2	14.4	2,449
결혼 여부	미혼	(323)	28.2	33.1	28.2	10.5	2,412
	기혼	(677)	24.7	23.2	27.6	24.5	3,539
가구주 여부	가구주	(547)	14.8	24.1	32.0	29.1	3,856
	가구원	(453)	39.1	29.1	22.7	9.1	2,353
가구원 수	1인가구	(177)	19.2	36.2	31.1	13.6	2,809
	2인가구	(179)	28.5	34.6	20.1	16.8	3,097
	3인가구	(285)	27.0	22.8	30.2	20.0	3,380
	4인가구	(294)	26.9	19.4	29.3	24.5	3,224
	5인가구 이상	(65)	26.2	24.6	23.1	26.2	3,273
학력별	고졸 이하	(222)	37.4	32.9	19.8	9.9	2,263
	전문대졸	(134)	24.6	29.1	28.4	17.9	2,798
	대졸	(548)	23.4	25.0	29.9	21.7	3,432
	대학원재학 이상	(96)	14.6	15.6	33.3	36.5	4,348
소득활동 여부	소득활동 있음	(805)	14.2	29.3	32.5	24.0	3,614
	소득활동 없음	(195)	73.8	14.4	8.2	3.6	1,364
소득활동 유형	근로소득	(675)	14.4	28.6	34.1	23.0	3,436
	사업소득	(106)	14.2	33.0	25.5	27.4	4,651
	둘다	(24)	8.3	33.3	20.8	37.5	4,042
채무 유무	채무 있음	(432)	18.8	24.1	30.8	26.4	3,994
	채무 없음	(568)	31.2	28.2	25.5	15.1	2,553
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155)	19.4	27.7	32.3	20.6	3,730
	모른다	(845)	27.0	26.2	27.0	19.9	3,074
체납경험 유무	체납경험 있음	(87)	19.5	31.0	27.6	21.8	4,661
	체납경험 없음	(913)	26.4	26.0	27.8	19.8	3,034

#### (4) 부동산 시가와 금융자산 총액

Q. 현재 본인(결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 총액과 금융자산 총액은 모두 합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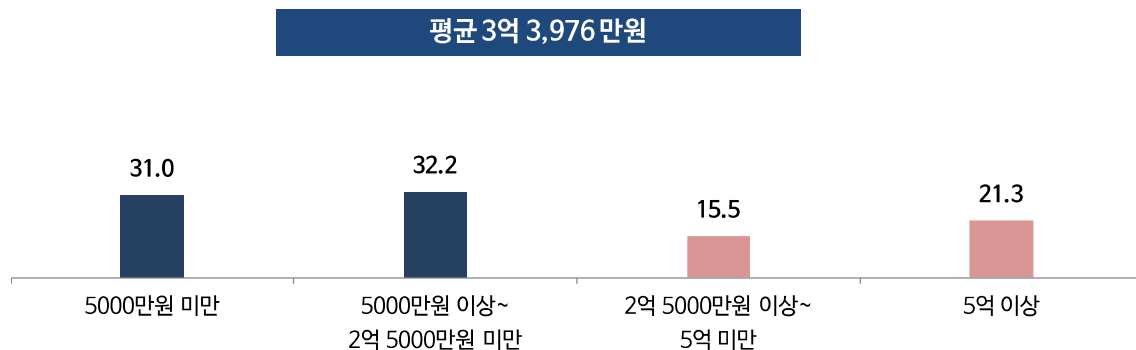
평균 3억 3,976만원

□ 부동산 시가와 금융자산 총액은 5,000만원 미만 31.0%, 5,000만원 이상~2억 5,000만원 미만 32.2%, 2억 5,000만원 이상~5억 미만 15.5%, 5억 이상 21.3%으로 나타남

□ 연간 소득 금액은 평균 3억 3,976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9] 부동산 시가와 금융자산 총액

(Base: 전체, n=1,000, 단위: %)



#### <응답자 특성>

□ 부동산 시가와 금융자산 총액의 응답자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여성이 3억 5,786만원으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4억 8,029만원,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 9,357만원,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4억 5,005만원, 가구주 여부별로는 가구주가 3억 5,127만원,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 4억 669만원, 학력별로는 대학원재학이상 5억 4,991만원, 소득활동 여부별로는 소득활동 있음이 3억 4,561만원, 소득활동 유형별로는 사업소득이 4억 4,277만원, 채무 유무별로는 채무 있음이 3억 7,770만원, 제도 인지 여부별로는 알고 있다 3억 6,844만원, 체납 경력 유무별로는 체납 경력 없음 3억 4,886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부동산 시가와 금융자산 총액

(단위: 만원, 명, %)

구분		사례 수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2억 5,000만원 미만	2억 5,000만원 이상~5억 미만	5억 이상	평균
전체		(1,000)	31.0	32.2	15.5	21.3	33,976
성별	남성	(496)	28.4	32.3	15.9	23.4	32,136
	여성	(504)	33.5	32.1	15.1	19.2	35,786
연령별	19~29세	(173)	73.4	24.3	1.2	1.2	5,794
	30대	(167)	30.5	43.1	12.6	13.8	24,685
	40대	(195)	24.6	32.8	19.0	23.6	33,423
	50세 이상	(465)	18.1	31.0	20.4	30.5	48,029
지역별	서울	(193)	28.5	25.9	14.5	31.1	49,357
	인천/경기	(306)	30.1	32.7	17.6	19.6	29,920
	대전/세종/충청	(106)	34.0	32.1	13.2	20.8	31,799
	광주/전라	(99)	29.3	40.4	13.1	17.2	31,289
	대구/경북	(100)	33.0	30.0	18.0	19.0	26,221
	부산/울산/경남	(153)	34.0	32.7	14.4	19.0	34,293
	강원/제주	(43)	30.2	41.9	14.0	14.0	22,256
결혼 여부	미혼	(323)	59.1	31.6	3.1	6.2	10,859
	기혼	(677)	17.6	32.5	21.4	28.5	45,005
가구주 여부	가구주	(547)	23.2	34.0	18.8	23.9	35,127
	가구원	(453)	40.4	30.0	11.5	18.1	32,585
가구원 수	1인가구	(177)	43.5	37.9	8.5	10.2	17,618
	2인가구	(179)	25.1	33.0	20.7	21.2	34,293
	3인가구	(285)	30.2	33.0	14.4	22.5	36,460
	4인가구	(294)	27.2	30.3	16.3	26.2	40,669
	5인가구 이상	(65)	33.8	20.0	21.5	24.6	36,475
학력별	고졸이하	(222)	34.2	36.0	12.6	17.1	30,904
	전문대졸	(134)	35.8	39.6	14.2	10.4	18,905
	대졸	(548)	31.0	30.8	16.4	21.7	35,224
	대학원재학 이상	(96)	16.7	20.8	18.8	43.8	54,991
소득활동 여부	소득활동 있음	(805)	28.1	34.7	15.5	21.7	34,561
	소득활동 없음	(195)	43.1	22.1	15.4	19.5	31,561
소득활동 유형	근로소득	(675)	30.2	34.1	15.0	20.7	32,507
	사업소득	(106)	17.0	38.7	17.0	27.4	44,277
	둘다	(24)	16.7	33.3	25.0	25.0	49,396
채무 유무	채무 있음	(432)	25.2	34.3	16.4	24.1	37,770
	채무 없음	(568)	35.4	30.6	14.8	19.2	31,090
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155)	23.2	36.8	15.5	24.5	36,844
	모른다	(845)	32.4	31.4	15.5	20.7	33,449
채납경험 유무	채납경험 있음	(87)	39.1	36.8	12.6	11.5	24,426
	채납경험 없음	(913)	30.2	31.8	15.8	22.2	34,886

(5) 채무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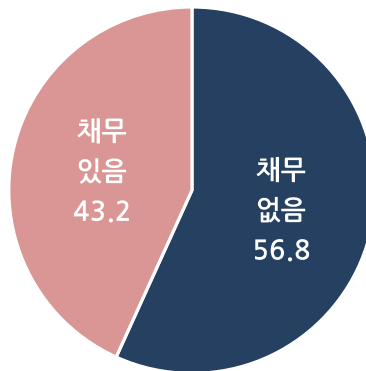
Q. 현재 본인(결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의 채무(빚)가 있습니까?

채무 없음 56.8% > 채무 있음 43.2%

□ 현재 본인이 채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6.8%로 갖고 있다는 응답 43.2%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0] 채무 유무

(Base: 전체, n=1,000, 단위: %)



<응답자 특성>

□ 채무 유무에 대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40대, 기혼, 가구주, 5인 가구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체납 경력이 있는 경우 채무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8] 채무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채무 있음	채무 없음
전체		(1,000)	43.2	56.8
성별	남성	(496)	48.0	52.0
	여성	(504)	38.5	61.5
연령별	19~29세	(173)	22.0	78.0
	30대	(167)	48.5	51.5
	40대	(195)	53.3	46.7
	50세 이상	(465)	44.9	55.1
지역별	서울	(193)	42.5	57.5
	인천/경기	(306)	44.8	55.2
	대전/세종/충청	(106)	50.0	50.0
	광주/전라	(99)	43.4	56.6
	대구/경북	(100)	44.0	56.0
	부산/울산/경남	(153)	36.6	63.4
	강원/제주	(43)	39.5	60.5
결혼 여부	미혼	(323)	24.1	75.9
	기혼	(677)	52.3	47.7
가구주 여부	가구주	(547)	51.0	49.0
	가구원	(453)	33.8	66.2
가구원 수	1인가구	(177)	36.2	63.8
	2인가구	(179)	45.3	54.7
	3인가구	(285)	41.1	58.9
	4인가구	(294)	45.2	54.8
	5인가구 이상	(65)	56.9	43.1
학력별	고졸 이하	(222)	40.1	59.9
	전문대졸	(134)	43.3	56.7
	대졸	(548)	42.9	57.1
	대학원재학 이상	(96)	52.1	47.9
소득활동 여부	소득활동 있음	(805)	45.7	54.3
	소득활동 없음	(195)	32.8	67.2
소득활동 유형	근로소득	(675)	45.0	55.0
	사업소득	(106)	49.1	50.9
	둘다	(24)	50.0	50.0
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155)	48.4	51.6
	모른다	(845)	42.2	57.8
채납경험 유무	채납경험 있음	(87)	66.7	33.3
	채납경험 없음	(913)	41.0	59.0

(6) 채무 금액

Q. 그렇다면 그 채무(빚)는 총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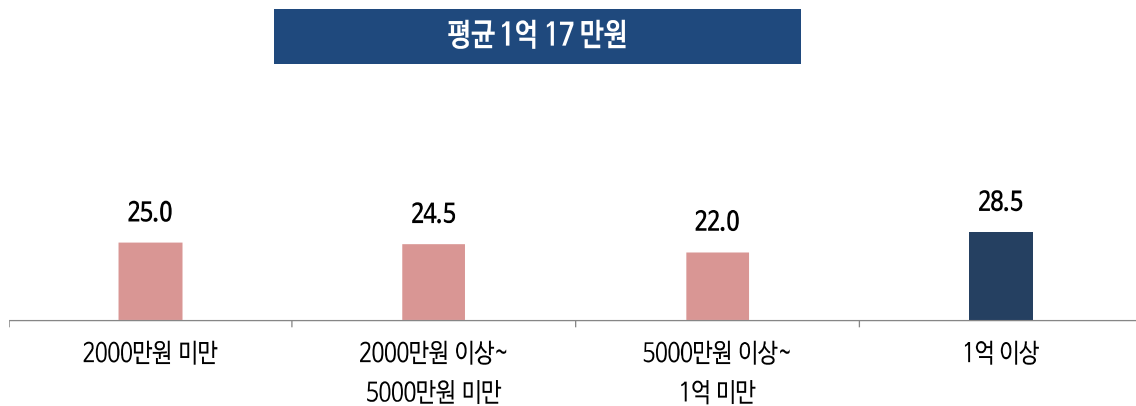
평균 1억 17만원

□ 채무를 갖고있는 응답자의 채무금액은 2,000만원 미만 25.0%, 2,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4.5%, 5,000만원 이상~1억 미만 22.0%, 1억 이상 28.5%로 나타남

□ 평균 채무 금액은 1억 17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11] 채무 금액

(Base: 채무 보유자, n=432, 단위: %)



<응답자 특성>

□ 채무 금액의 응답자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여성이 1억 539만원으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1억 1,928만원, 지역별로는 서울이 1억 2,949만원,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1억 1,314만원, 가구주 여부별로는 가구원이 1억 1,596만원,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 1억 6,762만원, 학력별로는 대학원재학 이상 1억 6,374만원, 소득활동 여부별로는 소득활동 있음이 1억 87만원, 소득활동 유형별로는 둘다가 1억 8,500만원, 제도 인지 여부별로는 모른다 1억 443만원, 체납 경력 유무별로는 체납 경력 없음 1억 121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채무 금액

(단위: 만원, 명, %)

구분		사례 수	2,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1억 미만	1억 이상	평균
전체		(432)	25.0	24.5	22.0	28.5	10,017
성별	남성	(238)	24.4	26.5	19.7	29.4	9,591
	여성	(194)	25.8	22.2	24.7	27.3	10,539
연령별	19~29세	(38)	57.9	18.4	15.8	7.9	3,441
	30대	(81)	19.8	30.9	29.6	19.8	8,843
	40대	(104)	21.2	25.0	22.1	31.7	9,495
	50세 이상	(209)	23.0	23.0	20.1	34.0	11,928
지역별	서울	(82)	23.2	25.6	15.9	35.4	12,949
	인천/경기	(137)	19.0	24.8	27.7	28.5	10,013
	대전/세종/충청	(53)	30.2	28.3	20.8	20.8	7,924
	광주/전라	(43)	27.9	25.6	18.6	27.9	8,751
	대구/경북	(44)	34.1	22.7	13.6	29.5	7,362
	부산/울산/경남	(56)	30.4	23.2	23.2	23.2	8,219
결혼 여부	미혼	(78)	46.2	19.2	23.1	11.5	4,130
	기혼	(354)	20.3	25.7	21.8	32.2	11,314
가구주 여부	가구주	(279)	23.3	24.0	23.3	29.4	9,151
	가구원	(153)	28.1	25.5	19.6	26.8	11,596
가구원 수	1인가구	(64)	35.9	21.9	21.9	20.3	5,309
	2인가구	(81)	30.9	27.2	21.0	21.0	8,795
	3인가구	(117)	26.5	27.4	17.9	28.2	11,567
	4인가구	(133)	16.5	22.6	24.8	36.1	9,788
	5인가구 이상	(37)	18.9	21.6	27.0	32.4	16,762
학력별	고졸 이하	(89)	24.7	30.3	21.3	23.6	10,788
	전문대졸	(58)	29.3	31.0	22.4	17.2	5,897
	대졸	(235)	26.8	22.1	23.0	28.1	9,390
	대학원재학 이상	(50)	12.0	18.0	18.0	52.0	16,374
소득활동 여부	소득활동 있음	(368)	24.5	24.5	23.4	27.7	10,087
	소득활동 없음	(64)	28.1	25.0	14.1	32.8	9,617
소득활동 유형	근로소득	(304)	26.3	24.3	23.4	26.0	8,923
	사업소득	(52)	19.2	25.0	21.2	34.6	14,950
	둘다	(12)	0.0	25.0	33.3	41.7	18,500
채무 유무	채무 있음	(432)	25.0	24.5	22.0	28.5	10,017
	채무 없음	(0)	0.0	0.0	0.0	0.0	.
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75)	30.7	25.3	24.0	20.0	7,990
	모른다	(357)	23.8	24.4	21.6	30.3	10,443
채납경험 유무	채납경험 있음	(58)	36.2	24.1	20.7	19.0	9,350
	채납경험 없음	(374)	23.3	24.6	22.2	29.9	10,121

### (7) 체납 경력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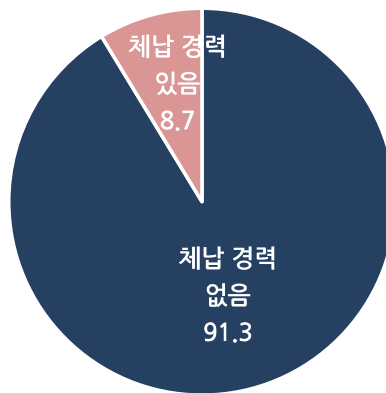
Q. 귀하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 경력이 있습니까?

체납 경력 없음 91.3% > 체납 경력 있음 8.7%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 경력이 없는 경우가 91.3%로 체납 경력이 있는 경우(8.7%)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2] 체납 경력 유무

(Base: 전체, n=1,000, 단위: %)



#### <응답자 특성>

- 체납 경력 유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주, 소득활동 있는 경우, 소득활동 유형이 사업소득, 채무가 있는 경우, 제도 인지층에서 체납경험이 있음이 높게 나타남

[표 8] 체납 경력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체납 경력 있음	체납 경력 없음
전체		(1,000)	8.7	91.3
성별	남성	(496)	10.3	89.7
	여성	(504)	7.1	92.9
연령별	19~29세	(173)	6.9	93.1
	30대	(167)	9.0	91.0
	40대	(195)	8.2	91.8
	50세 이상	(465)	9.5	90.5
지역별	서울	(193)	8.8	91.2
	인천/경기	(306)	7.8	92.2
	대전/세종/충청	(106)	8.5	91.5
	광주/전라	(99)	8.1	91.9
	대구/경북	(100)	10.0	90.0
	부산/울산/경남	(153)	9.2	90.8
결혼 여부	강원/제주	(43)	11.6	88.4
	미혼	(323)	8.4	91.6
가구주 여부	기혼	(677)	8.9	91.1
	가구주	(547)	10.8	89.2
가구원 수	가구원	(453)	6.2	93.8
	1인가구	(177)	10.2	89.8
	2인가구	(179)	7.8	92.2
	3인가구	(285)	8.8	91.2
	4인가구	(294)	9.2	90.8
학력별	5인가구 이상	(65)	4.6	95.4
	고졸 이하	(222)	8.1	91.9
	전문대졸	(134)	8.2	91.8
	대졸	(548)	9.3	90.7
소득활동 여부	대학원재학 이상	(96)	7.3	92.7
	소득활동 있음	(805)	9.8	90.2
소득활동 유형	소득활동 없음	(195)	4.1	95.9
	근로소득	(675)	9.3	90.7
	사업소득	(106)	15.1	84.9
채무 유무	둘다	(24)	0.0	100.0
	채무 있음	(432)	13.4	86.6
제도 인지 여부	채무 없음	(568)	5.1	94.9
	알고 있다	(155)	24.5	75.5
제도 인지 여부	모른다	(845)	5.8	94.2

## (8\_1) 체납 금액 - 종합 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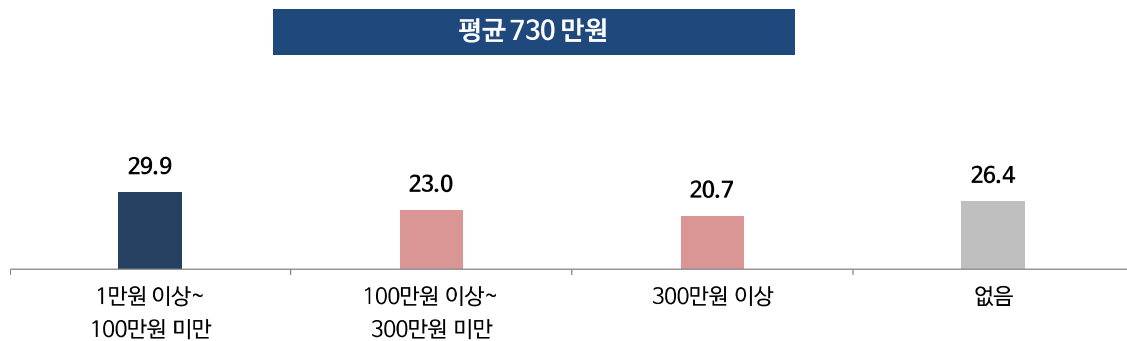
Q. 그렇다면 그 체납액(체납원금/가산금)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 730만원

- 종합 소득세의 체납 금액은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9.9%,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3.0%, 300만원 이상 20.7%로 나타났으며, 한편 없는 경우는 26.4%임
- 종합 소득세의 평균 체납 금액은 730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13\_1] 체납 금액- 종합 소득세

(Base: 체납경험자, n=87, 단위: %)



### <응답자 특성>

- 종합 소득세 체납 금액의 응답자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남성이 805만원으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에서 1,874만원,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1,245만원,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870만원, 가구주 여부별로는 가구주가 1,012만원, 가구원 수별로는 2인 가구 1,028만원,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1,042만원, 소득활동 여부별로는 소득활동 있음이 775만원, 소득활동 유형별로는 사업소득이 1,236만원, 채무 유무별로는 채무 있음이 1,070만원, 제도 인지 여부별로는 알고 있다 861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9\_1] 체납 금액 - 종합 소득세

(단위: 만원, 명, %)

구분		사례 수	1만원 이상~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없음	평균
전체		(87)	29.9	23.0	20.7	26.4	730
성별	남성	(51)	29.4	25.5	17.6	27.5	805
	여성	(36)	30.6	19.4	25.0	25.0	628
연령별	19~29세	(12)	50.0	50.0	0.0	0.0	92
	30대	(15)	26.7	20.0	40.0	13.3	1,874
	40대	(16)	37.5	6.3	12.5	43.8	1,111
	50세 이상	(44)	22.7	22.7	22.7	31.8	376
지역별	서울	(17)	23.5	35.3	17.6	23.5	201
	인천/경기	(24)	37.5	8.3	20.8	33.3	1,245
	대전/세종/충청	(9)	33.3	11.1	33.3	22.2	699
	광주/전라	(8)	37.5	37.5	0.0	25.0	74
	대구/경북	(10)	0.0	50.0	10.0	40.0	296
	부산/울산/경남	(14)	50.0	14.3	35.7	0.0	1,183
결혼 여부	강원/제주	(5)	0.0	20.0	20.0	60.0	275
	미혼	(27)	33.3	22.2	22.2	22.2	445
가구주 여부	기혼	(60)	28.3	23.3	20.0	28.3	870
	가구주	(59)	25.4	22.0	25.4	27.1	1,012
가구원 수	가구원	(28)	39.3	25.0	10.7	25.0	153
	1인가구	(18)	27.8	16.7	27.8	27.8	422
	2인가구	(14)	35.7	21.4	21.4	21.4	1,028
	3인가구	(25)	36.0	16.0	24.0	24.0	975
	4인가구	(27)	22.2	33.3	14.8	29.6	593
학력별	5인가구 이상	(3)	33.3	33.3	0.0	33.3	83
	고졸 이하	(18)	33.3	11.1	38.9	16.7	916
	전문대졸	(11)	36.4	9.1	18.2	36.4	1,042
	대졸	(51)	29.4	25.5	17.6	27.5	678
소득활동 여부	대학원재학 이상	(7)	14.3	57.1	0.0	28.6	126
	소득활동 있음	(79)	29.1	25.3	19.0	26.6	775
소득활동 유형	소득활동 없음	(8)	37.5	0.0	37.5	25.0	299
	근로소득	(63)	31.7	28.6	17.5	22.2	690
	사업소득	(16)	18.8	12.5	25.0	43.8	1,236
채무 유무	둘다	(0)	0.0	0.0	0.0	0.0	.
	채무 있음	(58)	22.4	25.9	20.7	31.0	1,070
제도 인지 여부	채무 없음	(29)	44.8	17.2	20.7	17.2	165
	알고 있다	(38)	23.7	34.2	23.7	18.4	861
	모른다	(49)	34.7	14.3	18.4	32.7	608

(8\_2) 체납 금액 - 부가가치세

Q. 그렇다면 그 체납액(체납원금/가산금)은 얼마나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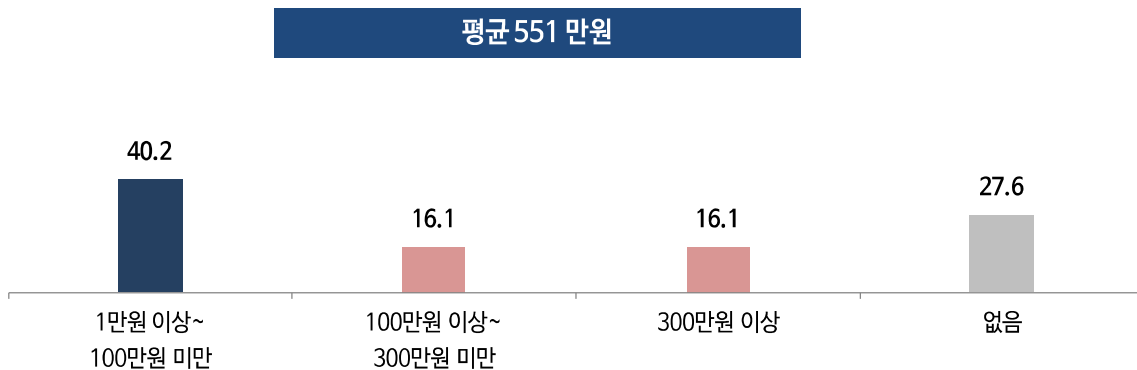
평균 551만원

□ 부가가치세의 체납 금액은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40.2%,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6.1%, 300만원 이상 16.1%로 나타났으며, 한편 없는 경우는 27.6%임

□ 부가가치세의 평균 체납 금액은 551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13\_2] 체납 금액 - 부가가치세

(Base: 체납경험자, n=87, 단위: %)



<응답자 특성>

□ 부가가치세 체납 금액의 응답자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남성이 789만원으로 여정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726만원, 지역별로는 강원/제주가 1,004만원,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634만원, 가구주 여부별로는 가구주가 734만원, 가구원 수별로는 5인 이상 가구 1,023만원, 학력별로는 대졸 702만원, 소득활동 여부별로는 소득활동 있음이 586만원, 소득활동 유형별로는 사업소득이 1,722만원, 채무 유무별로는 채무 있음이 703만원, 제도 인지 여부별로는 모른다 757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9\_2] 체납 금액 - 부가가치세

(단위: 만원, 명, %)

구분		사례 수	1만원 이상~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없음	평균
전체		(87)	40.2	16.1	16.1	27.6	551
성별	남성	(51)	39.2	17.6	21.6	21.6	789
	여성	(36)	41.7	13.9	8.3	36.1	138
연령별	19~29세	(12)	83.3	16.7	0.0	0.0	53
	30대	(15)	53.3	13.3	20.0	13.3	610
	40대	(16)	31.3	18.8	18.8	31.3	597
	50세 이상	(44)	27.3	15.9	18.2	38.6	726
지역별	서울	(17)	47.1	17.6	11.8	23.5	691
	인천/경기	(24)	33.3	16.7	20.8	29.2	834
	대전/세종/충청	(9)	55.6	33.3	11.1	0.0	183
	광주/전라	(8)	50.0	25.0	0.0	25.0	74
	대구/경북	(10)	30.0	10.0	20.0	40.0	703
	부산/울산/경남	(14)	42.9	7.1	21.4	28.6	323
	강원/제주	(5)	20.0	0.0	20.0	60.0	1,004
결혼 여부	미혼	(27)	55.6	11.1	14.8	18.5	396
	기혼	(60)	33.3	18.3	16.7	31.7	634
가구주 여부	가구주	(59)	37.3	16.9	23.7	22.0	734
	가구원	(28)	46.4	14.3	0.0	39.3	57
가구원 수	1인가구	(18)	55.6	0.0	16.7	27.8	472
	2인가구	(14)	28.6	28.6	7.1	35.7	300
	3인가구	(25)	40.0	16.0	20.0	24.0	885
	4인가구	(27)	37.0	22.2	14.8	25.9	351
	5인가구 이상	(3)	33.3	0.0	33.3	33.3	1,023
학력별	고졸 이하	(18)	55.6	16.7	11.1	16.7	348
	전문대졸	(11)	45.5	9.1	9.1	36.4	173
	대졸	(51)	37.3	15.7	19.6	27.5	702
	대학원재학 이상	(7)	14.3	28.6	14.3	42.9	578
소득활동 여부	소득활동 있음	(79)	39.2	17.7	17.7	25.3	586
	소득활동 없음	(8)	50.0	0.0	0.0	50.0	33
소득활동 유형	근로소득	(63)	46.0	19.0	12.7	22.2	354
	사업소득	(16)	12.5	12.5	37.5	37.5	1,722
	둘다	(0)	0.0	0.0	0.0	0.0	.
채무 유무	채무 있음	(58)	36.2	19.0	15.5	29.3	703
	채무 없음	(29)	48.3	10.3	17.2	24.1	269
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8)	42.1	15.8	23.7	18.4	338
	모른다	(49)	38.8	16.3	10.2	34.7	757

(8\_3) 체납 금액 - 기타

Q. 그렇다면 그 체납액(체납원금/가산금)은 얼마나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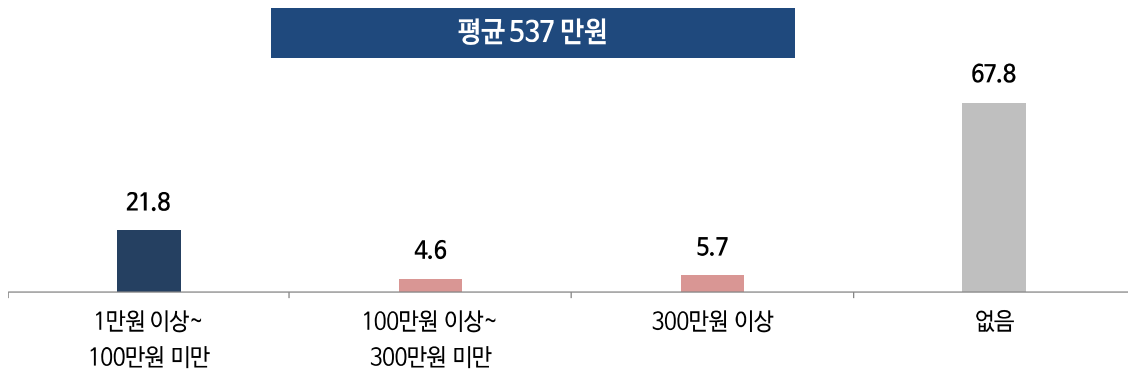
**평균 537만원**

□ 기타 체납 금액은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1.8%,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6%, 300만원 이상 5.7%로 나타났으며, 한편 없는 경우는 67.8%임

□ 기타 체납액의 평균 체납 금액은 537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13\_3] 체납 금액 - 기타

(Base: 체납경험자, n=87, 단위: %)



<응답자 특성>

□ 기타 체납 금액의 응답자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남성이 824만원으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에서 1,904만원,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1,579만원,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644만원, 가구주 여부별로는 가구주가 712만원, 가구원 수별로는 3인 가구 881만원, 학력별로는 대졸 734만원, 소득활동 여부별로는 소득활동 없음이 1,004만원, 소득활동 유형별로는 사업소득이 505만원, 채무 유무별로는 채무 있음이 640만원, 제도 인지 여부별로는 모른다 747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9\_3] 체납 금액 - 기타

(단위: 만원, 명, %)

구분		사례 수	1만원 이상~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없음	평균 (만원)
전체		(87)	21.8	4.6	5.7	67.8	537
성별	남성	(51)	19.6	5.9	9.8	64.7	824
	여성	(36)	25.0	2.8	0.0	72.2	19
연령별	19~29세	(12)	41.7	8.3	8.3	41.7	67
	30대	(15)	20.0	0.0	13.3	66.7	1,904
	40대	(16)	25.0	0.0	0.0	75.0	15
	50세 이상	(44)	15.9	6.8	4.5	72.7	415
지역별	서울	(17)	17.6	11.8	0.0	70.6	55
	인천/경기	(24)	16.7	4.2	12.5	66.7	1,579
	대전/세종/충청	(9)	22.2	0.0	0.0	77.8	20
	광주/전라	(8)	37.5	0.0	12.5	50.0	77
	대구/경북	(10)	60.0	0.0	0.0	40.0	11
	부산/울산/경남	(14)	7.1	0.0	7.1	85.7	753
결혼 여부	미혼	(27)	22.2	7.4	3.7	66.7	310
	기혼	(60)	21.7	3.3	6.7	68.3	644
가구주 여부	가구주	(59)	20.3	6.8	8.5	64.4	712
	가구원	(28)	25.0	0.0	0.0	75.0	9
가구원 수	1인가구	(18)	33.3	0.0	5.6	61.1	442
	2인가구	(14)	7.1	14.3	7.1	71.4	426
	3인가구	(25)	32.0	4.0	8.0	56.0	881
	4인가구	(27)	14.8	3.7	3.7	77.8	89
	5인가구 이상	(3)	0.0	0.0	0.0	100.0	.
학력별	고졸 이하	(18)	22.2	0.0	0.0	77.8	7
	전문대졸	(11)	18.2	9.1	0.0	72.7	73
	대졸	(51)	25.5	3.9	9.8	60.8	734
	대학원재학 이상	(7)	0.0	14.3	0.0	85.7	100
소득활동 여부	소득활동 있음	(79)	21.5	5.1	5.1	68.4	480
	소득활동 없음	(8)	25.0	0.0	12.5	62.5	1,004
소득활동 유형	근로소득	(63)	23.8	6.3	4.8	65.1	477
	사업소득	(16)	12.5	0.0	6.3	81.3	505
	둘다	(0)	0.0	0.0	0.0	0.0	.
채무 유무	채무 있음	(58)	22.4	6.9	6.9	63.8	640
	채무 없음	(29)	20.7	0.0	3.4	75.9	226
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8)	21.1	5.3	5.3	68.4	257
	모른다	(49)	22.4	4.1	6.1	67.3	747

**(9\_1) 납부한 체납 금액 - 종합 소득세**

Q. 이 중, 납부한 체납액(체납원금/가산금)은 얼마나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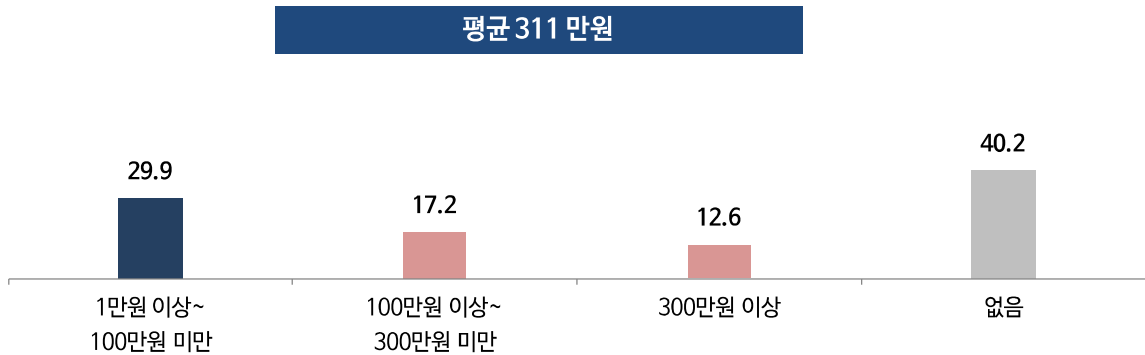
**평균 311만원**

□ 체납된 종합 소득세에서 납부한 금액은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9.9%,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7.2%, 300만원 이상 12.6%로 나타났으며, 한편 없는 경우는 40.2%임

□ 체납된 종합 소득세 중 납부한 체납 금액 평균은 311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14\_1] 납부한 체납 금액 - 종합 소득세

(Base: 체납경험자, n=87, 단위: %)



<응답자 특성>

□ 납부한 종합 소득세 체납 금액의 응답자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여성이 618만원으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에서 657만원,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669만원,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398만원, 가구주 여부별로는 가구주가 381만원,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 606만원,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835만원, 소득활동 여부별로는 소득활동 있음이 323만원, 소득활동 유형별로는 근로소득이 338만원, 채무 유무별로는 채무 있음이 447만원, 제도 인지 여부별로는 알고있다 503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_1] 납부한 체납 금액 - 종합 소득세

(단위: 만원, 명, %)

구분	사례 수	1만원 이상~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없음	평균	
전체	(87)	29.9	17.2	12.6	40.2	311	
성별	남성	(51)	31.4	19.6	9.8	39.2	103
	여성	(36)	27.8	13.9	16.7	41.7	618
연령별	19~29세	(12)	58.3	25.0	0.0	16.7	43
	30대	(15)	33.3	13.3	13.3	40.0	657
	40대	(16)	43.8	0.0	6.3	50.0	99
	50세 이상	(44)	15.9	22.7	18.2	43.2	362
지역별	서울	(17)	35.3	17.6	11.8	35.3	159
	인천/경기	(24)	29.2	4.2	4.2	62.5	68
	대전/세종/충청	(9)	33.3	22.2	22.2	22.2	669
	광주/전라	(8)	25.0	37.5	0.0	37.5	76
	대구/경북	(10)	20.0	30.0	10.0	40.0	236
	부산/울산/경남	(14)	42.9	14.3	28.6	14.3	575
결혼 여부	강원/제주	(5)	0.0	20.0	20.0	60.0	225
	미혼	(27)	33.3	14.8	7.4	44.4	98
가구주 여부	기혼	(60)	28.3	18.3	15.0	38.3	398
	가구주	(59)	30.5	15.3	13.6	40.7	381
가구원 수	가구원	(28)	28.6	21.4	10.7	39.3	168
	1인가구	(18)	22.2	11.1	11.1	55.6	107
	2인가구	(14)	42.9	14.3	14.3	28.6	172
	3인가구	(25)	32.0	12.0	16.0	40.0	210
	4인가구	(27)	25.9	25.9	11.1	37.0	606
학력별	5인가구 이상	(3)	33.3	33.3	0.0	33.3	76
	고졸 이하	(18)	22.2	5.6	27.8	44.4	350
	전문대졸	(11)	27.3	9.1	9.1	54.5	835
	대졸	(51)	31.4	21.6	9.8	37.3	255
소득활동 여부	대학원재학 이상	(7)	42.9	28.6	0.0	28.6	72
	소득활동 있음	(79)	30.4	19.0	11.4	39.2	323
소득활동 유형	소득활동 없음	(8)	25.0	0.0	25.0	50.0	171
	근로소득	(63)	34.9	20.6	11.1	33.3	338
	사업소득	(16)	12.5	12.5	12.5	62.5	218
채무 유무	둘다	(0)	0.0	0.0	0.0	.	
	채무 있음	(58)	25.9	15.5	13.8	44.8	447
제도 인지 여부	채무 없음	(29)	37.9	20.7	10.3	31.0	93
	알고 있다	(38)	31.6	21.1	15.8	31.6	503
	모른다	(49)	28.6	14.3	10.2	46.9	119

**(9\_2) 납부한 체납 금액 - 부가가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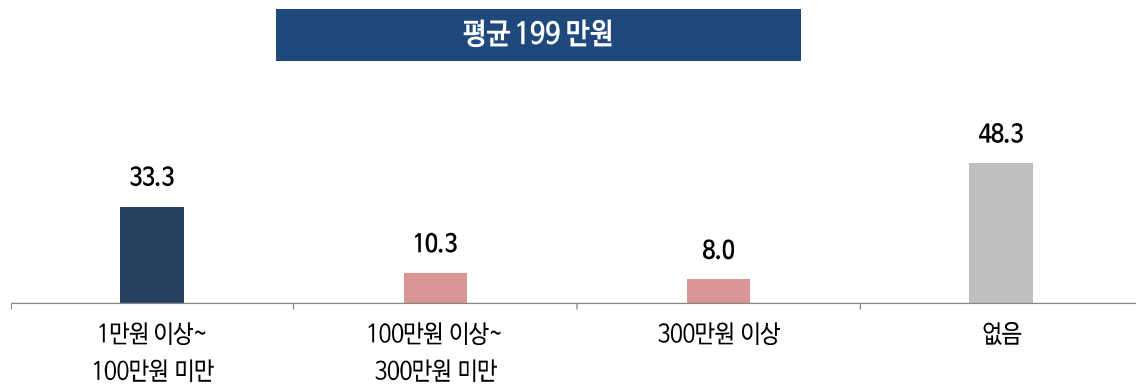
Q. 이 중, 납부한 체납액(체납원금/가산금)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 199만원**

- 체납된 부가가치세에서 납부한 금액은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3.3%,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0.3%, 300만원 이상 8.0%로 나타났으며, 한편 없는 경우는 48.3%임
- 체납된 부가가치세 중 납부한 체납 금액 평균은 199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14\_2] 납부한 체납 금액 - 부가가치세

(Base: 체납경험자, n=87, 단위: %)



<응답자 특성>

- 납부한 부가가치세 체납 금액의 응답자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남성이 201만원으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347만원,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258만원,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254만원, 가구주 여부별로는 가구주가 243만원,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 1,001만원,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 1,010만원, 소득활동 여부별로는 소득활동 있음이 210만원, 소득활동 유형별로는 사업소득이 700만원, 채무 유무별로는 채무 있음이 221만원, 제도 인지 여부별로는 알고있다 258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_2] 납부한 체납 금액 - 부가가치세

(단위: 만원, 명, %)

구분		사례 수	1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없음	평균
전체		(87)	33.3	10.3	8.0	48.3	199
성별	남성	(51)	41.2	9.8	7.8	41.2	201
	여성	(36)	22.2	11.1	8.3	58.3	194
연령별	19~29세	(12)	75.0	8.3	0.0	16.7	29
	30대	(15)	33.3	13.3	6.7	46.7	103
	40대	(16)	37.5	6.3	6.3	50.0	153
	50세 이상	(44)	20.5	11.4	11.4	56.8	347
지역별	서울	(17)	29.4	17.6	5.9	47.1	169
	인천/경기	(24)	29.2	4.2	4.2	62.5	258
	대전/세종/충청	(9)	55.6	33.3	11.1	0.0	182
	광주/전라	(8)	37.5	12.5	0.0	50.0	29
	대구/경북	(10)	30.0	0.0	10.0	60.0	148
	부산/울산/경남	(14)	42.9	7.1	14.3	35.7	193
	강원/제주	(5)	0.0	0.0	20.0	80.0	1,000
결혼 여부	미혼	(27)	48.1	3.7	3.7	44.4	88
	기혼	(60)	26.7	13.3	10.0	50.0	254
가구주 여부	가구주	(59)	35.6	10.2	11.9	42.4	243
	가구원	(28)	28.6	10.7	0.0	60.7	62
가구원 수	1인가구	(18)	38.9	0.0	5.6	55.6	143
	2인가구	(14)	35.7	14.3	7.1	42.9	177
	3인가구	(25)	36.0	12.0	8.0	44.0	154
	4인가구	(27)	25.9	14.8	7.4	51.9	170
	5인가구 이상	(3)	33.3	0.0	33.3	33.3	1,001
학력별	고졸 이하	(18)	38.9	11.1	5.6	44.4	107
	전문대졸	(11)	27.3	9.1	9.1	54.5	240
	대졸	(51)	35.3	11.8	7.8	45.1	166
	대학원재학 이상	(7)	14.3	0.0	14.3	71.4	1,010
소득활동 여부	소득활동 있음	(79)	32.9	11.4	8.9	46.8	210
	소득활동 없음	(8)	37.5	0.0	0.0	62.5	40
소득활동 유형	근로소득	(63)	38.1	12.7	6.3	42.9	128
	사업소득	(16)	12.5	6.3	18.8	62.5	700
	둘다	(0)	0.0	0.0	0.0	0.0	.
채무 유무	채무 있음	(58)	29.3	10.3	8.6	51.7	221
	채무 없음	(29)	41.4	10.3	6.9	41.4	162
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8)	34.2	13.2	13.2	39.5	258
	모른다	(49)	32.7	8.2	4.1	55.1	136

### (9\_3) 납부한 체납 금액 - 기타

Q. 이 중, 납부한 체납액(체납원금/가산금)은 얼마나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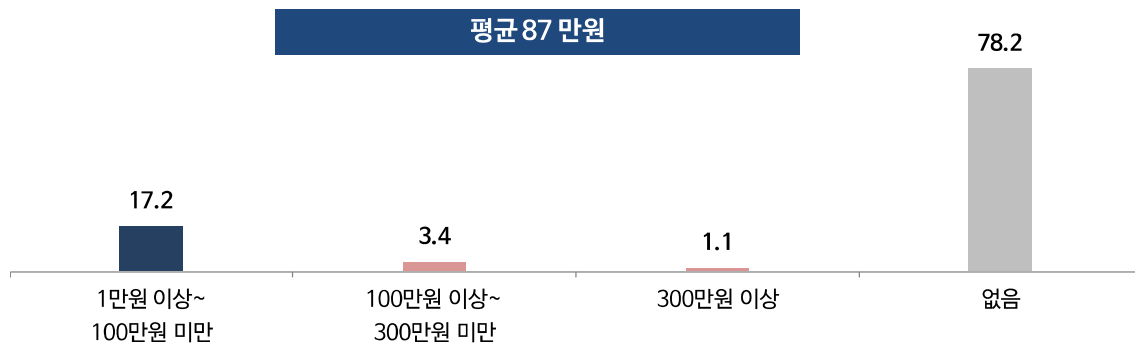
평균 87만원

□ 체납된 기타 체납액에서 납부한 금액은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7.2%,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4%, 300만원 이상 1.1%로 나타났으며, 한편 없는 경우는 78.2%임

□ 체납된 기타 체납액 중 납부한 체납 금액 평균은 87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14\_3] 납부한 체납 금액 - 기타

(Base: 체납경험자, n=87, 단위: %)



#### <응답자 특성>

□ 납부한 기타 체납 금액의 응답자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남성이 115만원으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195만원,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503만원,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122만원, 가구주 여부별로는 가구주가 108만원, 가구원 수별로는 2인 가구 338만원, 학력별로는 대졸 118만원, 소득 활동 여부별로는 소득활동 있음이 92만원, 소득활동 유형별로는 사업소득이 505만원, 채무 유무별로는 채무 없음이 151만원, 제도 인지 여부별로는 모른다 138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_3] 납부한 체납 금액 - 기타

(단위: 만원, 명, %)

구분		사례 수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없음	평균 (만원)
전체		(87)	17.2	3.4	1.1	78.2	87
성별	남성	(51)	19.6	5.9	2.0	72.5	115
	여성	(36)	13.9	0.0	0.0	86.1	11
연령별	19~29세	(12)	50.0	8.3	0.0	41.7	40
	30대	(15)	20.0	0.0	0.0	80.0	4
	40대	(16)	12.5	0.0	0.0	87.5	2
	50세 이상	(44)	9.1	4.5	2.3	84.1	195
지역별	서울	(17)	17.6	5.9	0.0	76.5	37
	인천/경기	(24)	16.7	0.0	0.0	83.3	6
	대전/세종/충청	(9)	22.2	0.0	0.0	77.8	16
	광주/전라	(8)	12.5	12.5	0.0	75.0	101
	대구/경북	(10)	40.0	0.0	0.0	60.0	13
	부산/울산/경남	(14)	7.1	0.0	7.1	85.7	503
결혼 여부	강원/제주	(5)	0.0	20.0	0.0	80.0	200
	미혼	(27)	22.2	0.0	0.0	77.8	11
가구주 여부	기혼	(60)	15.0	5.0	1.7	78.3	122
	가구주	(59)	18.6	5.1	1.7	74.6	108
가구원 수	가구원	(28)	14.3	0.0	0.0	85.7	10
	1인가구	(18)	27.8	0.0	0.0	72.2	11
	2인가구	(14)	14.3	0.0	7.1	78.6	338
	3인가구	(25)	24.0	4.0	0.0	72.0	26
	4인가구	(27)	7.4	7.4	0.0	85.2	103
학력별	5인가구 이상	(3)	0.0	0.0	0.0	100.0	.
	고졸 이하	(18)	22.2	0.0	0.0	77.8	7
	전문대졸	(11)	9.1	9.1	0.0	81.8	101
	대졸	(51)	17.6	3.9	2.0	76.5	118
소득활동 여부	대학원재학 이상	(7)	14.3	0.0	0.0	85.7	10
	소득활동 있음	(79)	17.7	3.8	1.3	77.2	92
소득활동 유형	소득활동 없음	(8)	12.5	0.0	0.0	87.5	3
	근로소득	(63)	20.6	4.8	0.0	74.6	40
	사업소득	(16)	6.3	0.0	6.3	87.5	505
채무 유무	둘다	(0)	0.0	0.0	0.0	0.0	.
	채무 있음	(58)	15.5	5.2	0.0	79.3	50
제도 인지 여부	채무 없음	(29)	20.7	0.0	3.4	75.9	151
	알고 있다	(38)	21.1	2.6	0.0	76.3	31
제도 인지 여부	모른다	(49)	14.3	4.1	2.0	79.6	138

## 2. 정부 신뢰도 및 세금에 대한 인식 수준

### (1) 정부 관료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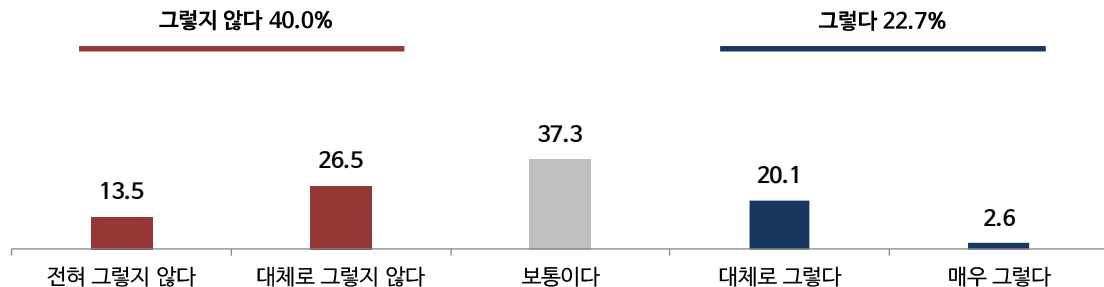
Q. 귀하는 일반적으로 정부 관료가 전 국민의 이익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40.0% > 그렇다 22.7%

□ 정부 관료가 전 국민의 이익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40.0%(전혀 그렇지 않다 13.5% + 대체로 그렇지 않다 26.5%)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응답 22.7%(매우 그렇다 2.6% + 대체로 그렇다 20.1%)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5] 정부 관료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여부

(Base: 전체, n=1,000, 단위: %)



#### <응답자 특성>

□ 정부 관료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4.5점으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 4.5점,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4.9점, 결혼 여부별로는 미혼이 4.4점, 가구원 수별로는 3인 가구와 5인 가구 이상에서 4.5점,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4.5점, 소득활동 유형별로는 근로소득 4.4점, 채무 유무별로는 채무 없음 4.5점, 제도 인지 여부별로는 알고 있다 5.1점, 체납 경력 유무별로는 체납 경력 있음 4.7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 정부 관료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0점 평균
전체		(1,000)	13.5	26.5	37.3	20.1	2.6	40.0	22.7	4.3
성별	남성	(496)	16.1	26.6	35.9	19.0	2.4	42.7	21.4	4.1
	여성	(504)	10.9	26.4	38.7	21.2	2.8	37.3	24.0	4.5
연령별	19~29세	(173)	10.4	24.9	41.6	20.2	2.9	35.3	23.1	4.5
	30대	(167)	13.2	28.1	37.1	18.6	3.0	41.3	21.6	4.3
	40대	(195)	10.8	30.3	40.0	15.4	3.6	41.0	19.0	4.3
	50세 이상	(465)	15.9	24.9	34.6	22.6	1.9	40.9	24.5	4.2
지역별	서울	(193)	17.1	27.5	35.2	17.1	3.1	44.6	20.2	4.0
	인천/경기	(306)	11.4	25.8	40.2	19.9	2.6	37.3	22.5	4.4
	대전/세종/충청	(106)	15.1	22.6	45.3	15.1	1.9	37.7	17.0	4.2
	광주/전라	(99)	7.1	25.3	36.4	28.3	3.0	32.3	31.3	4.9
	대구/경북	(100)	17.0	27.0	29.0	25.0	2.0	44.0	27.0	4.2
	부산/울산/경남	(153)	14.4	29.4	35.9	18.3	2.0	43.8	20.3	4.1
결혼 여부	강원/제주	(43)	11.6	27.9	32.6	23.3	4.7	39.5	27.9	4.5
	미혼	(323)	11.1	26.3	40.2	18.9	3.4	37.5	22.3	4.4
가구주 여부	기혼	(677)	14.6	26.6	35.9	20.7	2.2	41.2	22.9	4.2
	가구주	(547)	14.6	25.6	37.1	19.9	2.7	40.2	22.7	4.3
가구원 수	가구원	(453)	12.1	27.6	37.5	20.3	2.4	39.7	22.7	4.3
	1인가구	(177)	13.6	29.4	38.4	14.7	4.0	42.9	18.6	4.2
	2인가구	(179)	16.2	28.5	35.8	16.2	3.4	44.7	19.6	4.1
	3인가구	(285)	11.9	22.5	41.8	21.1	2.8	34.4	23.9	4.5
	4인가구	(294)	13.6	26.9	35.0	23.8	0.7	40.5	24.5	4.3
학력별	5인가구 이상	(65)	12.3	29.2	29.2	24.6	4.6	41.5	29.2	4.5
	고졸 이하	(222)	12.6	22.5	38.7	24.3	1.8	35.1	26.1	4.5
	전문대졸	(134)	16.4	29.9	44.0	7.5	2.2	46.3	9.7	3.7
	대졸	(548)	12.8	27.2	35.9	21.2	2.9	40.0	24.1	4.4
소득활동 여부	대학원재학 이상	(96)	15.6	27.1	32.3	21.9	3.1	42.7	25.0	4.2
	소득활동 있음	(805)	13.2	27.3	36.6	20.2	2.6	40.5	22.9	4.3
소득활동 유형	소득활동 없음	(195)	14.9	23.1	40.0	19.5	2.6	37.9	22.1	4.3
	근로소득	(675)	12.7	26.8	36.6	20.9	3.0	39.6	23.9	4.4
	사업소득	(106)	13.2	30.2	39.6	17.0	0.0	43.4	17.0	4.0
채무 유무	둘다	(24)	25.0	29.2	25.0	16.7	4.2	54.2	20.8	3.6
	채무 있음	(432)	17.4	28.2	34.3	18.1	2.1	45.6	20.1	4.0
제도 인지 여부	채무 없음	(568)	10.6	25.2	39.6	21.7	3.0	35.7	24.6	4.5
	알고 있다	(155)	8.4	17.4	40.0	29.0	5.2	25.8	34.2	5.1
체납경험 유무	모른다	(845)	14.4	28.2	36.8	18.5	2.1	42.6	20.6	4.1
	체납경험 있음	(87)	10.3	26.4	31.0	28.7	3.4	36.8	32.2	4.7
		(913)	13.8	26.5	37.9	19.3	2.5	40.3	21.8	4.3

## (2)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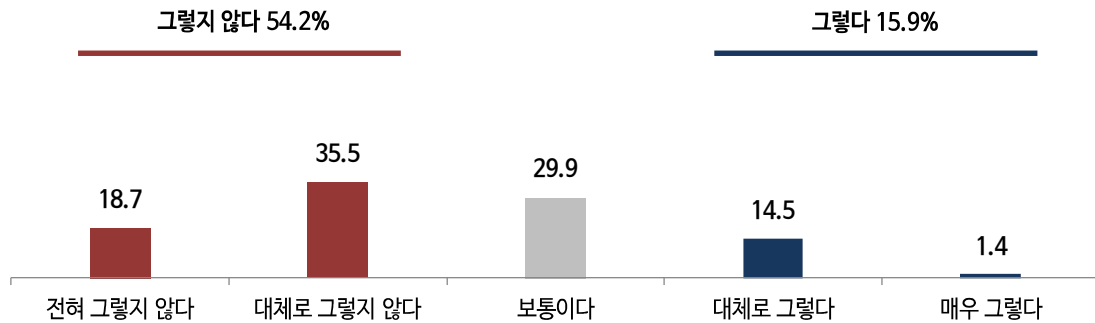
Q.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54.2% > 그렇다 15.9%

- 우리나라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54.2%(전혀 그렇지 않다 18.7% + 대체로 그렇지 않다 35.5%)로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 15.9%(매우 그렇다 1.4% + 대체로 그렇다 14.5%)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6]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

(Base: 전체, n=1,000, 단위: %)



### <응답자 특성>

-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3.7점으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4.1점, 가구원 수별로는 1인, 3인, 4인 가구에서 3.7점, 학력별로는 대졸 3.8점, 소득활동 유형별로는 근로소득 3.7점, 채무 유무별로는 채무 없음 3.7점, 제도 인지 여부별로는 알고 있다 4.5점, 체납 경력 유무별로는 체납 경력 있음 3.9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2]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0점 평균	
전체	(1,000)	18.7	35.5	29.9	14.5	1.4	54.2	15.9	3.6	
성별	남성	(496)	20.6	35.5	27.6	14.7	1.6	56.0	16.3	3.5
	여성	(504)	16.9	35.5	32.1	14.3	1.2	52.4	15.5	3.7
연령별	19~29세	(173)	15.6	37.0	35.8	9.8	1.7	52.6	11.6	3.6
	30대	(167)	15.6	37.7	33.5	12.0	1.2	53.3	13.2	3.6
	40대	(195)	18.5	36.9	30.3	11.8	2.6	55.4	14.4	3.6
	50세 이상	(465)	21.1	33.5	26.2	18.3	0.9	54.6	19.1	3.6
지역별	서울	(193)	21.2	36.3	26.4	14.0	2.1	57.5	16.1	3.5
	인천/경기	(306)	16.3	35.3	32.0	16.0	0.3	51.6	16.3	3.7
	대전/세종/충청	(106)	18.9	34.0	34.0	11.3	1.9	52.8	13.2	3.6
	광주/전라	(99)	11.1	38.4	31.3	15.2	4.0	49.5	19.2	4.1
	대구/경북	(100)	21.0	35.0	27.0	15.0	2.0	56.0	17.0	3.6
	부산/울산/경남	(153)	22.2	35.3	27.5	14.4	0.7	57.5	15.0	3.4
결혼 여부	강원/제주	(43)	23.3	32.6	32.6	11.6	0.0	55.8	11.6	3.3
	미혼	(323)	17.6	35.0	35.0	9.9	2.5	52.6	12.4	3.6
가구주 여부	기혼	(677)	19.2	35.7	27.5	16.7	0.9	54.9	17.6	3.6
	가구주	(547)	19.2	34.7	27.1	17.0	2.0	53.9	19.0	3.7
가구원 수	가구원	(453)	18.1	36.4	33.3	11.5	0.7	54.5	12.1	3.5
	1인가구	(177)	18.1	34.5	33.3	11.3	2.8	52.5	14.1	3.7
	2인가구	(179)	24.6	32.4	25.7	16.2	1.1	57.0	17.3	3.4
	3인가구	(285)	15.8	38.2	29.5	15.8	0.7	54.0	16.5	3.7
	4인가구	(294)	17.0	36.4	31.0	14.3	1.4	53.4	15.6	3.7
학력별	5인가구 이상	(65)	24.6	30.8	29.2	13.8	1.5	55.4	15.4	3.4
	고졸 이하	(222)	19.4	34.7	29.3	15.8	0.9	54.1	16.7	3.6
	전문대졸	(134)	19.4	38.8	35.1	6.7	0.0	58.2	6.7	3.2
	대졸	(548)	18.4	33.0	29.9	16.8	1.8	51.5	18.6	3.8
소득활동 여부	대학원재학 이상	(96)	17.7	46.9	24.0	9.4	2.1	64.6	11.5	3.3
	소득활동 있음	(805)	18.6	35.9	29.6	14.4	1.5	54.5	15.9	3.6
소득활동 유형	소득활동 없음	(195)	19.0	33.8	31.3	14.9	1.0	52.8	15.9	3.6
	근로소득	(675)	18.2	35.0	30.8	14.5	1.5	53.2	16.0	3.7
	사업소득	(106)	18.9	42.5	24.5	13.2	0.9	61.3	14.2	3.4
채무 유무	둘다	(24)	29.2	33.3	16.7	16.7	4.2	62.5	20.8	3.3
	채무 있음	(432)	19.4	37.7	27.3	14.4	1.2	57.2	15.5	3.5
제도 인지 여부	채무 없음	(568)	18.1	33.8	31.9	14.6	1.6	51.9	16.2	3.7
	알고있다	(155)	13.5	23.9	33.5	25.2	3.9	37.4	29.0	4.5
체납경험 유무	모른다	(845)	19.6	37.6	29.2	12.5	0.9	57.3	13.5	3.4
	체납경험 있음	(87)	18.4	31.0	26.4	23.0	1.1	49.4	24.1	3.9
	체납경험 없음	(913)	18.7	35.9	30.2	13.7	1.4	54.7	15.1	3.6

(3) 조세제도가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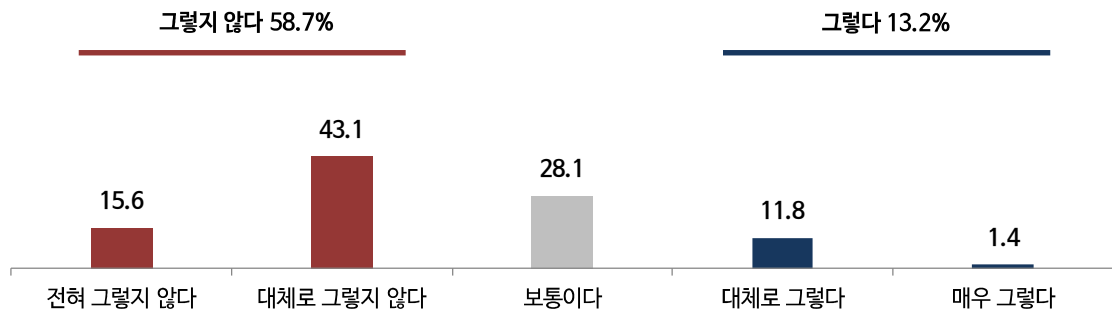
Q. 귀하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소득수준의 차이를 잘 반영하여 소득 집단 간의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58.7% > 그렇다 13.2%

□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소득 집단 간의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58.7%(전혀 그렇지 않다 15.6% + 대체로 그렇지 않다 43.1%)로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다는 응답 13.2%(매우 그렇다 1.4% + 대체로 그렇다 11.8%)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7]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

(Base: 전체, n=1,000, 단위: %)



<응답자 특성>

□ 조세제도가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19~29세와 30대에서 3.7점,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3.9점, 결혼 여부별로는 미혼이 3.6점, 가구원 수별로는 3인 가구에서 3.6점, 학력별로는 대졸 3.7점, 소득활동 유형별로는 근로소득 3.6점, 채무 유무별로는 채무 없음 3.6점, 제도 인지 여부별로는 알고 있다 4.5점, 체납 경력 유무별로는 체납 경력 있음 3.8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3]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0점 평균
전체		(1,000)	15.6	43.1	28.1	11.8	1.4	58.7	13.2	3.5
성별	남성	(496)	15.9	43.1	27.0	12.5	1.4	59.1	13.9	3.5
	여성	(504)	15.3	43.1	29.2	11.1	1.4	58.3	12.5	3.5
연령별	19~29세	(173)	13.3	38.7	35.3	11.6	1.2	52.0	12.7	3.7
	30대	(167)	16.8	37.7	28.1	15.0	2.4	54.5	17.4	3.7
	40대	(195)	16.9	47.2	25.6	8.2	2.1	64.1	10.3	3.3
	50세 이상	(465)	15.5	44.9	26.5	12.3	0.9	60.4	13.1	3.5
지역별	서울	(193)	16.6	42.5	26.9	11.9	2.1	59.1	14.0	3.5
	인천/경기	(306)	16.0	45.1	27.5	9.5	2.0	61.1	11.4	3.4
	대전/세종/충청	(106)	14.2	50.9	21.7	12.3	0.9	65.1	13.2	3.4
	광주/전라	(99)	12.1	38.4	31.3	17.2	1.0	50.5	18.2	3.9
	대구/경북	(100)	13.0	45.0	27.0	14.0	1.0	58.0	15.0	3.6
	부산/울산/경남	(153)	16.3	37.3	34.0	12.4	0.0	53.6	12.4	3.6
결혼 여부	강원/제주	(43)	23.3	39.5	27.9	7.0	2.3	62.8	9.3	3.1
	미혼	(323)	16.7	38.1	31.9	11.8	1.5	54.8	13.3	3.6
가구주 여부	기혼	(677)	15.1	45.5	26.3	11.8	1.3	60.6	13.1	3.5
	가구주	(547)	16.6	42.0	26.9	12.6	1.8	58.7	14.4	3.5
가구원 수	가구원	(453)	14.3	44.4	29.6	10.8	0.9	58.7	11.7	3.5
	1인가구	(177)	17.5	37.3	32.8	10.7	1.7	54.8	12.4	3.5
	2인가구	(179)	17.3	48.0	22.3	10.6	1.7	65.4	12.3	3.3
	3인가구	(285)	13.3	45.6	25.3	14.4	1.4	58.9	15.8	3.6
	4인가구	(294)	16.7	40.1	30.3	11.9	1.0	56.8	12.9	3.5
학력별	5인가구 이상	(65)	10.8	47.7	33.8	6.2	1.5	58.5	7.7	3.5
	고졸 이하	(222)	16.2	41.4	33.3	9.0	0.0	57.7	9.0	3.4
	전문대졸	(134)	19.4	47.0	22.4	8.2	3.0	66.4	11.2	3.2
	대졸	(548)	14.6	41.1	28.8	13.9	1.6	55.7	15.5	3.7
소득활동 여부	대학원재학 이상	(96)	14.6	53.1	19.8	11.5	1.0	67.7	12.5	3.3
	소득활동 있음	(805)	15.7	42.7	28.4	11.6	1.6	58.4	13.2	3.5
소득활동 유형	소득활동 없음	(195)	15.4	44.6	26.7	12.8	0.5	60.0	13.3	3.5
	근로소득	(675)	15.1	42.1	29.2	11.7	1.9	57.2	13.6	3.6
	사업소득	(106)	14.2	51.9	22.6	11.3	0.0	66.0	11.3	3.3
채무 유무	둘다	(24)	37.5	20.8	33.3	8.3	0.0	58.3	8.3	2.8
	채무 있음	(432)	15.7	46.1	26.4	10.4	1.4	61.8	11.8	3.4
제도 인지 여부	채무 없음	(568)	15.5	40.8	29.4	12.9	1.4	56.3	14.3	3.6
	알고있다	(155)	11.0	29.0	31.6	23.9	4.5	40.0	28.4	4.5
채납경험 유무	모른다	(845)	16.4	45.7	27.5	9.6	0.8	62.1	10.4	3.3
	채납경험 있음	(87)	17.2	35.6	28.7	16.1	2.3	52.9	18.4	3.8
	채납경험 없음	(913)	15.4	43.8	28.0	11.4	1.3	59.3	12.7	3.5

#### (4) 탈세자 처벌수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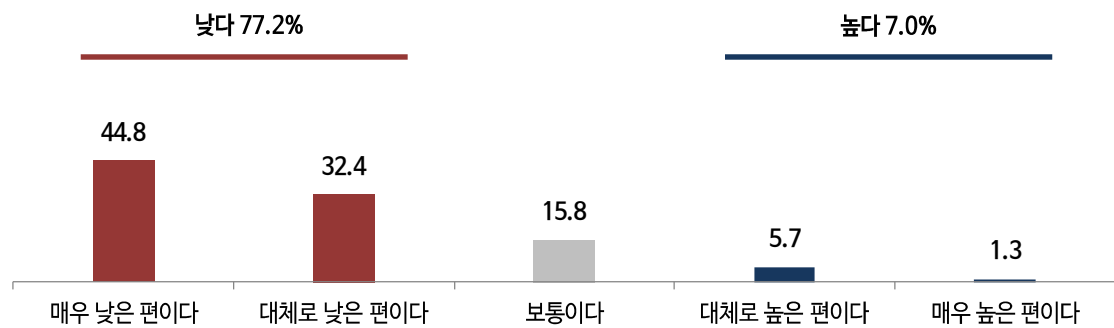
Q. 귀하는 우리나라의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 77.2% > 높다 7.0%

□ 우리나라의 탈세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77.2%(매우 낮은 편이다 44.8% + 대체로 낮은 편이다 32.4%)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처벌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7.0%(매우 높은 편이다 1.3% + 대체로 높은 편이다 5.7%)로 나타남

[그림 18] 탈세자 처벌수준에 대한 의견

(Base: 전체, n=1,000, 단위: %)



#### <응답자 특성>

□ 탈세자 처벌수준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2.2점으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 2.7점,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2.5점, 결혼 여부별로는 미혼이 2.2점, 가구원 수별로는 3인 가구에서 2.4점, 학력별로는 대졸 2.2점, 소득활동 여부별로는 소득 활동 있음 2.2점, 소득활동 유형별로는 둘다 2.7점, 채무 유무별로는 채무 있음 2.2점, 제도 인지 여부별로는 알고 있다 3.2점, 체납 경력 유무별로는 체납 경력 있음 3.5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4] 탈세자 처벌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낮은 편이다	대체로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	낮다	높다	10점 평균
전체		(1,000)	44.8	32.4	15.8	5.7	1.3	77.2	7.0	2.2
성별	남성	(496)	45.2	30.8	16.9	5.6	1.4	76.0	7.1	2.2
	여성	(504)	44.4	33.9	14.7	5.8	1.2	78.4	6.9	2.1
연령별	19~29세	(173)	35.8	32.4	22.0	8.1	1.7	68.2	9.8	2.7
	30대	(167)	49.1	26.3	15.0	8.4	1.2	75.4	9.6	2.2
	40대	(195)	53.3	30.8	13.3	1.5	1.0	84.1	2.6	1.7
	50세 이상	(465)	43.0	35.3	14.8	5.6	1.3	78.3	6.9	2.2
지역별	서울	(193)	45.6	31.6	16.1	6.2	0.5	77.2	6.7	2.1
	인천/경기	(306)	43.5	33.0	17.3	5.2	1.0	76.5	6.2	2.2
	대전/세종/충청	(106)	46.2	34.9	11.3	5.7	1.9	81.1	7.5	2.1
	광주/전라	(99)	46.5	28.3	17.2	8.1	0.0	74.7	8.1	2.2
	대구/경북	(100)	46.0	37.0	11.0	2.0	4.0	83.0	6.0	2.0
	부산/울산/경남	(153)	41.2	30.1	19.6	7.2	2.0	71.2	9.2	2.5
결혼 여부	강원/제주	(43)	53.5	32.6	9.3	4.7	0.0	86.0	4.7	1.6
	미혼	(323)	44.3	30.7	18.0	6.2	0.9	74.9	7.1	2.2
가구주 여부	기혼	(677)	45.1	33.2	14.8	5.5	1.5	78.3	6.9	2.1
	가구주	(547)	45.5	31.4	15.7	6.0	1.3	77.0	7.3	2.2
가구원 수	가구원	(453)	43.9	33.6	15.9	5.3	1.3	77.5	6.6	2.2
	1인가구	(177)	46.9	27.1	19.8	5.6	0.6	74.0	6.2	2.1
	2인가구	(179)	46.9	34.6	13.4	3.4	1.7	81.6	5.0	2.0
	3인가구	(285)	38.2	36.1	17.5	6.7	1.4	74.4	8.1	2.4
	4인가구	(294)	47.6	29.6	13.9	7.1	1.7	77.2	8.8	2.1
학력별	5인가구 이상	(65)	49.2	36.9	12.3	1.5	0.0	86.2	1.5	1.7
	고졸 이하	(222)	44.6	32.9	16.2	5.4	0.9	77.5	6.3	2.1
	전문대졸	(134)	48.5	28.4	16.4	4.5	2.2	76.9	6.7	2.1
	대졸	(548)	43.4	33.0	15.5	6.6	1.5	76.5	8.0	2.2
소득활동 여부	대학원재학 이상	(96)	47.9	33.3	15.6	3.1	0.0	81.3	3.1	1.8
	소득활동 있음	(805)	44.7	32.0	15.8	6.0	1.5	76.8	7.5	2.2
소득활동 유형	소득활동 없음	(195)	45.1	33.8	15.9	4.6	0.5	79.0	5.1	2.0
	근로소득	(675)	45.9	31.9	14.4	6.1	1.8	77.8	7.9	2.1
	사업소득	(106)	38.7	34.9	21.7	4.7	0.0	73.6	4.7	2.3
채무 유무	둘다	(24)	37.5	25.0	29.2	8.3	0.0	62.5	8.3	2.7
	채무 있음	(432)	45.1	31.3	16.4	5.3	1.9	76.4	7.2	2.2
제도 인지 여부	채무 없음	(568)	44.5	33.3	15.3	6.0	0.9	77.8	6.9	2.1
	알고 있다	(155)	31.0	32.3	18.7	14.8	3.2	63.2	18.1	3.2
체납경험 유무	모른다	(845)	47.3	32.4	15.3	4.0	0.9	79.8	5.0	2.0
	체납경험 있음	(87)	28.7	26.4	26.4	12.6	5.7	55.2	18.4	3.5
	체납경험 없음	(913)	46.3	33.0	14.8	5.0	0.9	79.3	5.9	2.0

(5) 본인의 경제적 능력 대비 세금 납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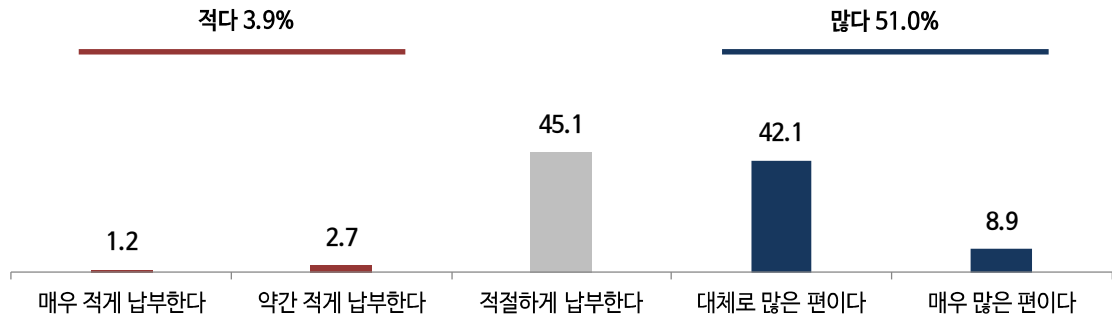
Q. 귀하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 51.0% > 적다 3.9%

-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응답이 51.0%(매우 많은 편이다 8.9% + 대체로 많은 편이다 42.1%)로 나타난 반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응답은 3.9%(매우 적게 납부한다 1.2% + 약간 적게 납부한다 2.7%)로 나타남
- 한편, 적절하게 납부한다는 응답이 45.1%로 나타남

[그림 19] 본인의 경제적 능력 대비 세금 납부 정도

(Base: 전체, n=1,000, 단위: %)



<응답자 특성>

- 본인의 경제적 능력 대비 세금 납부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6.4점으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와 50세 이상에서 6.4점,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6.6점,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6.5점,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에서 6.5점,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대학원 재학 이상 6.6점, 소득활동 여부별로는 소득활동 있음이 6.5점, 소득활동 유형별로는 둘다 6.7점, 채무 유무별로는 채무 있음 6.4점, 제도 인지 여부별로는 모른다 6.4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5] 본인의 경제적 능력 대비 세금 납부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적게 납부 한다	약간 적게 납부 한다	적절 하게 납부 한다	대체로 많은 편이다	매우 많은 편이다	적다	많다	10점 평균
전체		(1,000)	1.2	2.7	45.1	42.1	8.9	3.9	51.0	6.4
성별	남성	(496)	1.0	2.6	48.0	39.1	9.3	3.6	48.4	6.3
	여성	(504)	1.4	2.8	42.3	45.0	8.5	4.2	53.6	6.4
연령별	19~29세	(173)	1.7	3.5	43.9	42.2	8.7	5.2	50.9	6.3
	30대	(167)	2.4	2.4	43.7	40.7	10.8	4.8	51.5	6.4
	40대	(195)	0.5	3.6	46.7	40.5	8.7	4.1	49.2	6.3
	50세 이상	(465)	0.9	2.2	45.4	43.2	8.4	3.0	51.6	6.4
지역별	서울	(193)	0.0	5.7	39.4	42.0	13.0	5.7	54.9	6.6
	인천/경기	(306)	0.7	2.9	44.4	42.8	9.2	3.6	52.0	6.4
	대전/세종/충청	(106)	2.8	1.9	51.9	36.8	6.6	4.7	43.4	6.1
	광주/전라	(99)	4.0	2.0	40.4	49.5	4.0	6.1	53.5	6.2
	대구/경북	(100)	1.0	1.0	45.0	44.0	9.0	2.0	53.0	6.5
	부산/울산/경남	(153)	1.3	0.7	51.6	37.9	8.5	2.0	46.4	6.3
결혼 여부	강원/제주	(43)	0.0	2.3	46.5	44.2	7.0	2.3	51.2	6.4
	미혼	(323)	2.2	2.8	48.3	39.0	7.7	5.0	46.7	6.2
가구주 여부	기혼	(677)	0.7	2.7	43.6	43.6	9.5	3.4	53.0	6.5
	가구주	(547)	1.3	2.7	45.3	41.0	9.7	4.0	50.6	6.4
가구원 수	가구원	(453)	1.1	2.6	44.8	43.5	7.9	3.8	51.4	6.4
	1인가구	(177)	1.7	2.8	53.7	35.0	6.8	4.5	41.8	6.1
	2인가구	(179)	2.8	0.6	44.7	40.2	11.7	3.4	52.0	6.4
	3인가구	(285)	0.7	4.2	42.1	44.2	8.8	4.9	53.0	6.4
	4인가구	(294)	0.7	2.4	42.2	46.6	8.2	3.1	54.8	6.5
학력별	5인가구 이상	(65)	0.0	3.1	49.2	36.9	10.8	3.1	47.7	6.4
	고졸 이하	(222)	1.8	1.8	47.7	42.3	6.3	3.6	48.6	6.2
	전문대졸	(134)	0.7	1.5	43.3	41.0	13.4	2.2	54.5	6.6
	대졸	(548)	1.3	3.5	45.1	41.6	8.6	4.7	50.2	6.3
소득활동 여부	대학원재학 이상	(96)	0.0	2.1	41.7	45.8	10.4	2.1	56.3	6.6
	소득활동 있음	(805)	0.6	3.0	43.5	43.2	9.7	3.6	52.9	6.5
소득활동 유형	소득활동 없음	(195)	3.6	1.5	51.8	37.4	5.6	5.1	43.1	6.0
	근로소득	(675)	0.6	3.3	43.0	44.0	9.2	3.9	53.2	6.4
	사업소득	(106)	0.9	0.9	48.1	37.7	12.3	1.9	50.0	6.5
채무 유무	둘다	(24)	0.0	4.2	37.5	45.8	12.5	4.2	58.3	6.7
	채무 있음	(432)	1.2	3.5	41.9	43.8	9.7	4.6	53.5	6.4
제도 인지 여부	채무 없음	(568)	1.2	2.1	47.5	40.8	8.3	3.3	49.1	6.3
	알고 있다	(155)	0.6	4.5	46.5	37.4	11.0	5.2	48.4	6.3
체납경험 유무	모른다	(845)	1.3	2.4	44.9	43.0	8.5	3.7	51.5	6.4
	체납경험 있음	(87)	0.0	5.7	42.5	40.2	11.5	5.7	51.7	6.4
체납경험 유무	체납경험 없음	(913)	1.3	2.4	45.3	42.3	8.7	3.7	50.9	6.4

## (6) 납부한 세금 대비 혜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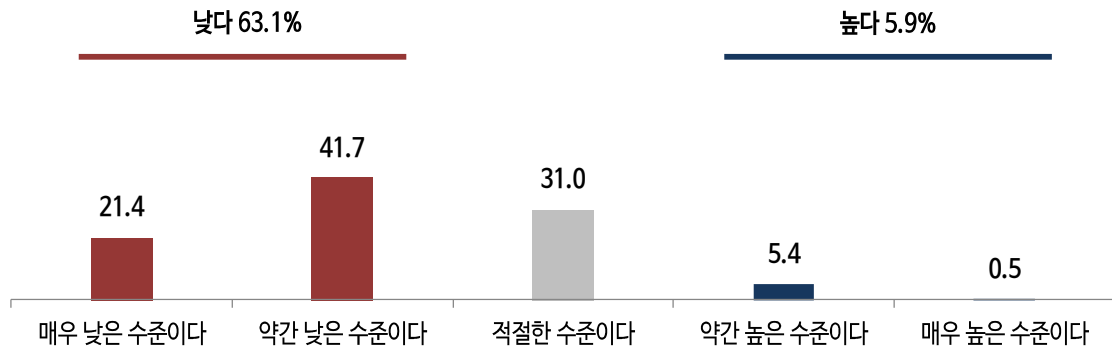
Q. 귀하는 본인이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혜택 수준 낮다 63.1% > 혜택 수준 높다 5.9%

□ 본인이 납부했던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63.1% (매우 낮은 수준이다 21.4% + 약간 낮은 수준이다 41.7%)로 나타난 반면, 혜택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5.9%(매우 높은 수준이다 0.5% + 약간 높은 수준이다 5.4%)로 나타남

[그림 20] 납부한 세금 대비 혜택 수준

(Base: 전체, n=1,000, 단위: %)



### <응답자 특성>

□ 납부한 세금 대비 혜택 수준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3.1점으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에서 3.4점,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서 3.3점, 결혼 여부별로는 미혼이 3.3점, 가구주 여부별로는 가구주 3.1점,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에서 3.3점,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대졸 3.1점, 소득활동 여부별로는 소득활동 없음이 3.3점, 소득활동 유형별로는 근로소득 3.0점, 채무 유무별로는 채무 없음 3.1점, 제도 인지 여부별로는 알고있다 3.8점, 체납 경력 유무별로는 체납 경력 있음 3.8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6] 납부한 세금 대비 혜택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적절한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낮다	높다	10점 평균	
전체	(1,000)	21.4	41.7	31.0	5.4	0.5	63.1	5.9	3.0	
성별	남성	(496)	22.0	37.9	33.5	6.0	0.6	59.9	6.7	3.1
	여성	(504)	20.8	45.4	28.6	4.8	0.4	66.3	5.2	3.0
연령별	19~29세	(173)	17.3	42.2	34.1	5.2	1.2	59.5	6.4	3.3
	30대	(167)	19.2	36.5	32.9	10.8	0.6	55.7	11.4	3.4
	40대	(195)	24.1	39.5	30.8	5.1	0.5	63.6	5.6	3.0
	50세 이상	(465)	22.6	44.3	29.2	3.7	0.2	66.9	3.9	2.9
지역별	서울	(193)	29.0	41.5	23.3	6.2	0.0	70.5	6.2	2.7
	인천/경기	(306)	20.6	40.5	34.0	4.2	0.7	61.1	4.9	3.1
	대전/세종/충청	(106)	20.8	39.6	34.9	3.8	0.9	60.4	4.7	3.1
	광주/전라	(99)	18.2	42.4	29.3	10.1	0.0	60.6	10.1	3.3
	대구/경북	(100)	25.0	37.0	30.0	7.0	1.0	62.0	8.0	3.1
	부산/울산/경남	(153)	15.7	47.1	32.7	4.6	0.0	62.7	4.6	3.2
	강원/제주	(43)	14.0	46.5	34.9	2.3	2.3	60.5	4.7	3.3
결혼 여부	미혼	(323)	19.2	38.7	35.9	5.3	0.9	57.9	6.2	3.3
	기혼	(677)	22.5	43.1	28.7	5.5	0.3	65.6	5.8	3.0
가구주 여부	가구주	(547)	22.9	38.8	31.3	6.6	0.5	61.6	7.1	3.1
	가구원	(453)	19.6	45.3	30.7	4.0	0.4	64.9	4.4	3.0
가구원 수	1인가구	(177)	19.8	36.7	36.7	6.2	0.6	56.5	6.8	3.3
	2인가구	(179)	24.6	44.7	26.8	3.4	0.6	69.3	3.9	2.8
	3인가구	(285)	19.6	41.1	33.3	5.3	0.7	60.7	6.0	3.2
	4인가구	(294)	21.8	42.9	28.2	6.8	0.3	64.6	7.1	3.0
	5인가구 이상	(65)	23.1	44.6	29.2	3.1	0.0	67.7	3.1	2.8
학력별	고졸 이하	(222)	20.7	40.1	33.8	5.0	0.5	60.8	5.4	3.1
	전문대졸	(134)	26.9	36.6	29.9	5.2	1.5	63.4	6.7	2.9
	대졸	(548)	19.7	42.2	31.8	6.0	0.4	61.9	6.4	3.1
	대학원재학 이상	(96)	25.0	50.0	21.9	3.1	0.0	75.0	3.1	2.6
소득활동 여부	소득활동 있음	(805)	22.9	41.7	29.3	5.5	0.6	64.6	6.1	3.0
	소득활동 없음	(195)	15.4	41.5	37.9	5.1	0.0	56.9	5.1	3.3
소득활동 유형	근로소득	(675)	21.5	42.7	29.5	5.8	0.6	64.1	6.4	3.0
	사업소득	(106)	24.5	39.6	30.2	4.7	0.9	64.2	5.7	2.9
	둘다	(24)	54.2	25.0	20.8	0.0	0.0	79.2	0.0	1.7
채무 유무	채무 있음	(432)	24.3	42.4	25.7	6.9	0.7	66.7	7.6	2.9
	채무 없음	(568)	19.2	41.2	35.0	4.2	0.4	60.4	4.6	3.1
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155)	15.5	36.1	30.3	16.1	1.9	51.6	18.1	3.8
	모른다	(845)	22.5	42.7	31.1	3.4	0.2	65.2	3.7	2.9
체납경험 유무	체납경험 있음	(87)	14.9	40.2	26.4	16.1	2.3	55.2	18.4	3.8
	체납경험 없음	(913)	22.0	41.8	31.4	4.4	0.3	63.9	4.7	3.0

(7) 비슷한 경제적 능력의 납세자들 대비 세금 부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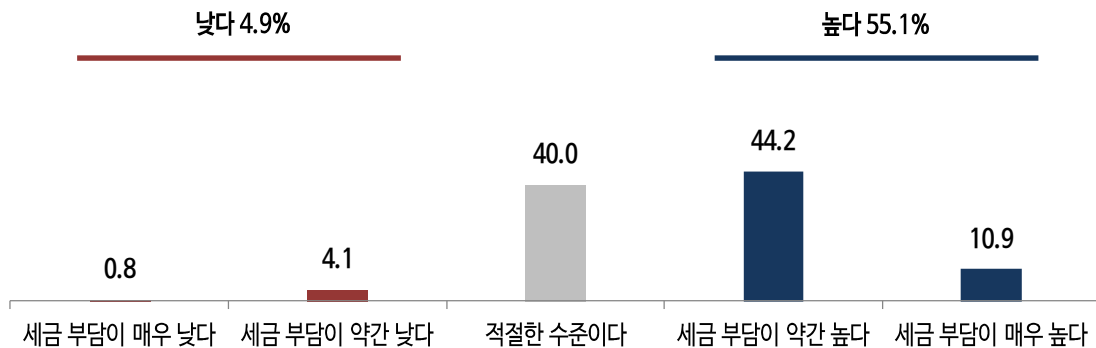
Q. 귀하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해 볼 때 세금 부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높다 55.1% > 낮다 4.9%

□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해 볼 때 세금 부담이 높다는 응답이 55.1%(세금 부담이 매우 높다 10.9% + 세금 부담이 약간 높다 44.2%)로 나타난 반면, 세금 부담이 낮다는 응답은 4.9%(세금 부담이 매우 낮다 0.8% + 세금 부담이 약간 낮다 4.1%)로 나타남

[그림 21] 비슷한 경제적 능력의 납세자들 대비 세금 부담 정도

(Base: 전체, n=1,000, 단위: %)



<응답자 특성>

□ 비슷한 경제적 능력의 납세자들 대비 세금 부담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6.6점으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에서 6.6점,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6.8점,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6.6점,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에서 6.8점,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 6.7점, 소득활동 여부별로는 소득활동 있음이 6.5점, 소득활동 유형별로는 둘다 7.0점, 채무 유무별로는 채무 있음 6.6점, 제도 인지 여부별로는 모른다 6.5점, 체납 경력 유무별로는 체납 경력 있음 6.6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7] 비슷한 경제적 능력의 납세자들 대비 세금 부담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세금 부담이 매우 낮다	세금 부담이 약간 낮다	적절한 수준이다	세금 부담이 약간 높다	세금 부담이 매우 높다	낮다	높다	10점 평균
전체		(1,000)	0.8	4.1	40.0	44.2	10.9	4.9	55.1	6.5
성별	남성	(496)	0.6	4.2	43.3	40.9	10.9	4.8	51.8	6.4
	여성	(504)	1.0	4.0	36.7	47.4	10.9	5.0	58.3	6.6
연령별	19~29세	(173)	1.7	4.0	44.5	38.2	11.6	5.8	49.7	6.3
	30대	(167)	1.2	4.8	35.3	47.3	11.4	6.0	58.7	6.6
	40대	(195)	0.5	4.6	37.9	46.7	10.3	5.1	56.9	6.5
	50세 이상	(465)	0.4	3.7	40.9	44.3	10.8	4.1	55.1	6.5
지역별	서울	(193)	0.5	2.6	36.8	45.1	15.0	3.1	60.1	6.8
	인천/경기	(306)	0.3	3.9	38.2	49.0	8.5	4.2	57.5	6.5
	대전/세종/충청	(106)	1.9	5.7	41.5	37.7	13.2	7.5	50.9	6.4
	광주/전라	(99)	3.0	5.1	43.4	41.4	7.1	8.1	48.5	6.1
	대구/경북	(100)	0.0	10.0	39.0	39.0	12.0	10.0	51.0	6.3
	부산/울산/경남	(153)	0.7	2.0	41.2	47.1	9.2	2.6	56.2	6.6
결혼 여부	강원/제주	(43)	0.0	0.0	53.5	30.2	16.3	0.0	46.5	6.6
	미혼	(323)	0.9	4.0	44.3	39.6	11.1	5.0	50.8	6.4
가구주 여부	기혼	(677)	0.7	4.1	38.0	46.4	10.8	4.9	57.2	6.6
	가구주	(547)	1.1	4.0	40.0	42.8	12.1	5.1	54.8	6.5
가구원 수	가구원	(453)	0.4	4.2	40.0	45.9	9.5	4.6	55.4	6.5
	1인가구	(177)	0.6	4.5	49.7	35.0	10.2	5.1	45.2	6.2
	2인가구	(179)	1.7	4.5	38.0	43.0	12.8	6.1	55.9	6.5
	3인가구	(285)	0.7	4.2	41.1	44.6	9.5	4.9	54.0	6.4
	4인가구	(294)	0.7	3.1	33.0	52.0	11.2	3.7	63.3	6.8
학력별	5인가구 이상	(65)	0.0	6.2	46.2	35.4	12.3	6.2	47.7	6.3
	고졸 이하	(222)	1.4	2.7	43.7	42.3	9.9	4.1	52.3	6.4
	전문대졸	(134)	0.7	6.0	35.8	50.0	7.5	6.7	57.5	6.4
	대졸	(548)	0.7	4.6	39.6	43.2	11.9	5.3	55.1	6.5
소득활동 여부	대학원재학 이상	(96)	0.0	2.1	39.6	45.8	12.5	2.1	58.3	6.7
	소득활동 있음	(805)	0.9	3.9	39.1	45.0	11.2	4.7	56.1	6.5
소득활동 유형	소득활동 없음	(195)	0.5	5.1	43.6	41.0	9.7	5.6	50.8	6.4
	근로소득	(675)	1.0	3.9	38.7	45.8	10.7	4.9	56.4	6.5
	사업소득	(106)	0.0	3.8	42.5	42.5	11.3	3.8	53.8	6.5
채무 유무	둘다	(24)	0.0	4.2	37.5	33.3	25.0	4.2	58.3	7.0
	채무 있음	(432)	0.9	3.5	36.3	47.2	12.0	4.4	59.3	6.6
제도 인지 여부	채무 없음	(568)	0.7	4.6	42.8	41.9	10.0	5.3	51.9	6.4
	알고 있다	(155)	1.3	6.5	38.7	41.9	11.6	7.7	53.5	6.4
채납경험 유무	모른다	(845)	0.7	3.7	40.2	44.6	10.8	4.4	55.4	6.5
	채납경험 있음	(87)	1.1	4.6	36.8	42.5	14.9	5.7	57.5	6.6
	채납경험 없음	(913)	0.8	4.1	40.3	44.4	10.5	4.8	54.9	6.5

**(8) 10만원 취득시 정부 기부 의향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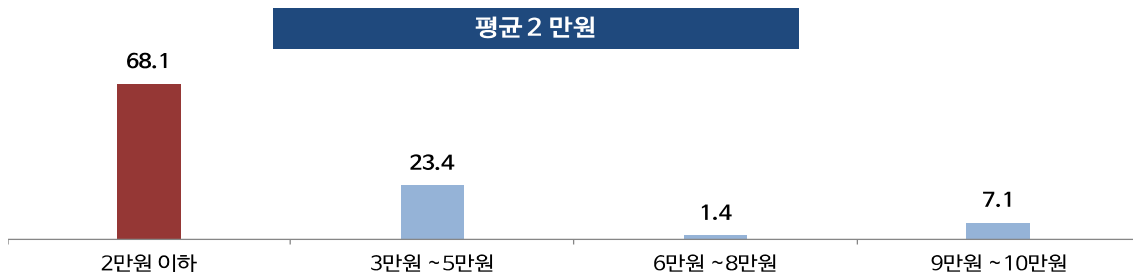
Q. 다음과 같은 가상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귀하에게 10만원을 아무조건 없이 드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께서는 10만원 전부를 갖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고, 또는 자발적으로 정부에게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액은 0원부터 10만원까지이며(0원, 1만원, 2만원...10만원), 모집된 기부액은 정부가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한 영역에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경우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평균 2만원**

- 10만원 취득시 정부에 기부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2만원 이하가 68.1%로 가장 높았음
- 0원을 지불하겠다는 응답이 253명, 10만원 모두 지불하겠다는 응답이 67명으로 나타남

[그림 22] 10만원 취득시 정부 기부 의향 금액

(Base: 전체, n=1,000, 단위: %)



<응답자 특성>

- 10만원 취득시 정부 기부 의향 금액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2.6만원으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2.7만원,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2.8만원,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2.5만원, 가구주 여부별로는 가구주 2.6만원, 가구원 수별로는 1, 2, 4인 가구에서 2.4만원,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 2.6만원, 소득활동 여부별로는 소득활동 있음이 2.4만원, 소득활동 유형별로는 사업소득, 둘다 2.5만원, 채무 유무별로는 채무 없음 2.4만원, 제도 인지 여부별로는 알고있다 3.4만원, 체납 경력 유무별로는 체납 경력 있음 2.7만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8] 10만원 취득시 정부 기부 의향 금액

(단위: 만원, 명, %)

구분		사례 수	2만원 이하	3만원 ~ 5만원	6만원 ~ 8만원	9만원 ~ 10만원	평균
전체		(1,000)	68.1	23.4	1.4	7.1	2.4
성별	남성	(496)	64.7	24.8	1.4	9.1	2.6
	여성	(504)	71.4	22.0	1.4	5.2	2.1
연령별	19~29세	(173)	74.0	19.1	1.2	5.8	1.9
	30대	(167)	73.7	18.6	1.8	6.0	2.0
	40대	(195)	71.8	22.1	0.0	6.2	2.1
	50세 이상	(465)	62.4	27.3	1.9	8.4	2.7
지역별	서울	(193)	65.8	24.9	3.6	5.7	2.4
	인천/경기	(306)	71.2	21.6	1.0	6.2	2.1
	대전/세종/충청	(106)	62.3	26.4	0.0	11.3	2.8
	광주/전라	(99)	65.7	26.3	0.0	8.1	2.6
	대구/경북	(100)	71.0	19.0	1.0	9.0	2.4
	부산/울산/경남	(153)	69.3	22.9	1.3	6.5	2.2
	강원/제주	(43)	65.1	27.9	2.3	4.7	2.4
결혼 여부	미혼	(323)	73.4	19.2	1.2	6.2	2.0
	기혼	(677)	65.6	25.4	1.5	7.5	2.5
가구주 여부	가구주	(547)	62.9	27.1	1.6	8.4	2.6
	가구원	(453)	74.4	19.0	1.1	5.5	2.0
가구원 수	1인가구	(177)	66.1	26.6	1.1	6.2	2.4
	2인가구	(179)	67.0	24.0	2.8	6.1	2.4
	3인가구	(285)	69.8	21.4	1.1	7.7	2.3
	4인가구	(294)	66.3	24.1	1.0	8.5	2.4
	5인가구 이상	(65)	76.9	18.5	1.5	3.1	1.9
학력별	고졸 이하	(222)	68.5	23.9	1.4	6.3	2.4
	전문대졸	(134)	76.1	14.9	1.5	7.5	2.1
	대졸	(548)	66.6	25.2	1.1	7.1	2.4
	대학원재학 이상	(96)	64.6	24.0	3.1	8.3	2.6
소득활동 여부	소득활동 있음	(805)	67.3	24.5	1.4	6.8	2.4
	소득활동 없음	(195)	71.3	19.0	1.5	8.2	2.3
소득활동 유형	근로소득	(675)	67.1	24.9	1.2	6.8	2.3
	사업소득	(106)	68.9	22.6	1.9	6.6	2.5
	둘다	(24)	66.7	20.8	4.2	8.3	2.5
채무 유무	채무 있음	(432)	69.4	22.7	1.6	6.3	2.3
	채무 없음	(568)	67.1	23.9	1.2	7.7	2.4
제도 인지 여부	알고있다	(155)	53.5	28.4	4.5	13.5	3.4
	모른다	(845)	70.8	22.5	0.8	5.9	2.2
체납경험 유무	체납경험 있음	(87)	60.9	28.7	1.1	9.2	2.7
	체납경험 없음	(913)	68.8	22.9	1.4	6.9	2.3





**Q6.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Q7. 귀하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소득수준의 차이를 잘 반영하여 소득 집단 간의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Q8. 귀하는 우리나라의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은 편이다	대체로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Q9. 귀하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게 납부한다	약간 적게 납부한다	적절하게 납부한다	대체로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Q10. 귀하는 본인이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적절한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①	②	③	④	⑤

**Q11. 귀하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해 볼 때 세금 부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 부담이 매우 낮다	세금 부담이 약간 낮다	적절한 수준이다	세금 부담이 약간 높다	세금 부담이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Q16.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정부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업 실패 등으로 체납된 세금 및 가산금(한도 3,000만원)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입니다(약 6천여명이 혜택을 받음).

- ① 네,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② 아니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③ 모르겠음

Q17. 정부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면 변경된 제도가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제도 변경안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고(일시불 혹은 분할 완납) 새로운 사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체납된 세금에 부과되었던 가산금에 대해서만 그 의무를 소멸함(가산금은 매 1개월마다 0.75%씩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 ① 네,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② 아니오,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③ 모르겠음

Q18.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변경될 제도는 성실납세자들을 역차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도 변경안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고(일시불 혹은 분할 완납) 새로운 사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체납된 세금에 부과되었던 가산금에 대해서만 그 의무를 소멸함(가산금은 매 1개월마다 0.75%씩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 ① 네, 역차별한다고 생각합니다
- ② 아니오, 역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③ 모르겠음

Q19. 정부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제도를 생각중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어느 제도가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더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안: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 3천만원을 한도로 체납액을 완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창업 혹은 취업을 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해 줌(분납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함)  
2안: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 5천만원을 한도로 체납액을 완납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창업 혹은 취업을 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해 줌(분납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함)  
3안: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 5천만원을 한도로 체납액 최대 5년안에 완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창업 혹은 취업을 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해 줌

- ① 1안
- ② 2안
- ③ 3안
- ④ 모르겠음





